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811-01

연구 보고서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dicial Procedures and Sentencing
in Technology Theft Crimes

연구책임자: 김 종 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서 용 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ix
Abstract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4
I. 연구의 방법	4
II.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5
제2장 기술 유출 사건의 개관	7
제1절 보호대상 기술	9
I. 개요	9
II.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10
III. 영업상 주요자산	13
IV.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14
제2절 보호대상 기술 침해행위	23
I. 영업비밀의 절취 등	23
II. 영업용 주요자산의 유출 등	28
III. 산업기술의 절취 등	29
제3절 각 법률의 중복 적용	33
제3장 주요 국가들의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 및 사례	37
제1절 미국	39
I. 개요	39
II. 규제 법률	39
III. 주요 사례	45
IV. 검토	48

제2절 일본	49
I. 개요	49
II. 부정경쟁방지법	49
III. 주요 사례	74
IV. 검토	80
제3절 독일	81
I. 개요	81
II. 영업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81
III. 실무 현황	88
IV. 검토	97
제4절 프랑스	98
I. 개요	98
II.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98
III.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103
IV. 기술 유출 사례	111
V. 검토	118
제5절 우리나라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9
 제4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재판 현황	 123
I. 미제 현황	125
II. 평균 처리 기간	128
III. 평균 공판기일 횟수	130
IV. 기술 유출 관련 제1심의 증인 수	132
V.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133
 제5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	 135
제1절 공소장의 검토	137
I. 공소사실	137
II. 죄명 및 적용법조	141
제2절 기술 유출 범죄사건의 쟁점별 검토	146
I. 서론	146
II. 부정경쟁방지법위반	146
III. 업무상배임	233
IV. 산업기술보호법위반	261

제6장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287
제1절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289
Ⅰ. 기술의 이해도 문제	289
Ⅱ. 공판절차의 장기화	290
제2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	292
Ⅰ. 기술 유출 범죄 담당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	292
Ⅱ. 전문가의 활용	294
Ⅲ.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	305
Ⅳ.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310
Ⅴ. 재정합의 결정 등을 통한 합의부에서의 심리	313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315
Ⅰ. 관할집중 논의	315
Ⅱ. 전문가 배치의 확대	319
Ⅲ. 피해자 절차 참여권 제고	320
Ⅳ.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방지 제도	343
Ⅴ. 구속기간의 완화	355
제7장 기술 유출 범죄와 양형	361
제1절 개관	363
제2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관련 통계	364
Ⅰ. 죄명별 형량분포	364
Ⅱ. 영업비밀 침해행위 선고내역	36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량분포	366
Ⅳ. 양형기준 준수율	369
제3절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370
Ⅰ. 양형기준 수정 경과	370
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372
제4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의 개선 방향	386
Ⅰ. 수정 양형기준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386
Ⅱ.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여부	389
제8장 결론	417
참고문헌	422

표 목차

[표 1]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의 비교	13
[표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15
[표 3]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요소	18
[표 4]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19
[표 5]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의 적용 법조	22
[표 6] 영업비밀 침해행위	24
[표 7]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행위	30
[표 8] 미국 경제스파이행위와 영업비밀 절도의 비교	43
[표 9]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행위 유형	82
[표 10] 독일 영업비밀보호법과의 죄수 관련 범죄	84
[표 11] 독일 영업비밀 보호 기타 법률	85
[표 12] 기술보호 관련법의 구성 및 체계 비교	119
[표 13]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비교	120
[표 1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5	142
[표 1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143
[표 1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144
[표 17] 비밀관리성 조항 개정 경과	171
[표 18] 영업비밀 침해 판단 고려사항	232
[표 19]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제1심 처리현황	289
[표 20] 최근 10년간 법원별 부정경쟁방지법 접수 현황	293
[표 21] 전문심리위원 · 기술심리관 비교	298
[표 22]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전담 분류	313
[표 23] 지식재산권소송 관할집중 현황	316
[표 24] 지식재산권 형사소송 관할집중안	317
[표 25] 관할집중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318
[표 26] 기술심리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320
[표 27] 독일 공소참가인의 권리	338
[표 28] 비밀유지명령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352
[표 29]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현황	356
[표 30] 형사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357
[표 31] 구속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	359
[표 32] 기술 유출 범죄 죄명별 형량분포	364

[표 33]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침해행위 신고내역	365
[표 34] 영업비밀침해행위 전체사건 형량분포	366
[표 35] 영업비밀침해행위 실행사건 형량분포	367
[표 36] 영업비밀침해행위 집행유예 사건 형량분포	368
[표 3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369
[표 38]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과 기존 양형기준 형량 범위 ...	371
[표 39]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구성요건 및 법정형	374
[표 40]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구조	375
[표 41] USSG 손실규모에 따른 범죄단계 상향	393
[표 42] 원가접근법의 종류 및 방법	412
[표 43] 횡령 · 배임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413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	11
[그림 2] 국가핵심기술 지정 · 변경 · 해제	18
[그림 3] 일본 영업비밀침해행위	50
[그림 4] 2년 초과 사건 비율	128
[그림 5] 평균 처리기간	130
[그림 6] 평균 공판기일 횡수	131
[그림 7] 증인 있는 사건의 증인 수	133
[그림 8]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흐름도	304
[그림 9]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312
[그림 10] 형사공판사건 제1심 처리기간	357
[그림 11] 2012년~2021년 제1심 직권보석인원	358
[그림 12]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 조직도	363
[그림 13] 영업비밀침해행위 신고내역	365
[그림 14] 영업비밀침해행위 전체사건 형량분포	366
[그림 15] 실행사건 형량분포	367
[그림 16] 집행유예 사건 형량분포	368
[그림 17] 시장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409
[그림 18]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410
[그림 19]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411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술 선도국으로, 기술 유출 범죄가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발생 빈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경제, 산업,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지만,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방안 외에는, 별도의 사전예방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복잡한 기술적 쟁점과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형사재판 심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제도적, 절차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판례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기술 유출 범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은 매우 폭넓으며, 단순한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호 대상 기술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기술 유출 방지의 주요 법적 기반이 되므로, 이들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의 법제와 기술 유출 관련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기술 유출 범죄의 재판 현황을 다룬 제4장에서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기술 유출 사건의 미제 현황, 처리 기간, 공판기일의 횟수 등 재판 관련 통계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심리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술적 복잡성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는 기술 유출 사건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심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 제5장에서는 공소장 검토 단계부터 쟁점별 심리에 이르기까지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 방안과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담당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의 활용,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및 합의부에서의 심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의 관할 집중, 전문가 배치의 확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고,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제도와 구속기간의 완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와 양형의 문제를 다루며, 기존 양형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양형기준은 피해 규모와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연방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이 범죄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술 유출, 영업비밀, 산업기술, 양형기준, 피해자절차참여권, 관할집중, 비밀유지명령, 비공개심리



Abstract

A Study on Judicial Procedures and Sentencing in Technology Theft Crimes

Kim, Chong Kun
Senior Researcher, JPRI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echnology theft crimes and the challenges in sentencing, proposing reform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heft, involving the deliberat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industrial technologies, and national defense-related innovations, poses a severe threat to corporate survival and national security.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frequency of such crimes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robust judici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he report begins by analyzing the scope of protected technologies and the application of key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t addresses the procedural complexities of criminal trials for technology theft, including the handling of technical evidence, inefficiencies in trial proceedings, and challenges posed by limited judicial expertise.

Drawing on international practices fro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France, the study identifies best practices in tackling technology theft. These insigh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pecialized courts, comprehensive legal standard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afeguarding technological assets.

The report also examines specific challenges in trial procedures, such as delays in evidence management, risks of further exp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during proceedings, and the lack of streamlined processes.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specialized courts, enhancing judicial training in technical matters, and implementing robust confidentiality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out the trial.

Furthermore, the study critiques existing sentencing guidelines, emphasizing their insufficiency in reflecting the strategic and economic value of misappropriated technologies. It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nuanced and consistent sentencing standards that serve as effective deterrents against technology theft crimes.

In conclusion, the study advocates for comprehensive reforms in legal, procedur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 of technology theft. These measures aim to strengthen Korea's ability to protect its critical technological assets and sustain its global competitiveness in an era of increas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interdependence.

key words: technology theft, trade secrets, economic espionag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sentencing guidelines, criminal trial procedure, judicial expertis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첨단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 인력과 재정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산업 기술이 경쟁국이나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최근 몇 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범죄 사례를 보면 △2018년 40건 △2019년 43건 △2020년 73건 △2021년 61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¹⁾ 이처럼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기술 유출이 해외로 이어질 경우 국가 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안보비서관과 국제법무비서관 주재로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²⁾ 이 조직은 10개 부처와 수사기관이 협력해 기술 유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응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 전략이다.

본 연구는 기술 유출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판례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 심리절차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1) 법률신문, “검찰, 9월까지 기술유출범죄 61건 기소”, <https://www.lawtimes.co.kr/news/192593?serial=192593> (2024. 7. 11. 확인).

2) 대통령실,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 출범, 보도자료(2023. 11. 8.).

증가하였다. 2023년 제1심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1명이었는데, 2022년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세 배 늘어난 것이고, 2021년(15명)과 비교해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³⁾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과경하여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2024. 3. 25. 마련하였고, 2024. 7. 1.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수정된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I. 연구의 방법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된 문헌과 판례를 수집·조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의 적절한 진행방식 및 양형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의 현황과 형사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대검찰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국가기관과 기술 유출과 관련된 주요 국내기업(S전자, L화학, K통신 등)의 법무 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외국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단행본이나 논문을 검토하고, 해당 국가의 법원과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방법원, 법무부, 연방양형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방법관, 연방검사, 연방양형위원 등 담당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한국경제, “점점 세지는 ‘기술유출 범죄 처벌’...실형 3배 늘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916951> (2025. 1. 22. 확인).

II. 연구의 내용

이 보고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을 제외하면,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기술 유출 사건을 개관하고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기술을 살펴본 다음, 각 기술 유출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 기술의 침해행위를 검토한다.

제3장은 외국의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를 살펴본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프랑스의 법제와 기술 유출 관련 주요 사례들을 검토한다.

제4장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재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미제 현황, 평균 처리기간, 평균 공판기일의 횡수, 증인의 수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여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도출한다.

제5장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보는데, 공소장 검토 단계에서의 유의할 점을 먼저 살펴보고, 쟁점별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참조할만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제6장은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에 관하여 개관하고, 양형 관련 통계,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본 다음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연구책임자 김종근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전반의 작성 및 검토를 담당하였고, 외국 사례 연구 중 연구참여자 서용성 연구위원은 독일에 관한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을, 연구참여자 김성화 조사위원은 일본에 관한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을, 연구참여자

정관선 조사위원은 프랑스에 관한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을 담당하였다. 양승욱 조사위원의 경우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의 각 조문별 주석 내용을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였다.

..... 제2장

기술 유출 사건의 개관

제1절 보호대상 기술



I. 개요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이다. 기술(技術)이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⁴⁾으로 오늘날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기술 유출 내지 기술 침해에서 일컫는 기술은 재산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정보로서, 그중에는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요하는 기술도 있다.⁵⁾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일정한 유출·침해 행위들을 법률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형사처벌의 객체가 되는 기술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해당한다.

기술 유출 범죄의 대상이 되는 보호대상 기술에 관하여 보호의 필요성과 각 법률에서 정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요건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고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행위를 기술 유출 범죄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술(技術)’ 뜻풀이.

5)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2023), 2.

II.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1.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⁶⁾ 1961. 12. 30. 법률 제911호로 공포됨으로써 제정되었다. 그 후 2024. 2. 20. 개정까지 27회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그 보호범위와 구제수단이 확대되었다.⁷⁾ 부정경쟁방지법은 제정 당시 부정경쟁행위만 규정하였으나 1991. 12. 31.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營業秘密)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의 영업비밀 도용 등 침해행위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⁸⁾ 1998. 12. 31.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비중이 커지고 출처혼동을 중심으로 한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⁹⁾

2. 보호대상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영업비밀은 특허·저작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특허·저작권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 미국 국립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할 때,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의 종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76.2%를 차지하여 49.4%를 차지한 특허(Utility patents)를 비롯한 다른 지식재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¹⁰⁾ 설문결과와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6)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제정 법률 제911호) 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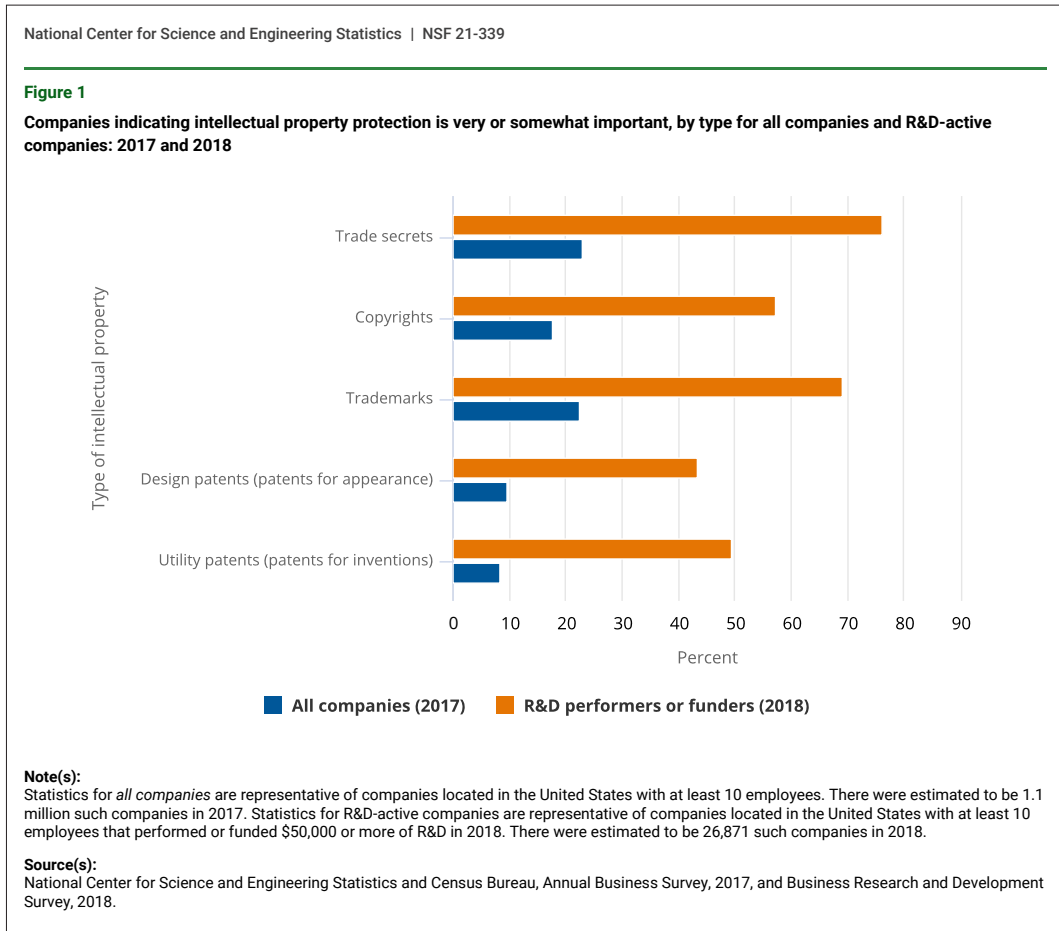
7) 정상조 편,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8.

8)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4478호) 일부개정 이유.

9) 정상조 편,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9.

10) Shackelford B, Jankowski J;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CSES). 2021. Three-Quarters of U.S. Businesses that Performed or Funded R&D Viewed Trade Secrets as Important in 2018, NSF 21-339, Alexandria, V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vailable at <https://ncses.nsf.gov/pubs/nsf21339> (2024. 7. 11. 확인).

[그림 1]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은 경쟁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는 것을 차단하고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생존·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코카콜라는 재료배합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면서 130년 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시작된 LG와 SK의 배터리를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은 2021. 4. 11.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합의로 종결되면서¹¹⁾ 기업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11) 연합뉴스, “LG·SK 배터리 분쟁 합의금 2조원...국내외 쟁송 모두 취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21101?sid=101> (2024. 7. 11. 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WTO TRIPs(지식재산권협정) 역시 영업비밀에 관하여 “자연인 및 법인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기의 동의 없이 건전한 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획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① 정보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엄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문제가 된 정보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②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일 것, ③ 적법하게 비밀을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하에 있는 것일 것”(제39조 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설계도면, 노하우, 생산공정과 같은 ‘기술정보’와 고객정보, 원가정보, 사업계획과 같은 ‘경영정보’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는 WTO TRIPs(지식재산권협정),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UTSA, DTSA), EU 영업비밀보호지침,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등 국제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다.

한편, 영업비밀과 특허는 기술정보 보호의 기본수단으로서 영업비밀은 비공개, 특허는 내용을 공개하고 독점권을 받아 보호한다. 특허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혁신(신규하고 진보된 발명)이 요구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되면 이후 제3자의 모방, 무단 사용은 침해에 해당한다. 반면, 영업비밀은 대상에 제한이 없고, 비밀이 유지될 경우 영구히 보호되나, 유출·공개가 될 경우 가치를 상실하고, 합법적 수단(역설계 등)의 모방은 방지하기 곤란하다.

기업 등은 시장환경, 기술발전 속도, 모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정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과 특허를 조합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3M社 ‘포스트 잇’의 점착제

(microsphere)는 특허를 받고, 이를 이용한 접착띠(adhesive strips)의 제조방법은 비밀로 관리된다.¹²⁾

[표 1]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특허 제도의 비교¹³⁾

	영업비밀보호 제도	특허 제도
목적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 이바지
보호대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는 기술·경영정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는 기술적 발명
등록요부	등록절차 불요	등록에 의하여 독점배타적 권리 발생
공개여부	비공개(공개되는 순간 보호적격 상실)	공개를 전제로 함
보호기간	비밀로 관리되는 한 무한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III. 영업상 주요자산

한편,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⁴⁾고 판시하여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객체로서 보호하고 있다.

12) CNN, “The ‘hallelujah moment’ behind the invention of the Post-it note”, <https://edition.cnn.com/2013/04/04/tech/post-it-note-history/index.html> (2024. 7. 10. 확인).

13)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11-12.

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IV.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1. 산업기술

가. 산업기술보호법

우리나라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반면,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불안한 국내 기업 환경을 틈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로 2002년 현대전자의 부도로 LCD 사업부문인 하이디스가 당시 중소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중국 BOE에 매각됨에 따라 약 4만 건 이상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었다. BOE는 2005년 한국에서 철수하였고, 2023년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21.4%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¹⁵⁾ 또한 2004년 위기를 겪고 있던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된 후 SUV 제작기술 등 핵심기술이 유출되었고, 상하이 자동차는 중국 3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기술력 있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 후 연구원 현지 파견 등의 방식으로 기술만 흡수하고 되팔아 버리는 기업 주도의 이른바 ‘먹튀’ 사건들이 주목받으며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¹⁶⁾ 사후적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4년 일명 ‘산업스파이 처벌법’ 차원에서 법 제정작업이 추진되었는데, 기술수출, M&A 승인 등에 대해 기업들의 반대가 있어 입법이 상당기간 지연되다가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나. 보호대상

(1)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5) 머니투데이, “디스플레이 세계매출 1위, 中에 내줘...OLED기술격차도 3년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1311401243914> (2024. 7. 10. 확인).

16) 201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만 처벌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즉, 산업기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할 것, ② 방법이거나 기술상의 정보일 것, ③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공고·인증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의에 따라 산업기술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⁷⁾

[표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기술	근거법	내용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유출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첨단기술	산업발전법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핵심 뿌리기술	뿌리산업법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

17)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53.

기술		근거법	내용
신기술	신 기 술 인 증 제 도	산업기술혁신법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신기술		환경기술산업법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인증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보건 신기술		보건의료 기술법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새로운 건설기술		건설기술 진흥법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을 확보한 건설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전력기술 관리법	삭제
기타		산업기술 보호법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중에서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¹⁸⁾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18)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구성) 산업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
 * (관계부처)기재·교육·과기·외교·법무·국방·농림·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차관, 특허청장, 국정원차장
 ▷(심의 대상)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②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③ 국가핵심기술 수출,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¹⁹⁾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와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요소는 공통요소와 선택적 요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²⁰⁾

[표 3]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요소

공통요소	산업기술에 해당할 것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에서 지정할 것
선택적 요소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 중 좀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는데,²¹⁾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²²⁾

1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https://www.is-portal.net/service/library/page/nation_mjr_skl.do?mid=450 (2024. 7. 11. 확인).

20)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보호법, 법문사(2013), 16.

21)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보호법, 법문사(2013), 16.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2024. 7. 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보도자료(2024. 7. 4.):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원자력(2개: 원전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기계(1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철도(1개: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등 4개 대상기술이 신규지정되었고, 원자력 3개 대상기술(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이 해제되었다.

[표 4]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분야	기술명
반도체 (11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64단 이상의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디스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전기전자 (4개)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포함)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철도 (10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제어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회생제동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시스템,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분야	기술명
	고속철도차량의 동력시스템, 제어진단 설계 및 제조 기술(견인전동기·주전력변환장치·대차·차량종합제어장치 기술에 한함)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초정밀 도금(분해능 0.1 μ m급) 설비 및 설계·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8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친환경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방벽, 단열시스템 그리고 펌프 타워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수리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정도관리, 안전제어 및 연동제어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 자율운항(상황인식, 지능항해, 디지털브릿지 및 통합플랫폼, 선내외 통신 및 보안 등) 및 통합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운영시스템,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분야	기술명
원자력 (4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정보통신 (7개)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이하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 및 결정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제작 및 조립 기술
생명공학 (4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중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8개)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20톤급 이상 중대형 굴착기 신뢰성 설계, 검증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Stage-V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산업용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용 무급유 터보압축기 기반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기술
	인간 친화적 초고속 승강기 설계 및 운영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

분야	기술명
로봇 (3개)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제조공정에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다중 제조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기술
수소 (2개)	1.0A/cm ²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전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

다. 영업비밀과의 관계

비공개 산업기술은 영업비밀의 기술정보와 중첩된다. 참고로 특허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형사사건의 1심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41명 중 22명(54%)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동시에 기소되어 판단이 이루어졌다.²³⁾

[표 5]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의 적용 법조

(단위: 명)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산업기술만 적용	1	3	2	9	4	19(46%)
산업기술·영업비밀	1	3	10	6	2	22(54%)
계	2	6	12	15	6	41(100%)

다만, 입법목적을 살펴볼 때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경쟁력’,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개별 기업 등의 기술·경영정보 보호라는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공개 정보의 부정한 유출만 처벌하나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된 기술과 수출 등 합법적 수단에 의한 유출도 통제한다. 또한 산업기술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법률로 지정·고시·공고·인증되고, 경제적 유용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개’, ‘비공개’ 기술정보를 모두 포함하는데, 경영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과 차이가 있다.

23)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안)(2022~2026)(2021. 12.), 6.

제2절 보호대상 기술 침해행위



I. 영업비밀의 절취 등

1. 침해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① 부정취득·사용·공개, ② 악의·중과실에 의한 취득·사용·공개, ③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④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공개, ⑤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중과실의 취득·사용·공

개,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에 대한 사후적 악의·중과실 등 6개 유형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표 6] 영업비밀 침해행위²⁴⁾

구분	내용
부정취득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에 대한 악의·중과실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에 대한 사후적 악의·중과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악의·중과실	영업비밀이 ④ 유형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악의·중과실	영업비밀 취득 후 그 영업비밀이 ④ 유형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형사처벌의 대상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4)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49.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1991년 개정법 제18조에서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영업비밀침해 전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벌범위(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처벌 대상자(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를 한정하고 또한 기수범만 처벌대상으로 하였다가 처벌범위를 모든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원 등에 대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처벌대상자도 확대하였으며,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처벌형량이 강화되고 친고죄 폐지로 처벌 방법 역시 강화되었다.²⁵⁾

25)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2022), 303.

형사처벌되는 침해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저장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²⁶⁾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가 있다.

국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제1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한편, 2024. 8. 21.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9조의8 및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행위만을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한다)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²⁷⁾ 영업비밀보다 경제적 가치가 낮은 일반정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26)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보 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침입(§ 48 ①)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48 ②) －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정보통신망 장애(§ 48 ③)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정보 훼손(§ 49前)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비밀침해·도용·누설(§ 49後)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형량이 낮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규율이 불가능한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비밀 국내유출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²⁸⁾

II. 영업용 주요자산의 유출 등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²⁹⁾

한편,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업무상배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위헌법률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³⁰⁾

28) 특허청, 특허청 소관 개정 법률안 설명자료-기술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2024. 2.), 3.

2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30)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45.

III. 산업기술의 절취 등

1. 침해행위의 유형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 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

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준하여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의 ① ~ ④ 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유형이고, ⑤ ~ ⑧ 유형은 산업기술 전반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³¹⁾

[표 7]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행위

구분	내용
① 부정취득	부정취득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비밀유지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③ 부정취득에 대한 악의 또는 사후적 악의	①유형 또는 ②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해 ①유형 또는 ②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부정취득에 대한 중과실 또는 사후적 중과실	①유형 또는 ②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①유형 또는 ②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1)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61.

구분	내용
⑤ 국가핵심기술의 미승인·부정수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⑥ 국가핵심기술의 미승인·부정 해외인수·합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⑦ 국가핵심기술 미신고·부정 신고를 통한 해외인수·합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⑧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증지 등의 명령 불이행	산업통상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증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에 대한 불이행
⑨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및 삭제 요구 불이행	산업기술보호법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⑩ 적법 제공된 산업기술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형사처벌의 대상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국외 유출을 국내 유출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국외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산업기술을 유출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기술 유출 및 침해의 경우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제3절 각 법률의 중복 적용



기술 유출·침해사건에 있어, 유출·침해된 정보가 위 각 법률 및 판례가 요구하는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산업기술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법률에서 처벌하는 유출·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각 법률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학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를 중국의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누설한 사건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³²⁾ 해당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지위

한국과학기술원은 1971. 2. 16. 설립되어 과학기술분야에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피고인은 1997. 2. 1.경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의 ■■■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8. 1.부터 2011. 7. 18.까지 연구처 연구처장, 2013. 5. 10.부터 2016. 6. 30.까지 ■■■ 학부장, 2017. 2. 1.부터 ■■■ 국제프로그램(■■■ International Program, 이하 ‘국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3. 10.경부터 중국 ■■■시에 있는 ■■■이공대학(이하 ‘■■■이공대’라 한다)과 ■■■시의 산업특구인 ■■■ 내 한중산업단지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고급 교육 자원을 도입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국제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2015. 9. 1.경부터 ■■■이공대에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학부 교수를 파견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한국과학기술원 ■■■학부장으로서 국제프로그램 관련

32)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098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협의를 위해 ■이공대 교수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2016. 5.경 ■이공대 ■ 교수로부터 2008년경부터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인 천인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2016. 6. 1.경 ■이공대에서 ■시 및 ■이공대 담당자로부터 천인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6. 6. 6.경 ■ 교수 및 ■시 담당자 ■에게 천인계획에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으로 ■이공대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므로 ■이공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천인계획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개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6.경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내부 규정에 의해 다른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공대와 계약기간 ‘2017. 3. 1.~2020. 2. 29.’, 연봉 ‘1,000,000위안(한화 약 1억 7,000만 원), 정착지원금 ‘2,000,000위안(한화 약 3억 4,000만 원), 연구지원금 ‘3,000,000위안 내지 5,000,000위안(한화 5억 1,000만 원 내지 7억 5,000만 원), 직책 ‘■이공대의 ■공학원에서 광섬유 감지 및 광전식 감지 시스템 ■시 중점 실험실의 특별 초빙 전문가’로 하는 외국인고용계약 체결과 함께 ‘광통신/네트워크(차세대 광접속망, 무선광 통신망), 보안 통신(양자 키 분배, 보안 물리 계층 통신), 광센서(포토닉IC)를 연구개발 주요과제로 하는 천인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공대 담당 교수인 ■ 교수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중국 정부로부터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2017. 11. 1.경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계약기간 ‘2017. 11. 1.~2022. 10. 30.’, 생활정착보조금 ‘2,000,000위안(한화 약 3억 4,000만 원), 연봉 ‘1,100,000위안(한화 약 1억 8,700만 원), 연구지원금 및 플랫폼 개설 경비 ‘16,000,000위안(한화 약 27억 2,000만 원), 근무보조금 ‘매월 5,000위안(한화 5년간 약 5,100만 원), 임용직위 ‘■이공대 교수, 석사생 지도교수, ■대학 공동학장, ■이공대학 라이다&스마트 광 네트워크 연구센터 주임’, 업무 분야 ‘라이다, 지능형 광 노드, 알고리즘 등 최소 3팀의 연구팀 구성, 라이다와 광 네트워크 노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유, ■이공대학을 주관기관(제1기관)으로 하여 국제 및 중국국가발명 특허 9건 신청, ■이공대학을 주관기관(제1기관)으로 하여 ■ 또는 ■ 저널에 최소한 3편의 논문 발표, ■이공대학을 위해 최소 5명의 과학 연구 핵심 인원 양성, 중경이공대학이 참여한 연구팀의 석사연구생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추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외국인고용계약 및 천인계획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인계획에 따라 라이다, 광 노드, 알고리즘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9건의 특허 출원, 최소 3편 이상의 논문 발표 등의 업무 목표가 발생하였고, 매년 ■이공대에 업무결산보고를 하고, 중간심사·평가를 받으며 계약에 규정된 직책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게 되는데,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이공대 연구원들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빠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피고인이 지도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 등 연구원들에게 연구·논문 지도를 빙자해 한국과학기술원 보유의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라이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연구를 하도록 연구방향을 설정해주고, 해당 기술을 연구하도록 한 후 그 연구 성과물을 피고인의 천인계획 업무성과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산업기술, 영업비밀, 연구자료 등 업무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유출, 누설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허락 없이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비밀로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보안카드 소지자만이 ■공학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학부 건물 내 연구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및 연구자료를 보관하는 윈드라이브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정 및 비밀번호가 부여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접근권자를 제한하고, 매월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료를 비밀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천인계획에 따른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천인계획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들로 하여금 한국과학기술원 보유 연구자료를 라이다 등 기술 연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 등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라이다 및 지능형 광 노드 연구실’(일명 LION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피고인과 ■■■ 등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권한을 가진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윈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보유 연구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 등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이 첨단기술 중 ‘차량용 레이저 레이다 기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 보안보장 광통신 기술, 정보잡음을 이용한 무간섭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 보유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구자료 등을 위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 30여 명이 수시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윈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유출·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유출·누설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누설하여 그 산업기술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제3장
주요 국가들의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 및 사례

제1절 미국



I. 개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형사사건도 연방사건과 각 주의 관할 사건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기술 유출 범죄는 그 특성상 연방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국의 첨단 산업 보호 및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³³⁾ 이하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연방법률인 경제스파이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을 살펴보고, 기술 유출 관련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규제 법률

1.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가. 개요

미국 의회는 기업의 비밀정보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인식으로, 1996년 경제스파이 등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유출 행위는 형사 처벌하는 경제스파이법을 통과시켰다.³⁴⁾ 경제스파이법 제정 전 연방정부는 18 U.S.C. § 1905(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generally)³⁵⁾

33)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69.

34)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70.

35)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을 대리하는 자, 또는 독점금지 민사 절차법(Antitrust Civil Process Act, 15 U.S.C. 1311-1314)에 정의된 법무부의 대리인, 혹은 5편 37장의 규정에 따라 연방기관에 배정된 민간 부문 조직의 직원이면서, 자신의 고용이나 공무 수행 중, 혹은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또는 보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이나 정도로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알리는 경우,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공정, 운영 방식, 작업 스타일 또는 장치, 혹은 소득, 수익, 손실, 지출의 출처나 금액과 관련된 신원, 기밀 통계 자료, 혹은 기타 자료에 관한 내용일 때, 또는 소득 신고서나 그 사본, 이를 포함한 서적을 법이 정한 바 이외의 자가 열람하거나 검토하도록 허용한 경우, 이 사람은 본 조항에 따라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직위나 고용에서 해임된다(Whoever, being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r agent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defined in the

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제하였으며 대공황 시절의 법령[장물의 주간 유통에 관한 법(Interstate Transportation of Stolen Property Act), 전신 사기(18 U.S.C. § 1343) 또는 우편 사기(18 U.S.C. § 1341)에 의한 법령]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였다.³⁶⁾

1996년 미국 의회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위하여 연방통합법률(U.S.C.) 18편 90장에 경제스파이법을 편입한 이후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 2012년 영업비밀 절도 명확화법(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에 의한 영업비밀 절도 범위 확대, 2013년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에 근거한 외국을 위한 경제스파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등,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왔다.³⁷⁾

나. 주요 내용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경제스파이 행위(18 U.S.C. § 1831)와 영업비밀 절도(18 U.S.C. § 1832)를 규정하고 있다.

(1) 영업비밀의 정의

모든 형태와 유형의 재정, 사업, 과학, 기술, 경제 또는 공학 정보로,

(A) 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B)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독립적

Antitrust Civil Process Act (15 U.S.C. 1311–1314), or being an employee of a private sector or organization who is or was assigned to an agency under chapter 37 of title 5, publishes, divulges, discloses, or makes known in any manner or to any extent not authorized by law any information coming to him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or official duties or by reason of any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made by, or return, report or record made to or filed with, such department or agency or officer or employee thereof, which information concerns or relates to the trade secrets, processes, operations, style of work, or apparatus, or to the identity, confidential statistical data, amount or source of any income, profits, losses, or expenditures of any person, firm, partnership, corporation, or association; or permits any income return or copy thereof or any book containing any abstract or particulars thereof to be seen or examined by any person except as provided by law;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and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r employment).

36) 최지연,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 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3. 5.), 11.

37)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3.

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 (18 U.S.C. § 1839).

(2)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연방법원 판례³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방정부는 영업비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 정보가 실제로 비밀이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비밀 유지 조치를 합리적으로 취했어야 한다.

③ 해당 비밀에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무역 잡지, 도서 또는 발행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는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된다.”³⁹⁾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비밀 유지 조치에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의 존재를 알리기, 필요에 따라 접근 제한하기, 시설 접근 제어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시정된 사무실, 보안 요원, 문서 파쇄 방식과 같은 보안 조치 및 기밀 유지 계약, 문서 라벨링”과 같은 기밀 유지 절차가 합리적인 조치로 간주된다.⁴⁰⁾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비밀 정보가 소유자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정도를 가장 자주 고려한다.⁴¹⁾

(3) §1831. 경제스파이 행위

해당 행위를 고의로 수행하거나 해당 행위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또는 외국 대리인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알고 수행하는 경우:

1.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승인 없이 취득, 운반, 은닉하거나, 사기, 속임수 또는 기만으로 영업비밀을 얻는 경우

2.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복사, 중복 제작, 스케치, 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괴, 복사, 복제, 전달, 송신, 우편 발송, 전달 또는 전달하는 경우

38) United States v. Chung, 659 F.3d 815, 824–25 (9th Cir. 2011).

39) United States v. Chung, 659 F.3d 815, 825 (9th Cir. 2011).

40) United States v. Chung, 659 F.3d 815, 825 (9th Cir. 2011).

41) United States v. Chung, 659 F.3d 815, 826 (9th Cir. 2011).

3. 영업비밀이 훔쳐졌거나 승인 없이 취득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수령, 구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
4. 위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5. 위의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이 중 한 명 이상이 공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 경우

경제스파이 행위의 핵심 요건은 해당행위가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알거나 의도했을 것, 위 나열된 행위 중 하나를 고의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다. 위반자에게는 \$5,0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반한 법인에는 \$10,000,000 또는 훔친 영업비밀의 3배 가치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 1832. 영업비밀 절도

해당 행위를 고의로 수행하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우:

1.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승인 없이 취득, 운반, 은닉하거나, 사기, 속임수 또는 기만으로 해당 정보를 얻는 경우
2. 승인 없이 해당 정보를 복사, 중복 제작, 스케치, 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괴, 복사, 복제, 전달, 송신, 우편 발송, 전달 또는 전달하는 경우
3. 해당 정보가 훔쳐졌거나 승인 없이 취득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수령, 구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
4. 위의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5. 위의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이 중 한 명 이상이 공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 경우

영업비밀 절도의 핵심 요건은, 영업비밀을 변환할 의도가 있을 것,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행위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의도하거나 알았을 것, 위의 나열된 행위 중 하나를 고의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다. 위반자에게는 \$5,0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병과할 수 있다. 위반한 법인에는 \$5,000,000 또는 훔친 영업비밀의 3배 가치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 8] 미국 경제스파이행위와 영업비밀 절도의 비교⁴²⁾

구분	경제스파이	영업비밀 절도
요건	피고인이 고의로 정보를 유용할 것(예: 소지, 절취, 전송 또는 미수, 예비·음모)	좌동
	피고인이 해당 정보가 독점적이고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	좌동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영업비밀이 아닌 경우 미수, 예비·음모 적용)	좌동
	피고인이 비밀의 침해가 외국 정부나 기관 혹은 요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도했을 것	피고인이 정보의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유용하려고 의도했을 것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소유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도했을 것
		당해 영업비밀이 주권 혹은 국제거래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을 것
처벌	(개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단체)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개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한 벌금 (단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관련된 재산이나 이득 몰수

2. 영업비밀보호법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가. 개요

미국 의회는 2016. 4. 27. 기술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42)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5.

영업비밀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경제스파이법과 마찬가지로 연방통합법률 18편 90장에 편제되었다.⁴³⁾

2016. 5. 11. 시행된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통일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연방 차원의 형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 조치를 허용하고, 경제스파이법을 수정·보완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준도 상향하였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은 주법(州法)에 따른 영업비밀 구제책을 대체하거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⁴⁴⁾

나. 주요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은 18 U.S.C §1836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18 U.S.C. §1836 (b)(1)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탈취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이 국내 또는 국제 상거래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또는 예상되는 부당 탈취(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8 U.S.C. §1836 (b)(3)

(3) 구제책

이 조항에 따라 영업비밀 탈취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금지 명령을 부여

(i) 제1항에 설명된 실제 또는 예상되는 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명령은 다음을 금지하지 않는다:

(I) 개인이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고용에 부과된 조건은 개

43)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73.

44) Syntel Sterling Best Shores Mauritius Ltd. v. Trizetto Grp., Inc., 68 F.4th 792, 808 (2d Cir. 2023).

인이 알고 있는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예상되는 탈취에 대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II) 합법적인 직업, 거래 또는 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당 주 법률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ii)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iii) 특수한 상황에서 명령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비밀의 향후 사용에 대해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사용이 금지될 수 있었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III. 주요 사례

1. 2022. 5. 9. 선고 U.S. v. You⁴⁵⁾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 샤오룽 유는 음료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BPA) 비함유(BPA-free) 코팅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코카콜라에서 글로벌 연구의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BPA-free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직원 중 한 명이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트만 케미컬에서 패키징 응용 개발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탈취된 영업비밀은 아크조노벨(Akzo-Nobel), BASF,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PPG, 토요켄(Toychem), 셔윈 윌리엄스(Sherwin Williams), 이스트만 케미컬(Eastman Chemical)과 같은 주요 화학 및 코팅 기업의 소유로, 개발 비용이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BPA는 캔 내부 코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건강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체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재판에서 화학 및 코팅 회사의 증언에 따르면, BPA-free 기술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임이 밝혀졌다.

45) <https://www.justice.gov/usao-edtn/pr/phd-chemist-sentenced-168-months-conspiracy-steal-traded-secrets-economic-espionage> (2024. 12. 19. 확인).

피고인은 이 영업비밀을 중국 내 BPA-free 코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으며, 피고인과 중국 기업 파트너인 웨이하이 진홍 그룹(Weihai Jinhong Group)은 중국의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rogram)’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금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 정부, 산둥성, 웨이하이 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나. 재판결과

피고인은 2019. 2. 영업비밀 절도 공모[18 U.S.C. § 1832(a)(5)], 경제 스파이 활동 공모[18 U.S.C. § 1831(a)(5)], 절도된 영업비밀 소지[18 U.S.C. § 1832(a)(3)], 경제 스파이 활동[18 U.S.C. § 1831(a)(3)], 전신 사기(18 U.S.C. § 1343) 혐의로 영업비밀 절도, 경제스파이 활동, 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년, 테네시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14년(16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중 반중국 정서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023. 7. 11.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 2020. 8. 31. 선고 U.S. v. Hao Zhang⁴⁶⁾

가. 사건의 경위

중국 국적의 피고인 하오 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표면 음향파(SAW) 및 대량 음향파(BAW) 필터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았는데, 위 필터는 휴대전화 및 군용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기기에서 사용되는 RF 필터로 활용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공모자인 웨이 팡(Wei Pang)은 산호세에 본사를 둔 아바고(Avago) 및 매사추세츠주 우번에 본사를 둔 스카이웍스(Skyworks)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탈취한 정보를 사용해 중국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려 했으며, 이 사업은

46) <https://www.justice.gov/usao-ndca/pr/chinese-citizen-sentenced-economic-espionage-theft-trade-secrets-and-conspiracy> (2024. 12. 19. 확인).

중국 정부와 텐진대학(TJU)에 혜택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2006년 중국에서 아바고 및 스카이웍스와 경쟁할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피고인은 미국 USC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스카이웍스에 취업하였으며, 웨이 팡은 아바고에서 근무하였다. 이들은 미국 기업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전달하였다. 텐진대학은 2009년 피고인과 팡을 교수로 임명하며, 이들의 영업비밀 활용 계획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탈취한 기술로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케이먼 제도에 셀 회사인 노바나(Novana)를 설립하였다. 이후 텐진대학 산하 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제조 회사 ROFS를 설립하였다.

나. 재판결과

피고인은 2015. 4. 1. 경제스파이 공모[18 U.S.C. § 1831(a)(5)], 영업비밀 절도 공모[18 U.S.C. § 1832(a)(5)], 경제스파이 및 방조[18 U.S.C. §§ 1831(a)(1)–(3) 및 2], 영업비밀 절도 및 방조[18 U.S.C. §§ 1832(a)(1)–(3) 및 2]로 기소되었고, 위 혐의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18개월의 징역형과 476,835달러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미국 특허청에 탈취한 기술로 출원한 특허를 법원 명령에 따라 포기하였다.

3. 2020. 2. 27. 선고 U.S. v. Hongjin Tan⁴⁷⁾

가. 사건의 경위

중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피고인은 2017. 6.부터 2018. 12.까지 미국 오克拉호마주에 위치한 필립스 66(Phillips 66) 석유 회사에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정지 에너지 저장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특히 흐름 배터리(flow battery)를 개발하는 그룹에 배정되었다. 피고인은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허가 없이 수백 건의 연구 개발 자료를 복사하고 다운로드하였다.

47) <https://www.justice.gov/opa/pr/chinese-national-sentenced-stealing-trade-secrets-worth-1-billion> (2024. 12. 19. 확인).

나. 재판결과

피고인은 2019. 11. 영업비밀 절도[18 U.S.C. §1832(a)(1)], 영업비밀 무단 전송[18 U.S.C. §1832(a)(2)], 영업비밀 무단 소지[18 U.S.C. §1832(a)(3)]로 기소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기소인정합의, plea agreement).

오클라호마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4개월의 징역형 및 피해회사에 15만 달러의 배상명령을 선고하였다.

IV. 검토

미국의 기술 유출 대응 법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양형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술 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 내지 손실액을 기준으로 범죄단계를 설정하여 양형 범위를 마련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항목에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타당성과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2절 일본



I. 개요

산업보안에 관한 일본의 법과 제도의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기술 유출 관련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부정경쟁방지법

1. 영업비밀의 요건

제2조(정의)

⑥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그 밖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이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및 영업상 정보이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첫째,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둘째,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일 것(유용성), 셋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에 도입된 이래 그 정의가 변경되지 않았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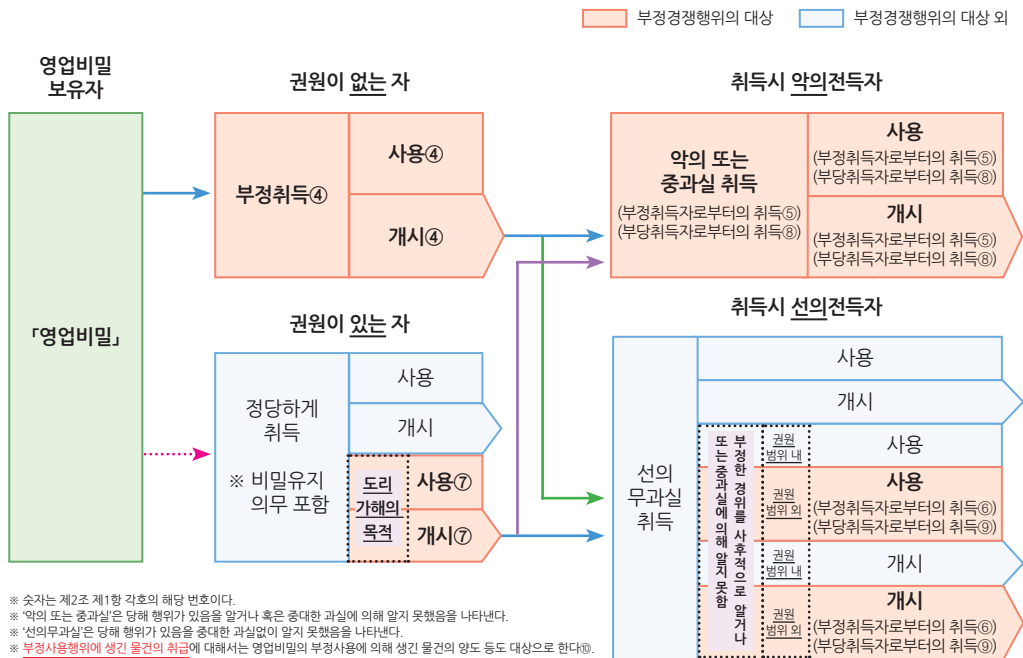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부정취득유형(제2

48)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102.

4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46頁.

조 제1항 제4호)으로,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신의칙위반유형(제2조 제1항 제7호)으로,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제시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전득유형(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은 취득시 악의전득유형 및 취득시 선의전득유형으로 나뉘며 전자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비밀부정취득행위의 개재(介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및 개시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5호)를 의미하고, 후자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 및 개시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6호)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영업비밀부정개시행위(제2조 제1항 제7호)의 개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 및 개시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9호)를 의미한다. 넷째, 영업비밀침해물품양도 등의 유형(제2조 제1항 제10호)으로, 앞서 기술한 ①~③의 부정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⁵⁰⁾

[그림 3] 일본 영업비밀침해행위⁵¹⁾

50)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97-98頁.

51)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97頁.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의 침입, 부정접근행위(「부정접근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정접근행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영업비밀보유자의 관리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을 때
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혹은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시한 때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 제4항 제2호의 죄(전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5항 제2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때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 2호나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 제4항 제2호의 죄(전 2호의 죄에 해당하는 개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5항 제2호의 죄에 해당하는 개시가 개재된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때
5.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위법사용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및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때(해당 물건이 위법사용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양도,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및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한 자
- 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도화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횡령하는 것
 - 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대하여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하여 그 복제를 작성하는 것
 - 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서 소거해야 하는 것을 소거하지 않고,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소거한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것
2.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위배되어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되는 방법으로 영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위배되거나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
 3.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종업원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되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제2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4.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재직 중에 해당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그 영업비밀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제2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5.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5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업원 등 위법사용행위'라고 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해당 물건이 종업원 등 위법사용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수하거나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0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을 실시한 때
 2.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신용 또는 명성을 해할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을 실시한 때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을 실시한 때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제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을 실시한 때
 5.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광고나 거래에 사용하는 서류 혹은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허위표시를 한 때(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때
 7.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
 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개시를 한 때
 3.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때
 4.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서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개시를 한 자
 3.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
- ⑥ 제1항, 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 ⑦ 제3항 제6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⑧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 제4항 제1호 또는 제2

호, 제5항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6항(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⑨ 제3항 제6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동호(제3항 제6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⑩ 제4항 제4호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

⑪ 제4항 제4호의 죄는 일본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으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본 국외에서 동호(제4항 제4호)의 죄를 범한 일본 국민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형법 및 그 밖의 벌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제21조 제3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일본 국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해외중벌규정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형사소송절차 특례

가. 서론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2011년 개정으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가감 없이 영업비밀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 오히려 피침해자의 권리가 2차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비공개를 허용하는 조항들이다(제23조~제31조).⁵²⁾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었으며, 재판절차의 주요한 부분이 공개됨에 따라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헌법 제37조 제1항)이나 재판공개 원칙(헌법 제82조)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⁵³⁾

52)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107.

53)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1頁.

나. 공소사실에 관한 영업비밀의 은닉 결정

제23조(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

- ① 재판소는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 제5항이나 제6항의 죄 또는 전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죄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싶지 않은 취지의 신청이 있는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은 사전에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1) 취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된 영업비밀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피해기업이 고소를 주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는데, 재판소는 피해자 등이 신고함으로써 영업비밀 내용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⁵⁴⁾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영업비밀침해죄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인(訴因)으로 특정된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15년 개정 후에도 계속 규정하고 있다.⁵⁴⁾

(2) 요건 및 절차

제1항의 은닉결정은 해당 사건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영업비밀이란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영업비밀, 즉 영업비밀침해죄의 소인으로 특정된 영업비밀(해당 사건 기소장의 공소사실에 침해된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1항의 은닉결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1항의 은닉결정은 공소사실에 관한 영업비밀, 즉 피해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

54)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2頁.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의 은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은닉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판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청을 거친 후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⁵⁵⁾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러한 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이다. 제1항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전단).⁵⁶⁾

이러한 신청은 사건이 기소된 후에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은닉결정의 실효성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기소 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⁵⁷⁾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소가 기소장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검찰관을 통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등에게 있어서 재판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보다 수사단계부터 통상적으로 교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검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그 부담도 적고, 은닉결정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제1항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검찰관은 재판소의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나 자료에 근거한 의견을 첨부하여 재판소에 통지한다(제23조 제2항 후단).⁵⁸⁾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등 이외에 해당 사건에 관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결정 대상으로 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2011년 최고재판소규칙)]⁵⁹⁾ 제2조 제1항 제4호].⁶⁰⁾ 은닉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예컨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어떠한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해당 약품의 명칭이 은닉해야 하는 사항의 전형이 되지만, 그 외에도 해당 약품의 성질·속성이나 구입처 등이 알려짐으로써 해당 약품이 특정되어 버릴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은닉결정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

55) 실무에서는 수사기관(검찰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법정에서 영업비밀의 내용을 은닉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전달한 후에 그 은닉결정을 신청하게 된다.

56)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3頁.

57) 은닉결정은 공판 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9조 제1항).

58)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3頁.

59) 「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係る刑事訴訟手続の特例に関する規則」(2011年 最高裁判所規則 第4号) <<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file3/302002.pdf>> (최종확인 2024. 7. 26).

60) 영업비밀이란 다양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A, B, C의 3가지를 들 수 있는 경우에, 은닉을 희망하는 것은 A뿐인지, B와 C뿐인지, A와 B와 C의 전부인지 하는 식으로 은닉해야 할 정보를 특정 및 선택하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는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신청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⁶¹⁾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1항의 은닉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신청에 관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은닉할 필요성, 은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내용·정도, 이를 공개된 법정에서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소는 제1항의 은닉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소가 공소사실과 관련된 영업비밀 내용의 은닉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그 범위를 정하여 은닉결정을 실시하는데, 그 범위를 정하여란 은닉결정에 의하여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도록 하는 사항의 범위(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은닉결정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속성 등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음을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A, B, C 중에서 A 및 B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예컨대, 재판소가 C도 포함하여 은닉결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C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C를 은닉하는 것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을 실시한 후에 C도 포함하여 은닉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⁶²⁾

(3) 효과

은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건의 절차는 해당 은닉결정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에 따라 심문 등의 제한(제25조)이나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제26조)과 같은 조치 등을 강구하게 된다.⁶³⁾ 또한 은닉결정은 이를 실시한 재판소와 관련된 심급에서의 심리

6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4頁.

62)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5頁.

63) 은닉결정이 있는 경우에 검찰관은 사건의 성질, 심리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구성정보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⁶⁴⁾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해당 심급에 한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은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급심에서 계속 은닉하기 위해서는 각 심급에서 다시 신청 및 은닉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⁶⁵⁾

재판소에 의한 은닉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소에 의한 은닉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항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⁶⁶⁾ 또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소가 은닉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원칙대로 공개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각하결정과 같은 특별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⁶⁷⁾ 한편,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을 한 피해자 등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은닉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더라도, 그 후 소송의 진전에 따라 다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다시 은닉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⁶⁸⁾

다. 피고인 등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은닉결정

제23조(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

③ 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및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취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해당 사항

특정사항 중 공개법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2011년 최고재판소규칙 제4조 제1항).

64) 한편, 해당 심급에서 한 번 은닉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심급의 종료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공판기일마다 은닉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65)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5-336頁.

66) 은닉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① 은닉결정의 결과, 소송관계인이 실시하는 심문 등이 제한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심문 등을 제한하는 재판장의 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 자체를 불복신청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한다. ② 재판소는 은닉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고 있으며(제23조 제1항의 은닉결정에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관의 의견이 재판소에 통지된다), 불복신청을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한다. ③ 은닉결정의 결과, 기소장 낭독 등은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67) 재판소는 은닉결정을 한 경우를 비롯하여 은닉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2011년 최고재판소규칙 제6조 제2항 후단).

68)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6頁.

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피고인 및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취지

제1항의 은닉결정은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인으로 특정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검찰관에 의한 범죄의 증명을 위하여 그 주장 입증이 불가결한 피고인이나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이를 절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등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제3항의 은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⁶⁹⁾

(2) 요건 및 절차

제3항의 은닉결정은 “피고인 및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자로는 ① 피고인이 근무한 기업, ② 피해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 근무기업으로부터 비밀을 유지하여 제시한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절차적 보호가 없으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증인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개법정에서 진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소인으로 특정된 영업비밀 이외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은닉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의 은닉결정은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할 수 있다.⁷⁰⁾

제3항의 은닉결정을 하려면 피고인,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범죄의 증명 및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이 필요하다. 제1항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소인으로 특정된 영업비밀로서 범죄의 증명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청 대상이 되는 피고인 및 그 밖의 자가

6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7-338頁.

70)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8頁.

보유하는 영업비밀은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영업비밀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은닉조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영업비밀을 형사소송절차에서 주장 및 입증의 필요성 관점에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⁷¹⁾

제3항의 은닉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및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고인 등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제1항의 신청 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소인으로 특정한 영업비밀이며, 이미 검찰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는 유형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제3항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은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영업비밀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서 은닉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보호성 관점에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고인 등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⁷²⁾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사업활동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유자가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사업활동 중의 극히 일부에 이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일부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재판소는 제3항의 은닉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을 한 자의 상대방⁷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재판소가 피고인 및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 내용의 은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에 지장이

7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9頁.

72)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39頁.

73) 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대방이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상대방이 된다.

생길 우려는 없는지, 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⁷⁴⁾

라. 호칭 등의 결정

제23조(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

④ 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결정(이하 ‘은닉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영업비밀구성정보 특정사항(은닉결정에 의하여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도록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및 그 밖의 표현을 정할 수 있다.

(1) 취지

은닉결정이 실시된 경우에 그 사건의 절차는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은닉결정에 의하여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도록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소송관계인이 공개법정에서 실시하는 심문, 진술 등에 있어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표현을 일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도록 하면서도, 또한 소송관계인 전원이 통일적으로 사용·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해당 신문, 진술 등을 할 수 있다.⁷⁵⁾

따라서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비밀구성정보의 특정사항에 관한 명칭,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및 그 밖의 표현 등(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이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물의 명칭(사물을 나타내는 표현) 이외에 그 속성,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표현 등을 말한다. 또한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및 그 밖의 표현이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내용

74)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0頁.

75)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1頁.

에 포함되는 사물의 명칭이나 그 속성, 성질 등을 공개법정에서 사용할 것으로서 재판소에 의하여 정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또한 재판소는 호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⁷⁶⁾

(2) 호칭 등의 규율방식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및 그 밖의 표현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 사항에 관한 심문 및 진술 등을 공개법정에서 해당 사항을 밝히지 않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언의 대상이 되는 명칭 및 그 밖의 표현이 명칭이면 명칭으로 정하고, 형용표현이면 형용표현으로 정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심문, 진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에 관한 제조방법에 대하여 본 사건의 제조 방법, 해당 제조방법에서 사용하는 금속에 대하여 금속 A, 해당 금속이 갖는 성질에 대하여 특성 B를 가지고, 해당 금속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C사라고 한 것과 같이 호칭 및 그 밖의 표현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⁷⁷⁾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인 특정한 물질이 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구성 정보특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호칭을 정할 것이 아니라 물질 A라고 하는 것처럼 보다 추상화한 문언을 사용한 호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호칭 등의 결정을 함에 있어 재판소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할 사항 등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제27조). 특히 재판소는 검찰관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3항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호칭 등의 결정 대상으로 하여야 할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과 관련된 명칭 및 그 밖의 표현 등 호칭 등의 결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1년 최고재판소 규칙 제5조).⁷⁸⁾

마. 은닉 결정의 취소

제23조(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

⑤ 재판소는 은닉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

76)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1頁.

77)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1~342頁.

78)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2頁.

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게 된 때 또는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 131호)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조항이 철회 또는 변경되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은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은닉결정에 관한 전항의 결정(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은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 또는 이러한 사건이 원래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은닉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은닉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소는 은닉결정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호칭 등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회 실시한 호칭 등의 결정(제23조 제4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⁷⁹⁾

바. 기소장 낭독방법의 특례

제24조(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 ① 은닉결정이 있었던 때에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의 기소장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7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경우(해당 조치와 관련된 개인특정사항(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특정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전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 중 기소장은 해당 조치에 관한 개인특정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장 초본 등(형사소송법 제27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소장초본 등을 말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소장 초본 등(형사소송법 제27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소장 초본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7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2-343頁.

(1) 취지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 낭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기소장에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낭독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질 우려가 있다.⁸⁰⁾ 따라서 공개법정에서의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 은닉결정(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 있었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전단),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⁸¹⁾

(2) 내용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는 예컨대, 호칭 등의 결정으로 정해진 호칭 등을 사용하여 낭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⁸²⁾ 특히 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등의 개인특정사항을 은닉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 등본이 아닌 범죄피해자 등의 개인특정사항 기재가 없는 기소장 초본 등을 송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형사소송법 제271조의2).⁸³⁾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하여 공개법정에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은닉결정이 있었던 경우⁸⁴⁾에 만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면,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에 관한

80) 공판 전 정리 절차조서 등의 낭독 또는 요지의 고지, 소인 또는 벌칙조항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판결의 선고 등에 대해서도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년 최고재판소규칙 제7조 제1항).

8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4-345頁.

82)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기재가 있는 기소장 등본이 송달되는 것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기소장이 낭독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기재가 있는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동조 제1항 후단) 그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83) 2023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에게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점(형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에 관하여 예외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84) 기소장에서 개인특정사항의 은닉조치가 취해진 사건에 대하여 공개법정에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의 은닉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경우로서 예컨대, 폭력단 조직에 소속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그 성명이나 주거 등을 알지 못하는 영업비밀보유자를 협박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건(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특정사항이 피고인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어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⁸⁵⁾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2항에서 기소장 초본 등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치와 관련된 개인특정사항 전부를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⁸⁶⁾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1항 후단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개인특정사항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장이 아니라 기소장 초본 등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의 개인특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동조 제1항에 의한 통지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장이 아니라 기소장 초본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체를 하고 있다.⁸⁷⁾⁸⁸⁾

사. 심문 등의 제한

제25조(심문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은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실시하는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때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다.

②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85)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5頁.

86) 형사소송법 제271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치에 관한 개인특정사항의 전부를 통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중 해당 조치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은닉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7)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제24조 제1항 전단의 대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장 초본 등의 송달이 있는 경우에 기소장 초본 등에서 은닉의 대상이 된 개인특정사항은 통상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은닉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특정사항 또는 증인 등의 특정사항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90조의2 또는 제29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소장 낭독은 피해자의 특정사항 또는 증인 등의 특정사항(개인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제290조의2 또는 제290조의3).

88)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5頁.

(1) 취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통상 공개법정에서 소송관계인에 의한 심문, 진술 및 피고인 신문(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이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송관계인은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 특별변호인(형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및 보좌인(형사소송법 제42조),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 대표자 등 당사자에 준하는 자(형사소송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83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7조에서 의미하는 소송관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문 등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은닉결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심문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2) 제한 대상이 되는 심문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 제1항의 제한 대상이 되는 소송관계인이 하는 심문 및 진술에는 예컨대, ① 검찰관에 의한 모두진술, 논고,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한 죄상인부(罪狀認否), 변론, 최후진술,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④ 증인 등의 증언, ⑤ 피고인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제25조 제1항 후단의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란 검찰관, 변호인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⁹⁰⁾

(3)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심문 등의 제한은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문 등이 제한되면 단순히 심문 등의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불편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의 증명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의 입증이 곤란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에서 필요한 특정한 사실의 주장 및 입증이 곤란

8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7頁.

90)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8頁.

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심문해야 할 사항 등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령하고(제27조), 그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호칭 등을 결정(제23조 제4항)하거나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제26조)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⁹¹⁾

(4) 조치청구

심문 등의 제한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소는 조치청구(処置請求)를 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여기서 조치청구란 검찰관에 대하여 해당 검찰관을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고,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및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통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이러한 청구를 받은 자는 그 후 취한 조치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제6항).⁹²⁾

아.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등

제26조(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

- ① 재판소는 은닉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을 하는 때에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해자, 피고인 및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신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제1항, 제273조 제2항, 제274조, 제303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제158조 제3항 또는 제159조 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대체하고

9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8頁.

92)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48-349頁.

형사소송법 제158조 제2항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 대체하며,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기일”로 대체하고, 형사소송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일시 및 장소”로 대체하며, 형사소송법 제303조 중 “증인, 그 밖의 자의 신문, 검증, 압수 및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거서류”로 대체한다.

(1) 취지

은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인 등의 신문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하여 예컨대, 증인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순간적으로 언급하는 등으로 심문 등의 제한(제25조 제1항)이 이루어지거나,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반대로 호칭 등의 결정(제23조 제4항)이나 심문 등의 제한(제2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이 심문 또는 진술을 주저하거나 위축되어 충분한 심문 또는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은닉결정을 한 경우에 재판소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는 때에 공판기일 외에 증인 등의 신문 또는 피고인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⁹³⁾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은 종전부터 형사소송법 제158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증인의 중요성이나 연령 등 증인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법정에서 신문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데 반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은 영업비밀의 내용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목적은 달리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판기일 외의 피고인신문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한다.⁹⁴⁾

(2) 요건 및 절차

재판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을 할

93)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1頁.

94)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1頁.

수 있다.

첫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심문이나 진술 혹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⁹⁵⁾ 둘째, 증인 등의 신문이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해자, 피고인 및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즉 요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영업비밀이 밝혀져 피해자 등이 곤혹스러워하는 등 대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⁹⁶⁾ 셋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호칭 등의 결정(제23조 제4항), 심문 등의 제한(제25조 제1항)과 같은 조치에 의하여 증인 등의 심문, 진술 등에 관하여,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는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이른바 보충성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⁹⁷⁾

(3) 의견청취 및 증거조사

재판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공판기일 외에 실시하는 취지를 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검찰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신문 등을 공판기일 외에 하는 취지를 규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신문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제27조).⁹⁸⁾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후 공판기일에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3조). 해당 증인신문 등에서 이루어진 신문 및 진술 등이 호칭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95)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2頁.

96)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2頁.

97)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2頁.

98)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2-353頁.

않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조사에 의하여 공개법정에서 해당 사항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호칭 등의 결정을 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명칭 등을 대신하는 호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은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⁹⁹⁾

자. 심문 등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제27조(심문 등에 관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재판소는 호칭 등을 결정하거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실시하는 취지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 할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은닉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다수의 호칭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상정되며, 그 경우에 호칭 등의 결정을 명확하게 빠짐없이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에서 소송관계인이 하는 심문 등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 중 어떠한 사항에 어떠한 형태에 관한 우려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증인신문 등을 공판기일 외에 하는 취지를 정할 것인지 여부(제26조)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인신문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문 등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 중 어떠한 사항에 어떠한 형태에서 걸칠 우려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¹⁰⁰⁾

따라서 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경우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신문하는 사항 등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소가 사전에 소송관계인의 진술 등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호칭 등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의 도중에 수차례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거나 호칭 등을 결정하는 것 등이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¹⁰¹⁾

9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3頁.

100)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4頁.

10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4-355頁.

차. 증거서류 낭독방법의 특례

제28조(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

은닉결정이 있었던 때에 형사소송법 제30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0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거서류에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낭독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공개법정에서 밝혀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은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서류를 낭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는 예컨대, 호칭 등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진 호칭 등을 이용하여 낭독하는 방법이 있다.¹⁰²⁾

카. 공판 전 정리절차의 결정

제29조(공판 전 정리절차 등의 결정)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차에 할 수 있다.

1. 은닉결정이나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
2.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실시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은닉결정 및 호칭 등의 결정과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제29조 제1호)을 비롯하여 증인신문 등을 공판기일 외에 실시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제29조 제2호)에 대하여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차에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공판 전 정리절차란 충실한 공판의 심리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로서 실시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316조의2 내지 제316조의27, 제316조의29 내지 제316조의32), 기일 간 정리절차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

102)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6頁.

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후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로서 실시되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316조의28 및 제316조의29 내지 제316조의32).¹⁰³⁾

타. 증거개시의 영업비밀 은닉요청

제30조(증거개시의 영업비밀의 은닉요청)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피해자, 피고인 및 그 밖의 자의 사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고지하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이나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검찰관 및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1관 제2목(형사소송법 제316조의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증거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취지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증거개시에서 증거서류 등에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그 개시를 받은 상대방을 통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내용이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¹⁰⁴⁾ 따라서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개시할 때에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영업비밀이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103)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7頁.

104)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관(보관검찰관)에 대하여 열람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검찰관이 「형사확정소송기록법」에 따라 열람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관검찰관이 해당 기록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그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피해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확정소송기록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일부를 허가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마스킹한 기록만을 열람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록 할 것을 요구하는 은닉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¹⁰⁵⁾

(2) 요건 및 절차

부정경쟁방지법 제30조의 은닉요청은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할 때에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이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 즉 소인으로 특정된 영업비밀을 의미하고,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이란 피고인,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의미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30조의 은닉요청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은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해자, 피고인 및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즉 요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닉요청을 할 수 있다.¹⁰⁶⁾

(3) 효과

부정경쟁방지법 제30조의 은닉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범죄의 증명이나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닉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 피해자 등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제2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¹⁰⁷⁾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0조의 은닉요청은 관계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관계자에는 피고인이 포함된다.¹⁰⁸⁾ 특히 제30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로 공소사실

105)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8-359頁.

106)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9頁.

107)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59-360頁.

108)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소로부터 기소장의 등본이 송달되는 것으로부터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1

의 영업비밀(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그 비밀관리성만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검찰관이 변호인에 대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 서류를 개시할 때에 해당 영업비밀의 상세한 내용을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¹⁰⁹⁾

III. 주요 사례

1. نيسان자동차 영업비밀유출사건

- 제1심: 요코하마지방법판소 2016년 10월 31일(유죄: 집행유예 판결)
[横浜地判 平成28年10月31日. (平成26年(わ) 第1529号)]
- 항소심: 도쿄고등재판소 2018년 3월 20일(항소기각)
[東京高判 平成30年3月20日. (平成28年(う) 第2154号)]
- 최고재판소: 2018년 12월 3일(상고기각)
[最判 平成30年12月3日. (平成30年(あ) 第582)]

니산자동차의 서버컴퓨터에 보존된 영업비밀로서 자동차 상품기획 등의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던 نيسان자동차의 종업원이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업계 회사인 이스즈자동차로 이직하기 직전에 해당 데이터 파일을 개인 하드디스크에 3,253건을 복제하였다. 이러한 복제는 종전 نيسان자동차의 업무수행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그 밖의 정당한 목적을 살펴보는 사정도 없었는바, نيسان자동차 종업원(기소 당시에는 이스즈자동차 종업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지만, 최고재판소는 2018. 12. 3.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제1심의 ‘징역 1년, 집행

항 단서). 기소장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품 X의 제조방법”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 제조방법에 관한 재료, 가공온도, 가공시간 등과 같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은 기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해당하여 제30조의 은닉요청의 대상이 된다.

109)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360頁.

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전 사건이다.¹¹⁰⁾

이 사건은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던 종업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직전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신이 소장하는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사건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3호의 영업비밀영득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2009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업비밀의 영득에 추가하여 사용 및 개시를 요구하였지만, 200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① 기록매체 등의 횡령, ② 기록매체 등 기록의 복제 작성, ③ 기록매체 등의 기록소거의무를 위반한 후 소거를 가장한 경우에 한정된 후 영득행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다. 예컨대, 2009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던 덴소(Denso)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영업비밀영득행위는 입증할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의 사용·공개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¹¹¹⁾

200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목적요건으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도리가해목적)으로 개정하였다. 부정경쟁의 목적이 자신을 포함한 특정경쟁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목적, 즉 경쟁관계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도리가해목적은 공개상대방이 외국정부, 인터넷상 댓글범죄자도 처벌대상으로 하여 다소 조문 적용을 유연하게 하였다. 해당 죄는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제시된 자가 도리가해의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되어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보유자의 관리지배 이외에 함으로써 의사발현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다.¹¹²⁾

입법자는 본 사건에서 논점이 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형태로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말하며, 스스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자기 도리 목적)뿐 아니라,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제3자 도리 목적)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 이외에 당벌성 높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직회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영업비밀을 참고

110)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2頁.

111)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2頁.

112)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3頁.

할 목적이 있었다는 등 모호한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¹³⁾

최고재판소는 2018. 12. 3. 피고인의 당벌성이 높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제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사실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구성요건 충족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최고재판소가 소극적 사실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의 행위는 피고인이 닛산에서 이스드로 이직하기 직전 실시한 행위였다. 둘째, 해당 데이터는 닛산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 셋째, 회사의 정보를 개인 PC나 저장매체 등에 보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넷째, 회사 PC에서 데이터를 빼내 개인 PC에 저장하였지만, 자택에서 퇴직 직전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잔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다섯째, 피고인은 퇴사한 다음날 짐 정리 등을 위하여 기존 회사에 출근하여 3,253건의 데이터 파일을 복제하였다.¹¹⁴⁾

도리가해목적은 영업비밀영득죄를 목적범으로 구성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인데, 이번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목적범 구성요건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의 입증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형사사건이긴 하지만, 피해기업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⁵⁾

2. 도시바(東芝) 사건

- 제1심: 도쿄지방법재판소 2015년 3월 9일(유죄: 실행판결)
[東京地判 平成27年3月9日. (平成26(特々) 438号)]
- 항소심: 도쿄고등재판소 2015년 9월 4일(항소기각)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메모리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SK하이닉스에 유출시킨 샌디스크 일본인 전 종업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다. 도쿄지방법재판소는 2015. 3. 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벌금 300만 엔, 외장하드 1개의 몰수 판결을 하였다. 재판소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113)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3頁.

114)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3頁.

115)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3頁.

을 부과하였다.¹¹⁶⁾

재판소는 양형의 이유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해회사 등이 경업하는 다른 회사에 앞서 개발한 당시 세계 최소의 반도체 메모리인 낸드플래시메모리의 신뢰성검사의 방법이나 시험데이터 등에 관한 영업비밀정보를 다른 나라의 경업회사에 유출시킨 후 지극히 악질적인 영업비밀정보를 공개한 사안으로서 일본의 산업 중에서 중요한 반도체사업 분야에 있어 기술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안이다. 또한 재판소는 중요한 반도체사업 분야에서 피해회사인 도시바가 경업회사에 앞서 개발한 영업비밀정보를 다른 나라의 경업회사에 유출시킨 것에 근거하여 이는 지극히 악질적인 영업비밀정보 공개사안이라고 단정하였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의 하나인 유용성에 관하여 그 당시 연간 약 2조 엔 시장의 규모였던 낸드플래시메모리의 제품을 개발, 양산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공개정보를 유출시킨 경업회사가 도시바 낸드플래시메모리의 개발 및 양산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플래시메모리의 신뢰성 검사방법 등에 관한 피해 회사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 사건의 개시정보에 높은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미 약 330억 엔의 화해금 지급으로 결정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본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 입은 회사들의 경쟁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사건의 결과는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¹¹⁷⁾

재판소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가치가 높았다는 점,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점,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범죄의 중대성 근거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2009년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특히 2009년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을 영득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또는 부정개시가 필요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2008. 7. 18.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 소재하는 SK하이닉스에서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복제에 관한 ‘43nm NAND PE-CVD 트랜스퍼자료’ 이외에 9개 파일 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Summary of Toshiba DR Experiment.ppt’ 파일을 슬라이드 영사하여 개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116)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3-14頁.

117)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4頁.

대하여 재판소는 부정공개행위를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부정개시행위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9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그 적용이 용이하게 되었다.¹¹⁸⁾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2015. 9. 4. 도시바의 경쟁력 저하에 관하여 뒷받침 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제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충하면서 영업 비밀의 3가지의 요건 중 유용성과 비공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물리·화학현상이나 견해에 관하여 본 사건 당시 공지된 정보 등도 포함된 것이 인정되지만,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이나 견해에 근거하여 실시한 신뢰성검사로 얻어진 조건이나 시험데이터이며, 이것이 공지되지 않은 이상, 이미 공지된 정보 등도 이것과 일체의 것으로서 고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공지의 기술이나 시험방법이라도 당시 SK하이닉스보다 미세한 디자인규칙의 제품의 양산화에 성공하였던 도시바 등이 그것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도시바와 동등한 기술 등을 이용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도시바의 수준을 용이하게 따라잡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경쟁상의 이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하였다.¹¹⁹⁾

3. 야마자키마작사건

- 제1심: 나고야지방법재판소 2014년 8월 20일(유죄: 집행유예 판결)
[名古屋地判 平成26年8月20日. (平成24年(わ) 第843号)]
- 항소심: 나고야고등재판소 2015년 7월 29일(항소기각)
[名古屋高判 平成27年7月29日. (平成26年(う) 第327号)]
- 최고재판소 2016년 10월 31일(상고기각)
[最判 平成28年10月31日. (平成27年(あ) 第1351号)]

본 사건의 특징은 금속공작기계 제조업체 야마자키마작의 중국 국적 종업원이 중

118)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4頁.

119)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4頁.

국 거주 지인에게 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을 뿐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파일 6개를 도리가해목적으로 자기 소유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하였지만, 실제 유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된 사건으로서 2009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⁰⁾

검찰의 구형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벌금 100만 엔이었던 것에 대하여 제1심의 나고야지방법판소는 2014. 8. 20.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의사가 반드시 강력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고, 다행히 본 사건에서는 각 파일을 포함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검찰의 구형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엔, 외장하드 1개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업무상 필요가 없는 데도 부정한 IP주소에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 대여 PC에서 야마자키마작 본사 서버에 접속하여 공작기계의 부품설계도면 등 6개 파일을 자기 소유 하드디스크에 전송, 복제하여 영업비밀을 영득하였다.¹²¹⁾

피고인은 영득한 영업비밀을 지인에게 채팅으로 판매하였지만, 해당 거래는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은 유출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부정개시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채팅으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코멘트를 남기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이 인정되었고, 이 규정은 2009년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나고야지방법판소는 야마자키마작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6조(공판기일 이외의 증인신문 등)를 적용하여 공판기일 이외의 기일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다. 경제산업성 지적재산정책실에 의하면, 본 사례는 위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사건일 것이라고 한다.¹²²⁾

항소심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2015. 7. 2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유무 등 3가지를 검토하였지만, 기존 제1심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유용성의 유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 사건 공작기계의 주요 부품에

120)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5頁.

121)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5頁.

122)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5-16頁.

다른 회사의 특별부품이 이용되고 있는 점이나 해당 부품을 조립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유용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정보를 취득하는 제3자에게 있어서 해당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요소인 것처럼 말하는 논의는 독자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은 영업비밀을 입수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작기계의 제조·판매 등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용성 유무의 판단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¹²³⁾

IV. 검토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술 유출 범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소송절차 특례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으로 검토할만하므로 해당 항목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23)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16頁.

제3절 독일



I. 개요

종래 독일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s, UWG)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부정경쟁방지법 내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은 그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¹²⁴⁾ 이에 EU의 영업비밀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호수준을 담보하고,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일치된 보호를 위하여 2019. 4. 18. 영업비밀 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되었다.¹²⁵⁾

이하에서는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영업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

제1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영업비밀을 무단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 a)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계통의 사람들에게 그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배열과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124)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110.

125)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방안, 특허청(2023. 12.), 38.

가 아니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b) 정보의 정당한 보유자가 적절한 기밀유지조치를 취한 이후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정보

c) 비밀 유지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

영업비밀보호법의 목적은 영업비밀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로부터 영업비밀 보유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및 비밀 유지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¹²⁶⁾

2.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처벌규정

가.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영업비밀 보유자를 민사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상으로도 보호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 참조). 영업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행위의 유형

현행 영업비밀보호법상 처벌규정인 제23조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규정인 제17조 내지 제19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행위유형에서의 구 부정경쟁방지법과 현행 영업비밀보호법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⁷⁾

[표 9]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행위 유형

	금지된 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1	기업스파이 행위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2	취득한 비밀의 누설	제17조 제2항 제2호 첫 번째 경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제1호 a목)

126)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111.

127)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2023, Kap. 1 Rn. 864a.

	금지된 행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3	비밀누설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 제3호)
4	제3자가 공개한 비밀	제17조 제2항 제2호 두 번째 경우	제23조 제2항
5	기술제안서남용	제18조	제23조 제3항
6	누설을 위한 유도 및 제공	제19조	제23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영업비밀보호법상 개념 등의 타법 적용 여부

형법 제203조에 의하여 포섭되는 영업비밀의 무단 공개에 대한 직업법상 및 형법상의 보호는 영업비밀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영업비밀보호법 제1조 제3항 제1호). 영업비밀보호법의 개념과 평가(예컨대,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의 영업비밀 허용구성요건과 예외구성요건의 개념)를 다른 범죄구성요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개별 규범들에서 결정되어야 한다.¹²⁸⁾

(3) 금지된 행위에 대한 처벌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에 의하면 영업비밀침해는 경죄(輕罪)이다(형법 제12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일 이상 360일 이하의 벌금형이다(형법 제38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참조). 제3항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일 이상 360일 이하의 벌금형이다. 제4항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행위자가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한 자에게는 자유형 이외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41조).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에는, 법원은 그 몰수를 명해야 한다(형법 제73조 이하).¹²⁹⁾

128) Brockhaus, Das Geschäftsgeheimnisgesetz, Zur Frage der Strafbarkeit von Hinweisgeber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histleblowingRichtlinie, ZIS 3/2020, 102 (119); Köhler/Bornkamm/Feddersen/Alexander, 42. Aufl. 2024, GeschGehG § 23 Rn. 14a.

129) MüKoStGB/O. Hohmann, 4. Aufl. 2023, GeschGehG § 23 Rn. 170.

(4) 죄수관계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형법과 기타 부수형법의 다른 구성요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경합원칙(형법 제52조, 형법 제53조)에서 출발해야 한다.¹³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는 형법 또는 부수형법상의 범죄는 다음과 같다.¹³¹⁾

[표 10] 독일 영업비밀보호법과의 죄수 관련 범죄

	형법 및 기타 법률	범죄
1	형법 제203조	사적 비밀 침해
2	주식법 제404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3	유한책임회사법 제85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4	상법 제333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5	형법 제242조	절도
6	형법 제246조	횡령
7	형법 제263조	사기
8	형법 제263a조	컴퓨터사기
9	형법 제266조	배임
10	형법 제303조	손괴
11	형법 제299조	업무상 거래에서 수뢰 및 증뢰
12	형법 제331조 이하	공직자 관련 부패범죄
13	형법 제240조	강요
14	형법 제253조	공갈
15	특허법 제142조	특허법 위반
16	실용신안법 제142조	실용신안법 위반
17	의장법 제51조	의장법 위반
18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부정 사용
19	상표법 제143조	표시 침해
20	상표법 제143a조	EUTM 침해

130) Köhler/Bornkamm/Feddersen/Alexander, 42. Aufl, 2024, GeschGehG § 23 Rn. 81a.

131) Bott/Kohlhof, in: Hoeren/Münker (Hrsg.), GeschGehG, § 23 GeschGehG Rn. 116.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의 행위와 주식법 제404조의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도 아니고 보충관계도 아니다.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¹³²⁾

(5)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타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이외에도 기업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다른 형벌규정도 존재하는데,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1] 독일 영업비밀 보호 기타 법률

	근거 규정	범죄 주체	기본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고소권	법정형		특징
						기본형	가중형	
1	유한책임 회사법 제85조	사무관리자 감사회위원 청산인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회사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친고죄
2	주식법 제404조	이사회위원 감사회위원 청산인 감사/보조자	권한 없는 비밀공개 감사/보조자 상법 제333조 불처벌 시	상장회사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회사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친고죄
3	협동 조합법 제151조	이사회위원 감사회위원 청산인 감사/보조자	권한 없는 비밀공개 감사/보조자 상법 제333조 제340m조 불처벌 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협동 조합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친고죄

132) MüKoStGB/WeiB, 4. Aufl. 2023, AktG § 404 Rn. 78.

	근거 규정	범죄 주체	기본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고소권	법정형		특징
						기본형	가중형	
4	상법 제333조	감사/보조자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자본 회사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권한 없는 비밀사용	권한 없는 비밀사용				
5	경영체 조직법 제120조	경영협의회 위원 노동조합대표 사용자단체대표 전문가, 정보원 근로자 등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피해자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권한 없는 비밀사용	권한 없는 비밀사용				
			관계인사후 비밀공개	관계인사후 비밀사용				
6	관리직 대표자 위원회법 제35조	대표자위원회 위원/보충위원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피해자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사생활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7	사회법 제9권 제273a조	제한 없음	권한 없는 비밀사용	없음	피해자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사회법 제9권 제273b조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8	관계회사회 계공시법 제19조	감사/보조자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기업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권한 없는 비밀사용				

	근거 규정	범죄 주체	기본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고소권	법정형		특징
						기본형	가중형	
9	회사조직 변경법 제349조	대표기관위원 대리권있는 사원/파트너 감사회위원 청산인 조직변경참여 권리주체구성원 합병/분리/양도 감사자/보조자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조직변경 참여 권리주체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보충 관계
10	유럽경제 이익단체 실행법 제14조	사무관리자 청산인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유럽경제 이익단체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11	유럽회사 정관실행법 제53조	관리/감사기관 구성원 사무관리감독자 행정위원회 위원	권한 없는 비밀공개	대가/의도 권한 없는 비밀공개 권한 없는 비밀사용	회사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12	공인 회계사법	결산검사자 감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 결산검사자 감독기관에 설치된 전문적 자문기구의 구성원 결산검사 감독기관의 기타 수임자	비밀사용	대가/의도 비밀공개 비밀공개	피해자	1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2년 이하 자유형 벌금형	신분범 고의범 절대적 친고죄

III. 실무 현황

1. 현황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형사소추실무상 언급할 가치 있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한다.¹³³⁾ 경찰의 범죄통계상으로도 영업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뚜렷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¹³⁴⁾ 오히려 영업비밀법 위반 사건의 발생 빈도는 종전과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³⁵⁾ 영업비밀보호법 처벌규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형사법원의 판례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¹³⁶⁾

영업비밀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향후 경제계에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기업의 형사 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관련 사건 수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¹³⁷⁾

한편,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120건, 2022년에는 73건이 발생했다.¹³⁸⁾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1호, 제2호, 제2항, 제4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2021년 129건, 2022년 99건으로 집계되었다.¹³⁹⁾ 수사 비율은 약 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1년에는 97.1%와

133)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Kap. 1 Rn. 864a.

134)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Kap. 1 Rn. 864a.

135)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2023, Kap. 1 Rn. 864a.

136)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2023, Kap. 1 Rn. 864a.

137) Schneiderhan, in: Hoppe/Oldekop (Hrsg.), Geschäftsgeheimnisse, Schutz von Know-how und Geschäftsinformationen, Praktikerhandbuch mit Mustern, 2. Aufl. 2023, Kap. 1 Rn. 864a.

138) PKS 2022 Tab. 01, Schlüsselzahl 715300; abrufbar im Internet unter <https://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2022/PKSTabellen/BundFalltabellen/bundfalltabellen.html?nn=194208>; letzter Aufruf am 14.4.2023; MüKoStGB/O. Hohmann, 4. Aufl. 2023, GeschGehG § 23 Rn. 4.

139) PKS 2022 Tab. 01, Schlüsselzahl 715400; abrufbar im Internet unter <https://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2022/PKSTabellen/BundFalltabellen/bundfalltabellen.html?nn=194208>; letzter Aufruf am 14.4.2023.

96.5%, 2022년에는 97.3%와 92.2%를 기록했다.¹⁴⁰⁾

2. 사례가 적은 이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직접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신고된 사건의 수는 적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미신고 사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은 범죄 수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피해를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위반 범죄의 경우, 중요한 논거가 추가된다. 기업이 기술 유출 범죄를 고소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범죄의 존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사실과 비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범죄자가 취득한 사건에서는 동일성 또는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견된 정보와 원래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피해 기업은 공판 심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논의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물리적 데이터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담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난제로 남아 있다. 거대한 저장 능력을 갖춘 초소형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컴퓨터 기술은 가해자가 전통적인 인쇄 매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은밀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극히 적은 것도 이해할 수 있다.

140) PKS 2022 Tab. 01, Schlüsselzahl 715300 und 715400; abrufbar im Internet unter <https://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2022/PKSTabellen/BundFalltabellen/bundfalltabellen.html?nn=194208>; letzter Aufruf am 14.4.2023.

3. 재판사례

가. 개관

영업비밀보호법이 2019년 4월에 시행되었으나, 2023년 8월 17일까지 약 12건의 판결만이 내려진 상태이다.¹⁴¹⁾ 양형에 관한 판단은 하급심에서 하는데, 공개된 판결은 상고심이라, 양형에 관한 판단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지지만, 공개된 판결은 상고심이므로 양형 판단의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 시행 이전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법 제23조의 내용을 계승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위반 사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본다.

나.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위반 사례

(1) OLG Karlsruhe (2. Strafsenat), Beschluss vom 29.01.2016

- 2 (6) Ss 318/15-AK 99/15¹⁴²⁾

카를스루에 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6. 1. 29.자 판결

- 사건번호 2 (6) Ss 318/15-AK 99/15

[사실관계]

피고인은 137건의 사례에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휴대폰의 카드차단 (Sim-Lock)을 해제하기 위한 잠금해제코드(Unlock-Code)를 만들어,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하이텔베르크 지방법원은 잠금해제코드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의 영업 비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양형판단]

(1) 2013. 10. 10. 하이텔베르크 구법원은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

141) Süddeutsche Zeitung, Geschäftsgeheimnisse: "Der Schaden ist unumkehrbar", 2023. 8. 17.자 기사,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unternehmen-millionen-geschaeftsgeheimnis-arbeitgeberwechsel-1.6137288> (2024. 11. 확인).

142) 이 사건의 제1심[AG Heidelberg, 10. Oktober 2013, XX(사건번호 비공개)]과 항소심(LG Heidelberg, 9. März 2015, 4 Ns 310 Js 15103/08)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음. 따라서 위 사실관계 요약과 제1심 및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대해서는 상고심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참조하였음. 상고심 결정문은 Landesrecht BV, <https://www.landesrecht-bw.de/bsbw/document/NJRE001247565> (2024. 11. 확인); openjur <https://openjur.de/u/875628.html> (2024. 11. 확인).

호, 제5항 제1문, 제2문 제1호)를 이유로, 일수벌금 180일, 1일당 60유로의 전체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 (2) 항소심인 하이델베르크 지방법원은 제1심 절차가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게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형기의 1/3인 일수벌금 60일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면서, 보호관찰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3,000유로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였다.
- (3) 상고심인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은 양형판단이 사실법관의 재량에 속하며, 이 사건의 양형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판단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7 내지 제19조 위반 사례

(1) LG Essen (XXI. Strafkammer), Urteil vom 21.11.2008

– 56 Kls 39/07¹⁴³⁾

에센 지방법원 (제21형사재판부), 2008. 11. 21.자 판결 - 사건번호 56 Kls 39/07

[판결주문]

피고인의 기업비밀 폭로는 유죄이다.

피고인에게 2년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보호관찰부로 유예한다.

피고인은 소송비용 및 부대공소인의 필요비용을 부담한다.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1a호, 제4항.

[양형판단]

V. 양형

1. 형벌권의 범위

형법 제17조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하지만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구성요건도 충족되었다. 이는 특별히 중한 사건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3) BeckRS 2008, 139876,

피고인은 반복적인 범행을 통해 단순히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여러 수입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므로 영업적 행위를 하였다 (vgl. Diemer in Erbs/Kohlhaas, a.a.O., 158. Lfg., § 17 UWG Rz. 62). 즉, 피고인은 첫째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법상 중대한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 E의 설계도를 계속적으로 입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입수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4항의 법률효과가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몇 가지 형 감경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자백한 점, 그리고 피해를 원상 회복한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과 사건의 총체적인 중대성을 감안할 때, 법에서 정한 원칙적 사례들의 증빙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가중된 형벌 범위의 적용을 부적절하게 만들 정도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세부적인 전체 계획 속에 포함시켰으며, 자신의 매출을 7자리(백만 단위)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공소 참가인(여성)으로부터 "입수한" 노하우, 이름, 회사 이미지를 도용하여 동유럽 시장에서 자신의 생산품으로 판매할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노하우는 유한책임회사 E가 다년간 축적해온 기술 지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b) 본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특별히 중한 사건의 형벌권 범위를 형법 제46a조 제2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하여, 형벌로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및 9개월의 벌금형을 고려하고 있다. 형법 제46a조 제2호의 요건도 충족되었다.

3.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자유형은 형법 제56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이 유예된다.

(2) OLG Düsseldorf: Beschluss vom 09.02.2007

– 5 Ss 163/06 – 59/06 I, 5 Ss 163, 59/06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2007. 02. 09.자 결정

– 사건번호 5 Ss 163/06 – 59/06 I, 5 Ss 163, 59/06

[사실관계]

원심인 뒤셀도르프 구법원(Amtsgericht Düsseldorf)은 2005. 6. 1. 피고인에게 “8차례에

결친 영업비밀의 권한 없는 입수 및 그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전달”을 이유로 전체벌금형 75일과 1일당 10유로를 선고하였다.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b목, 제3항, 제4항, 형법 제22조, 제23조, 제53조.

[양형판단]

원심인 뒤셀도르프 구법원의 양형판단에는 법률상 오류가 없다. 2개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특별히 중한 사건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건의 사건에서 비밀을 외국에 넘기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미국과 프랑스 기업들에 고객명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독일처럼 EU에 속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이다.

(3) OLG Hamm Beschl. v. 21.12.1990 – 2 Ss 765/89¹⁴⁴⁾

함 고등법원, 1990. 12. 21.자 결정 – 사건번호 2 Ss 765/89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b목, 제3항, 제4항, 형법 제22조, 제23조, 제53조.

[주문]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비밀유출죄의 유죄이고, 컴퓨터 목록이 몰수됨을 전제로 항소를 기각한다.

각 피고인은 자신의 상소비용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부대공소인(여성)의 필수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관계]

Merkur Disc 슬롯머신으로 게임을 하던 중 발견된 피고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내 저장된 데이터 출력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조종되는 기기의 롤러 위치를 확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해당 기기를 무효하게 작동시키려 했다. 피고인들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목록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마르크에 매수하였다. 매도인들은 슬롯머신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슬롯머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확보한 게임 기기의 접근 보안을 해제하고, 컴퓨터

144) OLG Hamm Beschl. v. 21.12.1990 – 2 Ss 765/89, BeckRS 1990, 7959.

칩을 제거한 후 암호를 해독하여 데이터를 추출했거나, 또는 권한 없이 데이터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체포되기 전까지 롤러 상태를 탐지하고 위험없이 최상의 수익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형법 제263a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컴퓨터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각 14일의 일수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소하였다.

[결정이유]

- (8) 하지만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에 따른 비밀침해의 책임이 있다.
- (9) 물건(컴퓨터 프로그램과 목록)의 매도인들은 동종의 슬롯머신을 매수하여 잠금장치된 프로그램을 해제한 후 복사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또는 슬롯머신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물건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이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다. 기업비밀이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불과 1,000마르크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익을 얻고자 이와 같이 매수한 컴퓨터목록을 이용함으로써 기업비밀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결정이유 중 양형판단]

- (15) 결과적으로 양형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6) 비밀유출(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고 그 최고형이 자유형 3년인 반면, 형법 제23조 제2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형법 제263a조의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이 자유형 3년 9월일지라도,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할 이유는 없다. 범죄사실과 기타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에 대한 변경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참심재판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를 적용했다라도 더 적은 일수의 일수벌금형을 선고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일수 15일의 일수벌금형은, 선택할 수 있는 형량 범위의 최하한에 속한다.

(4) OLG Karlsruhe, Beschluss vom 6. Mai 2002 – 2 Ss 208/02

카를스루에 고등법원, 2002. 5. 6.자 결정 - 사건번호 2 Ss 208/02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b목.

[결정요지]

기업 직원에게 권한 없이 100,000개 이상의 주소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를 사용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2항 제2호(권한 없이 취득한 기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사용)로 처벌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14,000유로의 벌금형(벌금 일수 80일, 1일당 175유로)이 적절하다.

(5) BGH, Beschluss vom 30. August 2016 – 4 StR 194/16**연방일반대법원 2016. 8. 30.자 결정 - 사건번호 4 StR 194/16****[결정요지]**

에센 지방법원은 피고인을 1,770건의 업무상 컴퓨터사기죄와 영업 및 기업비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중 3건은 미수) 그리고 1건의 컴퓨터사기죄와 영업 및 기밀누설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전체형 3년 5월의 자유형과 몰수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연방일반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연방일반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률상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양형 통계**가. 벌금형**

독일은 일수벌금형제도를 택하고 있어, 벌금일수와 1일당 벌금액수를 곱하여 벌금형을 계산하고 있다. 벌금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이며, 1일당 벌금액수는 1 유로 이상 30,000유로 이하이다(독일 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문 참조).

2020년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5건이며, 1건은 자유형, 나머지 4건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¹⁴⁵⁾ 자유형이 선고된 1건의 형량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유형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¹⁴⁶⁾ 3건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벌금일수는 31-90일에 속하였고, 나머지 1건의 벌금일수는 91-180일에 속하였다.¹⁴⁷⁾ 전자의 1일당 벌금액수는 3건이 각각 5 - 10유로(초과 - 이하, 다음의 수치도 동일함), 25 - 50유로, 50유로 초과에 속하였고, 후자의 1일당 벌금액수는 10 - 25유로

145)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126.

146)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198-199.

147)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76.

에 속하였다.¹⁴⁸⁾ 이에 따라 3건은 각각 155.31 - 900유로(이상 - 이하, 다음의 수치도 동일함), 775.31 - 4,500유로, 1,581.31유로부터 4,500.9유로 이상에 속하였고, 1건은 910.91 - 4,500유로에 속하였다.

2021년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4건이며, 1건의 벌금일수는 16 - 30일, 13건의 벌금일수는 31 - 90일이었다.¹⁴⁹⁾ 벌금일수 16-30일에 속한 1건의 1일당 벌금액수는 10 - 25유로(초과 - 이하)이었고,¹⁵⁰⁾ 벌금일수 31 - 90일에 속한 13건 중 9건의 1일당 벌금액수는 25 - 50유로, 4건의 1일당 벌금액수는 50유로 초과였다.¹⁵¹⁾ 이에 따라 1건의 벌금형은 160.16 - 750유로(이상 - 이하), 9건의 벌금형은 625.25 - 4,500유로, 4건의 벌금형은 1,550.31유로부터 4,500.9유로 이상에 속하였다. 나머지 1건의 벌금일수는 91 - 180일이었고, 1일당 벌금액수는 25 - 50유로(초과 - 이하)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벌금형은 2,275.91유로 - 9,000유로(이상 - 이하)이었으나, 벌금형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¹⁵²⁾

2022년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0건이며,¹⁵³⁾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¹⁵⁴⁾ 10건 모두 벌금일수는 31 - 90일에 속하였다.¹⁵⁵⁾ 1일당 벌금액수는 3건이 10 - 25유로(초과 - 미만), 4건이 25 - 50유로, 3건이 50유로 초과의 범위에 속하였다.¹⁵⁶⁾ 이에 따르면 3건은 310.31 - 2,250유로(이상 - 이하), 4건은 775.31 - 4,500유로, 3건은 1,550.31유로부터 4,500.9유로 이상에 속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8)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96-297.

149)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64.

150)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65.

151)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66.

152) 독일 연방통계청의 형사소추 통계에 관한 발간물, 296.

153) 24311-07.

154) 24311-17.

155) 24311-17.

156) 24311-17.

(1) 벌금일수

(단위: 일)

형별	연도	벌금일수					
		5-15	16-30	31-90	91-180	181-360	361 이상
벌금형	2020	0	0	3	1	0	0
	2021	0	1	13	0	0	0
	2022	0	0	10	0	0	0

(2) 1일당 벌금액수

형별	연도	벌금일수 31-90일					벌금일수 91-180일				
		1일당 벌금액수(단위: 유로, 초과 - 이하)									
		-5	5-10	10-25	25-50	50-	-5	5-10	10-25	25-50	50-
벌금형	2020	0	1	0	1	1	0	0	1	0	0
	2021	0	0	0	9	4	0	0	0	0	0
	2022	0	0	3	4	3	0	0	0	0	0

나. 자유형

형별	연도	월(초과 - 이하)				연(초과 - 이하)			
		6 이하	6 초과	6-9	9-12	1-2	2-3	3-5	5 초과
자유형	2020	0	0	0	0	1 ¹⁵⁷⁾	0	0	0
	2021	0	0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0	0

IV. 검토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개념 및 요건도 유사하다. 다만, 영업비밀보호법 시행 이후 뚜렷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법 체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

157) 집행유예 199쪽.

제4절 프랑스



I. 개요

유럽연합은 2016년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내부 시장에서 충분하고 일관된 민사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¹⁵⁸⁾ 「불법적인 취득·사용·공개로부터 미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6/943호[Directive (EU) 2016/943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8 juin 2016 sur la protection des savoir-faire et des informations commerciales non divulgués (secrets d'affaires) contre l'obtention, l'utilisation et la divulgation illicites]¹⁵⁹⁾」(이하,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 동 지침을 수용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2018년 7월 30일 제 2018-670호 법률(LOI n° 2018-670 du 30 juillet 2018 relative à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¹⁶⁰⁾」(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¹⁶¹⁾

II.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1. 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8) 유럽연합지침 전문(10), 제1조 목적 및 범위 참조.

159) 원문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A32016L0943>

160)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262111/#JORFARTI000037262112>

161) 동법은 2004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프랑스 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주제의 극도의 민감성, 회사 보호 필요성 및 우려 사항 사이의 중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법적 질서에 도입하지 못했다. Rapport n° 777 par M. Raphaël Gauvain, ASSEMBLÉE NATIONALE.

- 1)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로서,
 - a) 정보 전체 또는 요소들의 전반적인 양상 및 동일한 구성이 해당 정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밀이고,
 - b)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며,
 - c) 상황에 따라 기밀유지를 위하여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 적절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 2)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3) “권리침해자”라 함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또는 공개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4) “침해제품”은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또는 공개된 영업비밀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 특징, 기능, 생산공정 또는 마케팅이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제품을 의미한다.

동 지침 제2조는 ‘영업비밀’(secret d'affaires), ‘영업비밀 보유자’(détenteur de secrets d'affaires), ‘권리침해자’(contrevenant), ‘침해제품’(biens en infraction)을 정의한다.

동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첫째, 정보 전체 또는 요소들의 전반적인 양상 및 동일한 구성이 해당 정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며, 둘째,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셋째,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 상황에 따라 기밀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업비밀이 인정된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3조 영업비밀의 적법한 취득·사용·공개

영업비밀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취득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 a) 독립적인 발견 또는 창작;

b)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객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취득을 제한할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관찰, 검사, 분해 또는 테스트하는 행위

c)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정보 및 조회(consultation)에 대한 권리행사

d) 특정상황에서의 영업 분야의 건전한 사용에 부합하는 기타 관행

2.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적법하다.

동 지침 제3조는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EU 또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취득, 사용 또는 공개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²⁾

제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사용·공개

1.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의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사용·공개를 방지하거나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조치, 절차 및 법적구제를 청구할 자격을 보장한다.

2.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a) 영업비밀 보유자의 합법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파생되어질 수 있는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또는 전자파일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도용 또는 이에 대한 권한 없는 복제;

b) 특정한 상황에서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에 의한 경우

3.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 조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한 것으로 밝혀진 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는 불법이다:

a) 영업비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b) 기밀유지의 계약 또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

c) 영업비밀 사용제한에 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2) 한지영,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신 입법동향 및 영업비밀 소송전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63호(2020), 214.

4. 제3항에 따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한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소유한 사실을 영업비밀 취득, 사용 또는 공개 시에 알았거나 상황에 따라 알았어야만 했던 경우,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 또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이 사용되었음을 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상황에 따라 알았어야만 했던 경우, 침해제품의 제조, 제공 또는 출시 또는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활용 목적의 침해제품의 수입, 수출 또는 보관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된다.

동 지침 제4조는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각 회원국의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절차 및 구제수단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에는 a) 영업비밀 보유자의 합법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파생되어질 수 있는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또는 전자파일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 도용 또는 이에 대한 권한 없는 복제행위, b) 특정한 상황에서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행위를 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영업비밀보유자의 동의 없이 ①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자, ②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③ 영업비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 기타 의무를 위반한 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할 때 특정인이 제3항의 의미에서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거나 공개한 제3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비밀이 취득되었음을 정황상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불법이다. 동조 제5항은 침해제품의 제작, 제공 또는 유통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침해제품을 수입, 수출 또는 저장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제3항의 의미에서 영업비밀이 불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정황상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¹⁶³⁾

163) 한지영,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신 입법동향 및 영업비밀 소송전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63호(2020), 124-125.

제5조 예외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조치, 절차 및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거절되는 것을 보장한다.

- a) 미디어의 자유 및 다원주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연합기본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 b) 과실(une faute),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un acte répréhensible) 또는 불법행위(une activité illégale)를 폭로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경우;
- c)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대표자의 합법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러한 공개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인 한,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공개하는 것;
- d)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동 지침 제5조는 영업비밀 보호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조에 따르면 ① 미디어의 자유 및 다원주의 존중을 포함한 유럽연합기본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 ② 공익보호 목적으로 불법행위 등을 폭로하기 위한 행위, ③ 합법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동 지침 제6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공개에 대한 민사법적 보호조치의 보장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 절차, 법적 구제책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때 취해야 할 조치, 절차, 법적 구제책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소송절차 남용 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피청구인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인에 대한 제재판결, 정보공개 명령)를 적용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7조).

III.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관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은 유럽연합 「영업비밀보호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¹⁶⁴⁾ 동법 제1조에 따라 「상법전」(Code de commerce) 제L151-1조 내지 제L154-1조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개념 정의(제L151-1조), 적법한 영업비밀 소유 및 취득(제L151-2조, 제L151-3조), 영업비밀 취득·사용·공개가 불법행위를 성립하는 조건(제L151-4조 내지 제L151-6조), 영업비밀보호 예외(제L151-7조 내지 제L151-9조), 영업비밀 침해 예방 및 중지에 관한 조치(제L152-3-1조, 제L152-4조, 제L152-5조), 민사책임(제L152-6조), 남용에 대한 제재(제L152-8조),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 조치(제L153-1조, 제L153-2조)¹⁶⁵⁾에 관한 것이다.

2. 영업비밀의 정의

제L151-1조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다:

- 1° 해당 유형의 정보에 익숙한 자가 자신의 활동분야로 인하여 정보 자체로 또는 그 요소의 정확한 구성과 조합상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
- 2° 비밀스런 특성으로 인해 상업적, 실제적(effective)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
- 3° 상황을 고려하여 기밀유지를 위하여 적법한 (정보)보유자의 의뢰로 합리적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

164) 동법 제정 전까지 프랑스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은 「민법전」 제1240조, 「노동법전」 제L12227-1조, 「지적재산권법전」 제621-1조가 있는데, 이들 법전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단지 「지적재산권법전」에 노하우 또는 제조비밀(secret de fabrique) 같은 용어만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한지영,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 동향”, 산업재산권 제53호(2017), 466.

165) 관련 판례 Cour d'appel de Paris, 6 octobre 2022, 20/085827, 판시이유 91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46990888?dateDecision=&isAdvancedResult=&page=13&pageSize=10&pdSearchArbo=&pdSearchArboId=&query=secret+des+affaires&searchField=ALL&searchProximity=&searchType=ALL&sortValue=DATE_DESC&tab_selection=juri&typePagination=DEFAULT

「상법전」 제L151-1조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유형의 정보에 익숙한 자가 자신의 활동분야로 인하여 정보 자체로 또는 그 요소의 정확한 구성과 조합상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알려진 정보가 다른 분야에서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정교함이나 기술 수준 또는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익숙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급업체와의 협상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8 juin 2017, 15-27.146).

둘째,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정보는 비밀스런 특성으로 인해 상업적, 실제적(effective)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한다. 비밀스런 성격으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추정되며, 비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금전적 가치를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밀적 특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CA Paris, n°22/08306, 23 novembre 2022, CA Paris, n°22/06168, 28 septembre 2022가 있다.

셋째,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밀유지를 위하여 적법한(정보)보유자의 의력으로 합리적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판례는 문서 페이지 하단에 기밀유지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있거나(CA Paris n°22/08306 du 23 novembre 2022), 회사의 “접근이 제한된 개인 웹사이트”(share point)에 보관된 문서(CA Paris, n°22/06168 du 28 septembre 2022)의 경우 기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본다. 즉 영업비밀은 독점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법전」 제L151-7조 및 제L151-8조에 규정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예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정보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몫이다(적법한 정보 보유자의 동의 없이 취득되거나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문서에 관한 판례: CA Paris n°22/08306 du 23 novembre 2022). 또한 특정 상황에서, 영업비밀은 계정 제공의무가 있는 공동계약자(co-contractant)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5 juin 2019, 17-26.119 18-10.359).

3. 영업비밀 보호조건

가. 적법한 소유 및 취득

제L151-2조

영업비밀을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contrôle) 자는 그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보유자이다.

제L151-3조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독립적인 발명 또는 창작;
- 2° 비밀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항이 없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제품(produit) 또는 제품(objet)에 대한 관찰(l'observation), 연구(l'étude), 분해(le démontage) 또는 시험(le test)

나. 불법행위

제L151-4조

합법적인 (정보)보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비밀 취득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영업비밀 취득은 불법이다.

- 1°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거나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모든 문서, 제품, 재료, 물질 또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허가받지 아니한 접근 또는 그 요소에 대한 허가받지 아니한 점유나 복제
- 2°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하고,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행위

제L151-5조

제L151-4조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영업비밀 공개금지 또는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 합법적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제품의 생산, 공급, 출시 및 수입, 수출, 보관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상황에 비추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공급, 출시 및 수입, 수출, 보관하는 행위도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한다.

제L151-6조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 당시 제L151-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다른 사람에게서 이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상황에 비추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상법전」 제L151-4조는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거나 영업비밀로 추정할 수 있는 모든 문서, 제품, 재료, 물질 또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허가받지 아니한 접근 또는 그 요소에 대한 허가받지 아니한 점유나 복제, 기타 부정하고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영업비밀 공개금지 또는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 합법적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제L151-5조 제1항). 제품의 생산, 공급, 출시 및 수입, 수출, 보관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상황상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공급, 출시 및 수입, 수출, 보관하는 행위도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한다(제L151-5조 제2항).

영업비밀 침해의 소멸시효는 그 영업비밀의 합법적 보유자가 침해의 원인이 되는 마지막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제L152-2조).

다. 영업비밀 보호의 예외

제L151-7조

특히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수사권, 통제권, 허가권 또는 제재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법률, 현행 국제조약이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경우 해당 영업비밀은 대항력(opposable)이 없다.

제L151-8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해당 비밀의 취득, 사용 또는 공개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비밀은 대항력이 없다.

1° 언론의 자유 존중 등 표현과 소통의 자유권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선언한 정보의 자유권 행사

2°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생활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2월 9일 법률 제2016-1691호」

제6조에서 정한 경고권 행사를 포함하여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선의에 의한 불법활동, 과실 또는 문책성 행위의 폭로

제L151-9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비밀은 대항력이 없다.

1° 영업비밀의 취득이 근로자나 그 대리인의 정보권과 자문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대리인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대리인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직무수행에 이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같이 취득, 공개된 정보는 근로자나 이 정보를 수령한 그 대리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프랑스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수사권, 통제권, 허가권 또는 제재권 행사 및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상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제L151-7조 내지 제L151-9조).

4. 영업비밀 보호조치

가.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중단 조치

제L152-3조

I.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및 중단 소송의 일환으로, 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별개로 이행 강제금 등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행위의 실행이나 시도 금지

2°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를 통한 제품의 생산, 공급, 출시, 사용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제품의 수입, 수출 또는 보관 행위의 금지

3° 해당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거나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모든 문서, 제품, 재료, 물질 또는 디지털 파일의 전부나 일부의 파기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나 일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

II. 법원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한 제품을 상업적 유통망으로부터 회수, 최종 배제, 영업비밀 침해를 없애기 위한 변경, 파기 또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III. 법원이 제 I 항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조치의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은 영업비밀 침해자(auteur)가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업상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IV.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 I 항부터 제III항까지에 언급된 조치 관련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해당 정보가 침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L151-1조에 따라 더 이상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요청으로 위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L152-4조

영업이익의 급박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불법적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급속심리로 가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국사원 데크레로 정한다.

제L152-5조

제L152-6조와 달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청구에 따라 제L152-3조 제 I 항부터 제III항까지에 언급된 조치 대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시, 영업비밀이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였던 다른 자로부터 취득되었음을 침해자가 상황에 비추어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

2° 제L152-3조 제 I 항부터 제III항까지에 언급된 조치의 집행이 침해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3°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상당 부분 충족되어 보이는 경우

제L152-3조 제 I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조치 대신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때에는 침해자가 영업비밀의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전술한 영업비밀의 사용허가를 청구하였다면 지불했어야 할 총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배상금을 정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별개로 이행강제금 등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기반한 제품을 상업적 유통망으로부터 회수, 최종 배제, 영업비밀 침해를 없애기 위한 변경, 파기 또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

제L152-6조

실제로(effectivement)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해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은 다음 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1° 기회 상실을 포함한 일실이익(le manque à gagner)과 피해자가 입은 손실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

2° 피해자에게 유발된 정신적 피해

3° 영업비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지적, 물적 이익 및 홍보 측면에서의 투자비용 절약 등 영업비밀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

대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가 문제의 영업비밀 사용허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금액을 반영한 일시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피해자에게 유발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는 ① 기회 상실을 포함한 일실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손실 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 ② 피해자에게 유발된 정신적 피해, ③ 영업비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지적, 물적 이익 및 홍보 측면에서의 투자비용 절약 등 영업비밀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에 대한 것이다.

대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가 문제의 영업비밀 사용허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지불했어야 할 금액을 반영한 일시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피해자에게 유발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다. 또한 여기에는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취득·개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¹⁶⁶⁾

한편,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남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는 민사제재금(une amende civile)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 민사제재금의 액수는 60,000유로 이하로 한다(제L152-8조).

166)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économique- Fiches méthodologiques et glossaires-3e édition(2024)- "FICHE n°9b - Comment réparer les préjudices causés par une atteinte au secret des affaires?" p. 3.

다. 소송절차상 보호

제L153-1조

모든 본안소송 전에 청원하는 예심(une mesure d'instruction)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상사소송에서 또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나 제3자가 인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의 전달·작성이 요청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가 달리 확보될 수 없고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나 제3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1° 필요시 이 조에서 정한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만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명하고 각 당사자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부여된 자의 의견을 요청한다.

2° 이러한 전달 또는 작성을 해당 서류의 특정 요소로 제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요약형식으로 전달 또는 작성하도록 명하거나 각 당사자의 경우 자연인과 해당인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심리 개시 여부 및 결정을 협의실에서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결정의 동기 및 공개 방법을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정한다.

판사가 영업비밀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서류나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해당 서류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를 금지할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및 법원에서 해당 법인을 대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서류나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서로의 관계에서 또는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규정에 따른 대리인에 대하여 이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부여된 자는 제L153-1조 제1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는 소송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다만, 법원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거나 문제의 정보가 영업비밀에서 해제되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 이 의무는 종료된다.

프랑스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의의 가운데 하나로, 「상법전」에 “제3장. 민사 또는 상사 법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일반조치(Chapitre III : Des mesures générales de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devant les juridictions

civiles ou commerciales)”에 관한 장을 추가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사법(司法)적 보호를 허용하는 일반 규칙을 수립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¹⁶⁷⁾ 이 장은 「상법전」 제L153-1조 및 제L153-2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전 제L153-1조는 민사 및 상사소송의 모든 단계(예심, 본안소송, 소송 종료 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V. 기술 유출 사례

1. 절도죄 적용 사례

형법전

제311-1조

절도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11-3조

절도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사건번호

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24 janvier 2018, 16-86,597¹⁶⁸⁾

파기원, 형사부, 2018년 1월 24일, N°16-86,597판결

나. 사실관계

① GDF Suez 회사는 2002년, 2003년, 2004년에 체결된 3건의 계약을 통해 3건의 액화천연가스 운송 선박 건조를 Chantiers de l'Atlantique 회사에게 위임하였다.

167) Aurélie Ballot-Léna, « Le juge judiciaire et le secret des affaires », Droit et cultures [En ligne], 2022. URL: <http://journals.openedition.org/droitcultures/8110>; <https://doi.org/10.4000/droitcultures.8110>; <https://journals.openedition.org/droitcultures/8110#tocto2n1> (2024. 10. 18. 확인).

168)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36635295?isSuggest=true> (2024. 10. 18. 확인).

위임계약 시 GDF Suez와 Gaz Transport et Technigaz(GTT)가 개발한 선박 탱크의 방수기술을 보증하였다.

2004년 말 첫 번째 선박의 마지막 기술 테스트에서 수밀결함이 나타나 기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006년 7월 28일 Chantiers de l'Atlantique는 제기된 기술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따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2009년 2월 3일 파리중재재판소(le tribunal arbitral de Paris)는 GTT의 책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Chantiers de l'Atlantique의 중재청구를 기각하였다.

2009년 7월 31일 Chantiers de l'Atlantique는 GTT가 기술 관련 특정 요소를 은폐했다고 의심하여 런던고등법원(la High Court de Londres)에 중재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다.

소송절차 맥락에서 Chantiers de l'Atlantique는 GTT와 가까운 여러 사람과 접촉하였고, 그중에 한국 조선소에서 기술을 구현해야했던 GTT 전 직원 M. Bertrand X(이하, 'X'라 한다)도 포함되었다. X는 프랑스로 돌아올 때 보관했던 광범위한 문서를 수립했으며, 그에 따르면 해당 기술의 결함을 보여주는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X는 그 문서 중 일부를 런던고등법원에 서면 증거 형태로 공개했고, GTT는 2010년 7월 1일 사소당사자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였다.

조사가 끝날 무렵 X는 절도 혐의로 형사법원에 회부되어, 형이 선고되었다.¹⁶⁹⁾ 이에 X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② 2016년 10월 14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6개월의 구금형(집행유예)과 2,000유로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X는 이에 항소하였다.

③ 2018년 1월 24일 파기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부분파기(Cassation partielle)하였다.

다. 판단이유

(1) 항소법원의 유죄 판단이유

X는 2008년 한국에서 GTT의 두 개 문서를 부정하게 제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69) 1심 법원 판결 내용은 찾을 수 없음.

해당 문서는 집합 단계에서 사용되는 접착제와 관련된 기술 문서로서 2007년 6월 6일 한국 SHI(le site coréen SHI)에 있는 팀으로부터 프랑스의 GTT 운영 부서로 발송된 이메일이며 단 두 사람 즉, 운영이사(le directeur des opérations)와 그의 보조인(adjoint)을 수신인으로 한다. X는 이 문서에는 기밀 사항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 문서를 보관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은 X를 수신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전 고용주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에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해당 문서를) 인쇄하거나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이 이메일에는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법원에서 논의 중인 중요한 분쟁의 맥락에서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 그 문서는 [...] X가 일했던 삼성의 한국 조선소 SHI에서 건조되는 두 척의 선박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런던고등법원에 증언에 부대하여 해당 문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 의사(l'intention frauduleuse)는 2008년 한국에서 절도한 당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당시 X는... 프랑스로 돌아오기 전에 이 문서를 인쇄하고 도용하였다. X는 그 당시 고용주와 개인적으로 분쟁 중에 있지는 않았지만 2006년부터 분쟁이 공개된 Chantiers de l'Atlantique와 GTT 간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X는 산업정보(données industrielles) 보호 문제에 정통한 경험 많은 전문가이며, 전문 문서의 복제를 금지하는 기밀 유지 조항과 내부 메모에 서명했기 때문에 기밀유지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다. 실제로 GTT 고용계약서에는 직원들에게 직업적 기밀유지 의무(l'obligation du secret professionnel)를 상기시키는 독점조항 및 비밀조항(clause d'exclusivité et discrétion)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밀유지 의무는 2002년 8월 21일 각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서명한 내부 각서(note interne)에 기인하며, 이 각서는 회사 내부·기밀문서(des documents internes et confidentiels)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를 금지하며, 회사의 자산인 내부·기밀문서의 회사 반출이 금지됨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그(X)가 다른 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배포되었을 수 있는 이메일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문서는 그의 고용 기간 동안 그 목적을 위해 GTT 내에서의 그의 직업적 활동에만 관련되어 있었고, 회사로부터 반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었다. 이러한 유출은 (예를 들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송절차의 범위 내에서 외부 유포를 통해 회사에 산업적이든 아니든 모든 종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X는 그에게 발송되지 않았으며 그의 것이 아닌 이 기밀 이메일을 보관하고 한국을

떠났다. 이는 기술 문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록 그(X)가 서둘러 프랑스로 돌아갔어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X)가 시간을 내어 이 문서들을 가지고 갔다고 보았다. 절도 문제에서 요구되는 고의(dol)는 문서를 도용하고 보관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성립되는 일반적인 고의이다. 따라서 X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

(2) 파기원(부분파기) 판단이유

「유럽인권협약」 제6조, 「형법전」 제311-1조, 「형사소송법전」 제591조 및 제593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첫 번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절도죄)를 확정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부적절함이나 모순이 없었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항소법원의 판단과 같으므로 판단이유 생략함).

「유럽인권협약」 제6조, 「형법전」 제130-1조, 제132-1조, 제132-19조, 제132-20조, 제311-1조, 「형사소송법전」 제485조, 제512조, 제591조, 제593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두 번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X에 대하여 6개월의 구금(집행유예)과 2,000유로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 혐의가 있는 행위의 성격, 기간 및 심각성에 비례하고 그의 성격, 사회적, 직업적 상황 및 소득에 맞게 적용했다.”

“1° 사실의 심각성, 가해자의 성격 및 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판단이유의 불충분 또는 모순은 그 이유의 부재와 동일하다. 항소법원이 사실을 정확히 참조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격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론에 기초하여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텍스트¹⁷⁰⁾를 위반하였다.”

“2°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자원(des ressources)과 부담(des charges)을 고려하여 판단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득’(revenus)에 국한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위 규정들에 비추어 정당화되지 않는다.”

모든 양형은 행위의 심각성, 가해자의 성격 및 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판사는 피고인의 자원과 부담을 고려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70) 두 번째 항소이유에 언급된 조항들임.

(3) 판시사항

파기·취소(CASSE et ANNULE): 2016년 10월 14일자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취소한다. 단 양형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며 다른 모든 사항은 유지된다.¹⁷¹⁾¹⁷²⁾

2. 배임죄 적용 사례

형법전

제314-1조

배임(l'abus de confiance)은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물에 대하여 그 반환, 관리 또는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유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배임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37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사건번호

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22 mars 2017, 15-85,929¹⁷³⁾

파기원, 형사부, 2017년 3월 22일자 N°15-85,929 판결

나. 사실관계

① 전화 서비스 제공 중개업체인 SCT(Société Commerciale de Télécommuni-

171) 파기원 판결 이후 환송된 항소법원 판결을 찾을 수 없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양형은 파악할 수 없음.

172) 파기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은 원심과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 또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환송된다(프랑스 민사소송법 제626조). 파기원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하상익,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사법정책연구원(2022), 123 참조.

“파기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은 원심과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 또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환송된다(프랑스 민사소송법 제626조). 그런데 프랑스 민사소송법에는 파기원의 파기 판결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 판결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이는 프랑스 재판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이 파기원의 파기 판결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상고가 제기된 경우(2차 상고), 즉 파기원과 하급심 법원 사이에 법률적 견해가 충돌(conflict)함이 명백해진 경우, 그 2차 상고사건은 필요적으로 전체재판부(Assemblée Plénière)에 회부되고, 전체재판부가 이전 파기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부여된다(프랑스 사법조직법 L431-4)”.

173)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34282575?isSuggest=true> (2024. 10. 18. 확인).

cations)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1월 30일 해고될 때까지 회사 내 지점장(directeur d'agence)이었던 C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와 예전 직원이었던 T가 관리하던 Vertigo Telecom이 고객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② 국사원에서 파기된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항소법원 예심부의 심리불필요(non-lieu) 판결¹⁷⁴⁾ 후에, C와 T는 배임 혐의로 님(Nîmes) 항소법원에 의해 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에 회부되었다.

③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과 사소당사자인 SCT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④ 2015년 9월 11일 님(Nîmes)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X, C, T, F에게 각각 1년의 금고형(집행유예)과 20,000유로의 벌금형, 그리고 민사상 이익(les intérêts civils)에 관하여 선고하였다.

⑤ 2017년 3월 22일 파기원은 C, T가 님(Nîmes)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항소법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이유

(1) 항소법원 판단이유

「형법전」 제314-1조에 따르면 횡령은 “배임은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물에 대하여 그 반환, 관리 또는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유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재물”(bien quelconque)은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성격의 점유(appropriation)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무형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객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 회사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고용주의 고객에 관한 정보 관리자일 뿐인 회사의 종업원이 해당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 유효한 경쟁금지조항의 존재 여부가 고객 정보를 남용하는 행위의 비난받을 만한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고용계약 이행 중에 발생할 필요도 없다. [...] Vertigo telecom이 서명한 129건의 계약 중 47건이 2005년 3월과 12월 사이에 SCT의 고객이었던 회사들과 체결되었다. [...]

174)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 판결 및 파기원 판결은 생략함.

C는 T의 수첩(le portefeuille)에 기입된 고객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고, 특히 중요 고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이며, Vertigo telecom의 고객에게 연락하지 말고, Vertigo telecom의 잠재 고객에게 SCT가 더 나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본 사건은 T와 C 사이에 이전에 합의된 사기 계약(un pacte frauduleux)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설립된 새로운 상업 법인을 위해 SCT의 고객 일부를 박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피고인은 그 실행에서 정해진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 전술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T와 C에 대해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파기원 판단이유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항소심 판결은 회사 고객에 대한 정보 관리자인 상업회사의 종업원이 이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배임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경쟁금지조항의 존재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고, 행위가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 Vertigo telecom이 서명한 129건의 계약 중 47건이 당시 SCT의 고객이었던 회사들과 체결되었다는 사실, T가 고용계약의 실질적인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고 SCT를 대체하는 것처럼 소개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이는(captation) 것, C가 그의 고용주의 이익에 반하여 이러한 고객 끌어들이기에 광범위하게 기여하였다는 점, 새로운 회사의 이익을 위해 SCT 고객 일부를 빼앗을(dépouiller) 목적으로 합의된 사기계약이 실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

라. 판시사항[청구 기각(REJETTE)]

이로써 항소법원이 판결한 형[1년의 금고형(집행유예)]과 20,000유로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V. 검토

프랑스는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⁷⁵⁾ 다만, 프랑스 「형법전」 제226-13조는 “자신의 지위, 직업,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형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절도죄나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다.

175) 최창수, “산업기술 해외유출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스티스 제203호(2024. 8.), 251.

제5절 우리나라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앞서 본 주요 국가의 기술유출 대응 형사 법제, 특히 국외 유출의 경우에는 주된 적용 법률이 일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안보가 화두가 되며 첨단기술 등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첨단기술 보유국들이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일원화된 형사 법제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표 12] 기술보호 관련법의 구성 및 체계 비교¹⁷⁶⁾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등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4장 보칙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5장 보칙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6장 벌칙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8장 보칙 등

176)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45.

[표 13]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비교¹⁷⁷⁾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7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8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9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0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조의2 조사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1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 국제협력 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5장 보칙	제18조 자료요구 제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예비·음모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177)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46.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산기술보호법은 국방부¹⁷⁸⁾ 소관 법령이다. 각 법률의 산발적 존재로 인하여 이러한 제·개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상호간 중복·불일치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⁷⁹⁾ 이와 같이 기술유출 대응에 관하여 산발적·중복적 법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한 취지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별로 법 개정 여부, 통과 시점, 시행 시기 등이 제각기 달라질 수 있는 등, 기술유출 범죄 대응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¹⁸⁰⁾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침해행위나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규정을 두고 있고,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임에도, 산업기술에 속하는 정보에 관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되어 그 보호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율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속할 수 있음에도, 방위산업기술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방산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유출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022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독특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른바 ‘옥상옥’ 구조를 가지고 있다.¹⁸¹⁾ 기소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든 어느 법 위반죄로 기소하여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는 위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보면, 수범자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의도와 다른 법률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취급이 있을 경우 집행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하나의 기술이 복수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우선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될 수도 있다.¹⁸²⁾ 이에 행정부처마다 계속 특별법을 늘려 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⁸³⁾

178) 한편, 방산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방위산업기술” 정의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179)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45.

180)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48.

181) 김병국,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자료집 토론회(2024. 12. 18.), 107.

182)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47.

183) 김병국,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자료집 토론회(2024. 12. 18.), 108.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방산기술보호법은 모두 법률이 아닌 행정청의 고시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불명확성 및 포괄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¹⁸⁴⁾ 물론, 법 규정의 정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제도가 불가피한 면도 없지는 않다.¹⁸⁵⁾ 그러나 이러한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산업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 등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를 정함에 있어, 불명확한 문언이나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을 배제하고, 고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¹⁸⁶⁾

184) 헌법재판소는 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규정형식의 불명확성 때문에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011년 추상적 개념이었던 산업기술의 범위를 열거 형식으로 변경하기는 하였다.

185) 특허청,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132.

186) 김병국,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65호(2018. 4.), 229.

..... 제4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재판 현황

I. 미제 현황

1. 전체 형사 사건

가. 제1심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심리 중 미제				
	합계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109,185	84,855	15,086	6,939	2,305
2020년	124,399	91,990	20,676	9,410	2,323
2021년	117,200	82,673	18,934	12,300	3,293
2022년	113,701	81,852	16,286	10,782	4,781
2023년	119,871	86,601	19,927	8,760	4,583

출처: 사법연감, 2024. 4. 15. 전산자료

나. 항소심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심리 중 미제				
	합계	4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34,109	22,568	9,659	1,658	224
2020년	36,984	23,989	11,145	1,594	256
2021년	41,813	24,275	14,696	2,604	238
2022년	42,944	23,202	14,952	4,426	364
2023년	47,916	26,441	17,274	3,759	442

출처: 사법연감, 2024. 4. 15. 전산자료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¹⁸⁷⁾

가. 제1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심리 중 미제				
	합계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133	41	50	35	7
2020년	168	73	42	32	21
2021년	126	51	23	41	11
2022년	126	42	26	38	20
2023년	149	70	20	36	23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나. 항소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심리 중 미제				
	합계	4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42	13	18	11	-
2020년	76	28	33	15	-
2021년	89	37	22	25	5
2022년	65	17	18	23	7
2023년	46	15	20	9	2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187) 법원 내부 통계시스템에서는 조문별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기술 유출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의 제1, 2항 이외의 범죄도 포함되었으나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기술 유출 범죄 이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기소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이하 같음).

3. 산업기술보호법위반

가. 제1심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심리 중 미제				
	합계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53	8	11	21	13
2020년	61	12	8	18	23
2021년	60	16	16	16	12
2022년	81	17	16	29	19
2023년	64	13	14	11	26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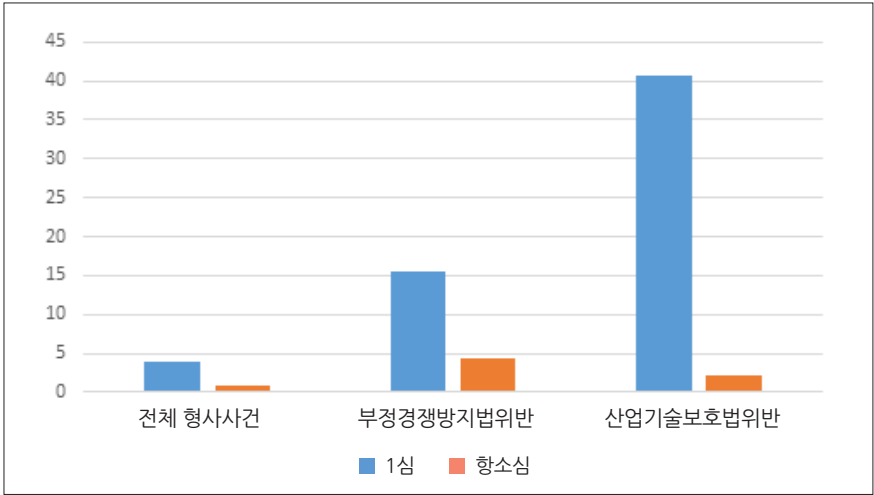
나. 항소심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심리 중 미제				
	합계	4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2019년	5	1	4	-	-
2020년	12	7	4	1	-
2021년	29	3	22	4	-
2022년	20	1	7	12	-
2023년	44	20	18	5	1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그림 4] 2년 초과 사건 비율



II. 평균 처리 기간

1. 전체 형사 사건

(단위: 월)

구분 연도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2019년	3.4	4.9	3.2	6.4	1.5	3.9
2020년	3.7	5.4	3.3	7.7	1.6	4.3
2021년	4.1	6.0	3.5	7.9	1.6	4.4
2022년	4.1	6.2	3.5	8.9	1.5	3.7
2023년	4.0	6.2	3.4	9.3	1.5	3.5

출처: 사법연감, 2024. 4. 15. 전산자료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단위: 월)

구분 연도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2019년	5.6	14.5	3.6	8.5	4.6	12.1
2020년	-	12.3	4.7	14.4	1.7	15.7
2021년	5.3	15.0	4.0	12.3	1.8	9.9
2022년	27.7	15.2	10.2	14.4	-	22.1
2023년	22.6	14.7	3.3	15.3	3.7	7.7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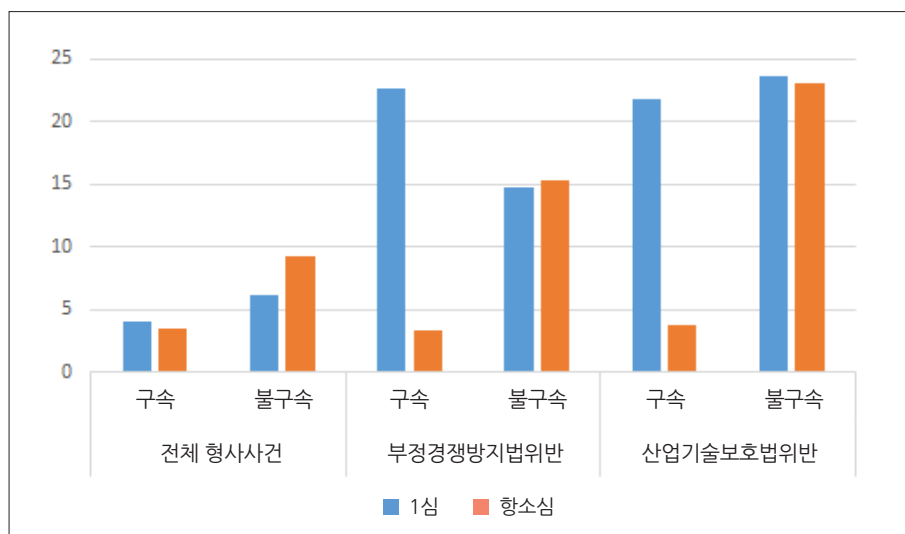
3.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단위: 월)

구분 연도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기소시 구속	기소시 불구속
2019년	8.3	7.6	-	10.7	-	25.2
2020년	21.1	21.1	-	9.0	0.6	2.3
2021년	23.1	36.2	3.7	15.5	1.4	17.8
2022년	8.4	11.9	8.4	13.9	-	8.3
2023년	21.8	23.6	3.7	23.1	3.5	3.5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그림 5] 평균 처리기간



III. 평균 공판기일 횟수

1. 전체 형사 사건

(단위: 회)

연도별	구분	제1심	항소심
2019년		2.61	1.90
2020년		2.64	1.96
2021년		2.74	1.94
2022년		2.73	1.94
2023년		2.63	1.85

출처: 사법연감, 2024. 4. 15. 전산자료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단위: 회)

연도별	구분	제1심	항소심
2019년		7.18	2.20
2020년		6.44	4.75
2021년		5.98	3.29
2022년		6.89	3.06
2023년		5.47	3.33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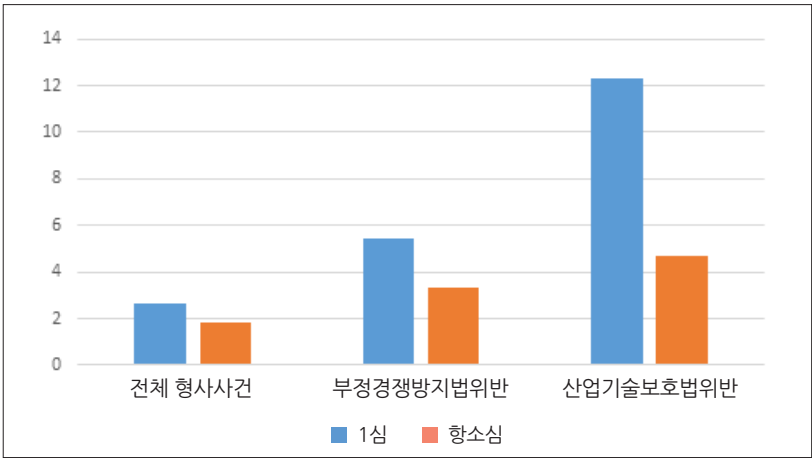
3.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단위: 회)

연도별	구분	제1심	항소심
2019년		6.67	4.67
2020년		10.33	3.33
2021년		17.13	6.00
2022년		8.40	4.83
2023년		12.30	4.67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그림 6] 평균 공판기일 횟수



IV. 기술 유출 관련 제1심의 증인 수

1. 전체 형사 사건

(단위: 건, 명)

연도별	구분	증인이 있는 사건 수	증인 수
2019년		27,808	82,012
2020년		26,928	78,263
2021년		28,179	80,131
2022년		26,039	75,173
2023년		27,352	79,876

출처: 사법연감, 2024. 4. 15. 전산자료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단위: 건, 명)

연도별	구분	증인이 있는 사건 수	증인 수
2019년		24	122
2020년		30	105
2021년		25	113
2022년		21	101
2023년		20	57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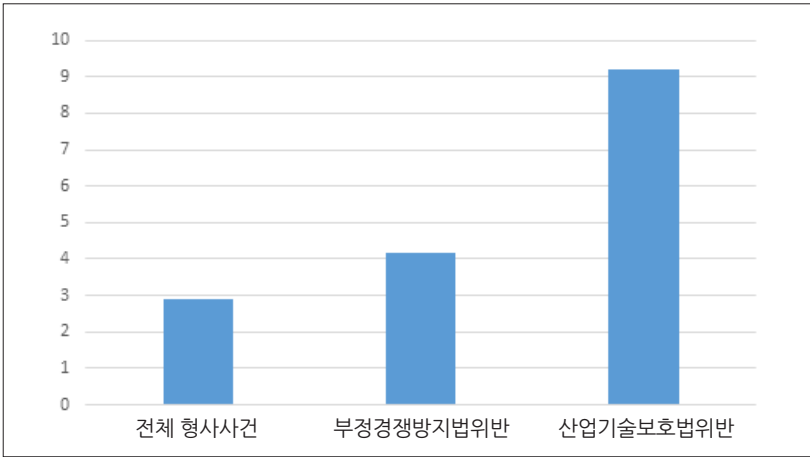
3.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단위: 건, 명)

연도별	구분	증인이 있는 사건 수	증인 수
2019년		4	25
2020년		4	35
2021년		7	78
2022년		5	28
2023년		9	101

출처: 2024. 8. 12. 전산자료

[그림 7] 증인 있는 사건의 증인 수



V.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1. 분석

① 2023년 기준 2년 초과 사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1심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2년 초과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43%,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무려 40.62%에 이른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중 2년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인 3.82%보다 월등히 높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전체 형사사건 중 2년 초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0.92%인데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4.34%,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2.27%이다.

② 2023년 기술 유출 범죄 평균처리기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구속 사건은 22.6월, 불구속 사건은 14.7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구속 사건은 21.8월, 불구속 사건은 23.6월로, 전체 형사사건 중 구속 사건 4월, 불구속 사건 6.2월에 비하여 월등히 길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전체 형사사건 중 구속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3.4월, 불구속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9.3월인데, 기술 유출 범죄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구속 사건은 3.3월, 불구속 사건은 15.3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구속 사건은 3.7월, 불구속 사건은 23.1월로 처리 기간이 길다.

③ 2023년 기술 유출 범죄 공판기일 횟수는, 제1심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5.47회,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은 12.3회로 전체 형사사건의 2.63회보다 많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전체 형사사건은 1.85회인데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3.33회,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은 4.67회에 이른다.

④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인이 있는 사건 중 증인의 수를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평균 4.15명,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은 평균 9.2명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2.9명을 훨씬 상회한다.

2. 평가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심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일수에 비추어 구속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정된 사법자원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경우 효율적 처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건의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해서는 재판부의 사건 장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 제5장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 절차

제1절 공소장의 검토



I. 공소사실

1. 개요

기술 유출 범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 위반죄를 기본으로 하여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업무상배임죄로만 기소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수렴되는 경우도 많다.¹⁸⁸⁾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기업의 직원 또는 외부인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내려받거나 그 영업비밀이 담긴 유체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형태, 기업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형태, 기업의 직원 또는 외부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저장 장치에 복사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누설하는 형태, 외부인과의 공모로 인한 영업비밀의 누설 등이다.

2. 공소사실의 특정

가. 특정의 정도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188) 박태일, 사법연수원 2022년 지식재산소송의 주요쟁점 연수자료 ‘영업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2022), 28;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277.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¹⁸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공소사실에 영업비밀 부분을 ‘B회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A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인 C, D에 대한 자료’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 영업비밀 특정 여부 판단 기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A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A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인 C, D에 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에서의 가격은 다른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B사에의 납품가격이나 그 제조원가(하청가격, 물류비 등)를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는 그 자체가 독립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에 관한 제반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18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 ‘A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인 C, D에 대한 자료’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회사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인 하청업자인 D 등으로부터 손톱깍이 세트 등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B사 등에 납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A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인 C, D에 대한 자료”는 C나 D에 관한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에 관한 자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 중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나 “A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인 C, D에 대한 자료”는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공소사실에 영업비밀 부분을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누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이하 ‘이 사건 캐드파일’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캐드파일은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¹⁹⁰⁾

공소사실에 유출된 영업비밀을 기재함에 있어 파일별로 각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파일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

1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6노475 판결로 확정.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자료의 내용과 파일명만 나열되어 있어 이 중 어떤 부분이 A회사의 독자적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회사의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이에 관련된 전자 문서 자료를 취득·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소사실(1의 사항 제외)과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지에 파일별로 각 전자문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침해된 정보의 특정

영업비밀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로서 개개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개개의 정보가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알 수가 없다면, 이 부분에 관한 석명을 통해 공소장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면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¹⁹¹⁾

공소사실 자체로 영업비밀로 기소를 한 것인지,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기소를 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석명이 필요하다.

공소사실로서 영업비밀이 아닌 산업기술로 특정을 한 경우, 해당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기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소사실의 기재로서 해당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아래 적용법조의 검토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19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다. 침해행위의 특정

정보의 취득, 사용, 누설 등 침해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성요건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내용을 구성요건에 맞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벌칙 규정인 제36조에서 제14조에 규정된 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침해행위가 제14조에서 정한 행위 중 어떠한 행위인지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라. 공범 간 실행행위 특정

공범의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므로,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의 분담 내역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 이해의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바,¹⁹²⁾ 공범자 중 구체적인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공소사실에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II. 죄명 및 적용법조

1. 죄명

공소장에 표시되는 죄명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 표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그 외는 모두 ‘부정경쟁방지및

19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고,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죄명 관련 예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만 기재된다.

[표 1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5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명표시
제18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제18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그 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적용법조

가. 구성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호 대상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을 살펴서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인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등인지를 확인하여 그 적용법조와의 호응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역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규정을 잘 살펴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제3절 기술 유출 범죄사건의 주요 쟁점별 검토에서 살펴볼도록 한다.

[표 1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¹⁹³⁾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 등의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징역 15년↓ or 벌금 15억 원↓ (단,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제18조 제2항	일반 영업비밀 침해행위	징역 10년↓ or 벌금 5억 원↓ (단,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제18조 제3항	영업비밀 훼손 등	징역 10년↓ or 벌금 5억 원↓
제18조 제5항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등의 유출 등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 원↓
제18조의2 (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18조의3 (예비·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징역 3년↓ or 벌금 3천만 원↓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징역 2년↓ or 벌금 2천만 원↓

193)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 특허청(2023. 12.), 51.

[표 1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구성요건(제14조)	법정형	몰수 (36조 5항)	(법34조)비밀유지 의무위반(36조 6항)	미수범처벌 (36조 7항)	벌금·병과 (36조 8항)	예비·음모 (37조)	양벌규정 (38조)
[1호] ■ 기술 부정취득, 사용, 공개 [2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 유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 (고의) [6-3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보유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관으로부터의 기술정보의 삭제, 반환요구 등을 거부 (목적)	■ 외국사용 인지시 → 15년 이하 징역 or 15억 이하 벌금 (36조2항) ▶ 해당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일 경우 (가중처벌) → 3년 이상 유기 + 15억 이하 벌금 병과 (36조1항) ■ 그 밖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or 10억 이하 벌금 (36조3항)			처벌 가능 (36조1,2,3항) 형량동일	국책해의 (36조1항) 산기해의 (36조2항) → 3년 이하 징역 or 3천 이하 벌금	국책해의 (36조1항) 산기해의 (36조2항) → 3년 이하 징역 or 3천 이하 벌금	행위자 외에 행위자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에 벌금을 부과 (방지노력 주의, 감독 있을 경우 부과 X)
[3호] ■ 1호~2호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취득, 사용, 공개 [5호] ■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을 받아 수출 [6호]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미승인, 부정승인을 받아 M&A (고의) [6-2호]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미신고, 부정신고 후 M&A (고의) [7호] 증지·금지·원상회복명령 불이행	■ 국가핵심기술 외국사용 인지시 → 3년 이상 유기 + 15억 이하 벌금 병과 (36조1항) ■ 그 밖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or 10억 이하 벌금 (36조3항)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 몰수 진부 또는 일부의 몰수 불가 시 가해 추정	5년 이하 징역 or 10년 이하 자격정지 or 5천만 원 이하 벌금	국책 해외유출은 (36조1항) 당면병과 나머지는 병과 가능 처벌 가능 (36조1, 3항) 형량동일	그 밖의 경우 (36조3항) → 2년 이하 징역 or 2천 이하 벌금	해외유출만 예비·음모 처벌 → 3년 1, 3천 ↓	
[8호] ■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은자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공개 [4호] ■ 1호, 2호 사실을 중대과실로 모르고 기술취득·사용·공개	■ 해외유출 가중처벌 (국책, 산업) (36조1항) (36조2항) ■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or 3억 이하 벌금 (36조4항) ■ 3년 이하 징역 or 3억 이하 벌금 (36조4항)			해외유출만 미수범 처벌 형량동일 처벌불가		처벌불가	

나. 공범과 죄수

침해행위가 공모에 의한 경우는 형법 제30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¹⁹⁴⁾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침해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¹⁹⁵⁾¹⁹⁶⁾

19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195)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44; 박태일, 사법연수원 2022년 지식재산소송의 주요쟁점 연수자료 ‘영업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2022), 22.

19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죄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제2절 기술 유출 범죄사건의 쟁점별 검토



I. 서론

기술 유출 범죄사건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주로 제기되는 쟁점을 항목별로 검토하면서 쟁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및 쟁점을 심리하여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⁹⁷⁾

II. 부정경쟁방지법위반

1. 영업비밀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 구비가 필수적이다.

197) 박태일, 사법연수원 2022년 지식재산소송의 주요쟁점 연수자료 ‘영업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2022);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술 유출·침해 범죄 법률·판례 해설(2022); 김정일, 사법부 지식관리 코트넷 게시자료 ‘영업비밀 형사사건 심리에 참고되는 판례 정리’(2016)에 제시된 주요 판결 및 사법부 판결문검색 시스템에서 죄명과 쟁점 관련 키워드로 추출한 판결임.

가.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¹⁹⁸⁾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¹⁹⁹⁾ 비공지성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비밀성은 유지된다.²⁰⁰⁾

(1) 비공지성 인정 사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펜 제조회사인 원고 회사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여 잉크제조 관련 기밀사항을 잘 알고 있던 직원을 피고 회사에서 스카우트한 뒤 단기간 내에 원고 회사의 제품과 성분이 동일·유사한 펜을 생산한 사례

- 이 사건 기술정보는 잉크제조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고 회사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중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임
-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기술정보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함
- 원고 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데 지장이 없음

19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19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200)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278.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반도체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품 분해·분석이나 생산장비 생산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부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더라도 영업비밀이 인정된 사례

- 기술정보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면,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많은 인력과 자력을 투여하여 만들어 낸 핵심공정자료들로서 피해회사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이고,
 - 일부 내용의 경우 제품을 분해하여 고율의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거나, 그 제품의 생산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섬유원단포장기 기계를 개발·제작하여 판매하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 등이 원고 회사의 기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유사한 기계를 제작한 사례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함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이 퇴직을 준비하면서 CD에 피해회사의 생산기술 자료 등을 복사해놓은 후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한 사례

-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춘 시료들로 실제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치를 포함한 자료들이거나 각 생산 단계의 공정을 시계열에 따라 배열하고 투입재료, 장비, 담당자, 중점관리사항 등을 표시한 자료 또는 특정 단계 공정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채택한 구체화된 표준 또는 현재의 연구개발공정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임
- 피해회사는 그 어느 것도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상세한 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그 유출방지를 위한 면밀한 조치를 취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즉, 실험들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여러 학술지 등에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회사뿐 아니라 10여 개의 국내업체와 30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 등)만으로 위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도 등 자료를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 소재 회사를 통해 그 복제품을 생산한 사례

- 피고인은 반도체제품에 관한 회로도 등 자료들은 이미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어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함
- 회로도, 레이아웃 도면,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조립규격 등 파일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것임

-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피해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무선중계기 관련 회로도에 대해, 역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 이동통신용 광중계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회로도 등 자료를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반출, 타 회사 직원에게 복제함
- 이 사건 회로도가 그 회로구성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 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각 소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추출해 내더라도 각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4개월 전 이 사건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4개월 동안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회로도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봄이 정당함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기술·영업·마케팅 자료 등을 반출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한 사례

- 피해회사의 핵심사업인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제조 등에 관한 정보이고,
 - 피해회사 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왔으며,

-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피해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정보와 영업정보이고,
 - 후발경쟁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피해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 피해회사의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관련 기술은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중의 하나이고 정부출연금이 지원될 정도로 공인된 기술임
- 해당 정보가 피해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피해회사의 관리정도, 해당 정보 확보에 소요된 노력, 피고인이 해당정보를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을 했던 피고인이 퇴사한 뒤 동종사업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웹사이트 소스파일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사례

-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임
-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피해회사의 이용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 피해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파일 등은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771 판결²⁰¹⁾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하는 피해회사의 도면, 단가, 시험보고서, 사업계획, 시장분석자료 등 자료가 경쟁 업체에 유출된 사례(역설계)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후발업체가 이와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품도면과 금형도면이 이른바 역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역설계는 3D영상촬영기술을 사용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정보가 곧바로 공지된 것이라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기술 자료의 내용 중에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SAE논문 등에 공지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술자료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노464 판결²⁰²⁾

추어탕 제조기법(재료 배합비율, 조리방법, 순서 등)을 취득하여 경쟁 회사에서 사용한 사례

-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제조성분과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추어탕 제조방법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추어탕 특유의 맛을 낼 수 없음
- 피해회사의 '추어탕 제조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없음

20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0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9158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노687 판결²⁰³⁾

LCD 검사장비 등 제조회사인 피해회사에서 경쟁회사로 이직한 이후 피해회사에서 취득했던 자료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례

- 피해회사는 대만에 이미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만 특허내용에는 LCD 기판을 에어커튼 기술로 수리하는 CVD 챔버의 에어커튼 방식, 흡기·배기 메커니즘 관련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위 CVD 챔버의 세부적인 구성, 관련 도면 자료 등은 위 특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내외 논문이나 특허를 통하여 CVD 챔버의 적층형 구조, 에어커튼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외부로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본건 CVD 챔버 관련 세부 도면들로 알 수 있는 기술 정보(가스켓과 유로형성판의 구체적인 배치관계, 메탈가스, 윈도우퍼지가스, 에어커튼가스가 공급되는 유로를 적층형으로 형성하여 박막을 증착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스켓을 사용하여 유로를 밀폐하는 구조와 방식, CVD 챔버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 등)는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비공지성을 갖추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5270 판결²⁰⁴⁾

‘화학제품 제조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련 화학특허가 공개되었더라도 특허에 없는 성분이나 원료가격 포함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사례

- 세라믹코팅제 제조·판매를 하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중국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자료를 위 중국 회사의 세라믹코팅제 개발 등에 사용
- 특허출원된 내용에는 없는 충전제 2종, 첨가용제 1종이 포함되어 있고, 특허 실시례에 기재된 원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실제 제품 배합비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유출된 자료에는 특허 내용에 없는 생산된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별 원가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피해회사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을 특허의 청구항에 넣지 않았고, 세라믹은 원료 1%만으로도 제품 물성 차이가 많이 나서 특허는 1~30%로 기재하되 생산관리는 소수점 3자리 까지 전자저울로 관리

203) 2012. 12. 28. 피고인 상고취하로 확정.

204) 2015. 7. 10. 확정.

- 특허에 공지된 자료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과 같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택되는 원료 및 그 배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노1159 판결²⁰⁵⁾

‘기계장비 설계도면’에 대하여, 장기간 기술과 노하우가 접목되었고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지성을 인정한 사례

- 진공성형기 설계도면 등은 피해회사가 국내 최초로 대형 진공성형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 개발한 것으로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회사 내부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피해회사를 통하여 입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움
- 설계도면 등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자료들을 다른 회사 또는 인터넷 학술서적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더라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 및 수치 등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므로,
 - 성형기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일부 부품에 관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이 사건 설계도면 등 파일 자체가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처음에는 다른 외국 회사로부터 얻은 도면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회사의 수십 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로 축적된 설계 노하우, 특허기술 등이 접목되어 발전된 별개의 도면임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표시된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수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 다른 업체들이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기계와 유사한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발주처 및 다른 업체들의 레이아웃도면, 사양서 등의 자료에 그 기계의 개략적인 구조나 부분적인 회로도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20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6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9569 판결²⁰⁶⁾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한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위 제품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등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파일을 복사해준 사례

- 이 사건 설계도면의 기술 정보는 실제 제품에 적용된 구체적인 소자의 배치와 규격M 렌즈의 재질, 규격, 공차, 구체적인 치수, 각 부품의 조립 위치 및 연결순서, 구체적인 부품 및 재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 관련 논문, 다른 회사들의 개발자료나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자료 등에 의해 이미 공지된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기술 정보는 원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그 전체로서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인 일체로서 공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설계도면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보관되어 있어 입찰에 참여하거나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업체가 이를 열람할 수 있으나,
 - 이들 업체는 보안서약을 하고 국방규격의 회수 또는 파기 등의 제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 이 사건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772 판결²⁰⁷⁾

반도체 후발업체인 중국회사에 피해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반도체 관련 장비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한 사례

- 본건 오버홀(overhaul, 정밀분해점검수리) 기술은, 반도체 칩과 기판에 미세한 금선(gold wire) 또는 구리선(cu wire)을 연결해주는 반도체 관련 장비인 ‘와이어 본더(Wire bonder)’(장비 정밀도 2 μ m) 장비 전체를 분해한 다음 부품 하나하나의 성능을 점검하고 소모성 부품이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며 내부 청소를 거쳐 조립한 다음 교정절차를 진

206) 대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다232078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판결로 확정.

20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06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행한 뒤 테스트를 통해 품질 이상 유무까지 확인하는 기술임

- 피해회사의 과장이 피고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오버홀 기술자들을 중국 업체로 몰래 보내 '와이어 본더' 장비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수행케 함
- 피해회사는 수년간의 시행착오로 축적된 노하우, 현장경험 등을 접목하여 원천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자체적인 오버홀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버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장비 제작회사들의 원천기술과 구별되고, 중국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오버홀 관련 자료는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적인 기술정보 등을 담고 있는 피해회사의 오버홀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르며, 다른 반도체 장비 정비업체들이 제공하는 오버홀 서비스는 회사 규모, 소속 엔지니어의 경력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오버홀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381 판결²⁰⁸⁾

'장치도면'에 대하여, 장치에 관한 내용·개념도가 특허공보에 게시되었더라도 도면에 특정 치수, 부품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상세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분해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제한되어 비공지성을 인정한 사례

- 피해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의 발명자에도 포함되었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업체로 이직함
- 정유량밸브 구동기의 세부도면 자료에는 구동기 제작을 위하여 특정한 치수, 제품사양, 각 부품의 재질, 수량, 금형정보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세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 위 구동기에 관한 내용과 개념도가 등록특허공보에 게시된 사실은 있지만, 등록특허공보에는 간략한 정보와 단순한 구조도만이 게시되어 있을 뿐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나 기호까지 현출되어 있지 않음
- 시판되는 구동기를 분해하여 대략적인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도면에 표시된 수치는 1mm의 1/100 단위까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역설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세부도면에 표시된 정보에 비하여 제한적임
- 위와 같은 자료는 피해회사 그룹의 서버에 저장되어 임직원만이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임

208) 2019. 5. 24. 확정.

(2) 비공지성 부정 사례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침해된 영업비밀로 주장된 자료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 관련 자료로서 그 이외에 다른 기술상의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지성이 부정된 사례

- 이동식교각을 제작, 판매하는 원고 회사에서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했던 직원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뒤 단기간 내에 이동식교각을 제작, 판매
- 원고는 특허등록된 ‘이동식교각’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로서 위 특허출원과 동일한 이동식교각을 제작·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동식교각에 관한 제조기술 자체는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이미 공개되었음
- 나아가 이 사건 이동식교각은 그 기술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 그 공개된 특허공보의 기재와 도면을 보고 육안으로 그 기술구성이 쉽게 파악되고, 그 규격이나 재질, 부품 및 가공방법 등에서 특수성을 찾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이동식교각은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고 이동식교각 기술 취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가 동종업계의 다른 기술자들을 채용하였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피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을 것임
- 위와 같은 이동식교각 기술에 대한 내용과 난이도, 동종 제품의 거래현황, 경쟁자나 다른 기술자들이 역설계(도면)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동식교각의 생산·판매에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 이외의 다른 설계정보 및 생산방법 등 기술상의 정보가 있을 여지가 없어 보이고,
 - 원고가 직원들에게 이동식교각의 제작·생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모바일게임, 인터넷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을 하던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문서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뒤 중국 소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문서파일들을 보관한 사례

- 문서 중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인 ‘임베디드 게임 기어’의 설명자료는 해당 업체가 해외 마케팅 대행사인 피해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임
- 위 설명자료 내용 중 일부가 피해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 내용에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943 판결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부직포롤러 생산방법 등 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부직포롤러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례

- 부직포롤러의 생산기술은 미국과 일본 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에 의하면 부직포롤러의 구조나 생산방법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음
- 부직포롤러의 구조나 그에 대한 제작기술은 그 구성이나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공개된 특허의 내용이나 문헌의 기재와 도면을 보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그 기술구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생산설비, 제조방법, 생산공정 자료 등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946 판결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을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들이 동종업체 설립 등에 이용하고자 피해회사의 생산능력 분석자료, 주주명부, 취업규칙 등을 반출한 사례

- 취업규칙은 피해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이고, 주주명부 역시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터치스크린 동작원리 및 구조’ 파일은 터치스크린의 종류별 장단점,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의 작동원리, 윈도우 타입 터치스크린의 구조, 단면도 및 공정도를 간략히 설명 내지 소개한 자료로서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여 이 역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지방선거일에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작성한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방송으로 내보내 부정사용한 사례

-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임²⁰⁹⁾
- 피고인들이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 이 사건 정보가 예측 조사 결과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입력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정보가 일치함을 확인한 뒤 순차로 방송하였을 때 실행에 착수한 것임
- 따라서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고려사항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²¹⁰⁾

209) 유출된 자료에 대한 사용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상태였다면 비공지성이 부정되므로, 비공지성 요건은 해당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점까지도 인정되어야 한다.

21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하고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지만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¹⁾

해당 정보가 특허나 문헌 등에 의해 공지된 내용만으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한 기술일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지된 내용 이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파악이 가능하거나 일부 공지된 정보 이외에 활용 목적에 맞게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 고유의 정보를 포함한 기술이라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전체로서 생산, 판매 또는 영업활동 등에 기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의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비공지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공지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역설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나.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²¹²⁾

반면, 탈세정보, 공해배출정보, 불법해킹정보 등과 같이 위법한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²¹³⁾

21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21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213)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279.

(1) 경제적 유용성 인정 사례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도6576 판결

해당 도면의 유출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도면을 포함한 제품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점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사례

- LCD 생산업체인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중국 업체의 한국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누설함
- 각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온도보상회로도 등을 비롯한 정보는 CSTN LCM 제작의 핵심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그 도면의 유출로 피해회사의 기술경쟁력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의 엔지니어로서는 같은 종류의 CSTN LCM을 개발, 제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이고,
 -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을 포함한 CSTN LCM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
- 유출될 경우 적어도 경쟁사가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정보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정보가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도 영업비밀로 인정한 사례

- LED 생산·판매 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의 기술고문을 스카웃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케 한 사안
-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로서 White LED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연료의 배합비율,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정보, 피해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들로서, 모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료들임

- 위 각 자료가 경쟁업체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론적으로만 성립가능하다거나, 데이터가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함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회로도’에 대하여,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더라도 구체적 기능 구현을 위해 세부 규격을 정하여 완성된 회로도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

- 이동통신용 광중계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회로도 등 자료를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반출함
-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 및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회로도에 담긴 위상제어기능을 통하여 발진위치를 현 통화대역에서 다른 통화대역으로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기술·영업·마케팅 자료 등을 반출하고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한 사례

- 피해회사의 핵심사업인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제조 등에 관한 정보이고,
 - 피해회사는 직원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왔으며,
 -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획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피해회사의 실정에 맞

게 최적화된 기술정보와 영업정보이고,

- 후발경쟁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피해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 피해회사의 전기이중층커패시터(EDLC) 관련 기술은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중의 하나이고 정부출연금이 지원될 정도로 공인된 기술임
- 해당 정보가 피해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피해회사의 관리정도, 해당 정보 확보에 소요된 노력, 피고인이 해당정보를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2835 판결

피해회사의 회로도 파일과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회로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하더라도 회로도 파일 자체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

- 피고인의 회사가 개발 중인 GSM 방식 휴대폰의 모듈에 피해회사의 GSM 방식 휴대폰 모델의 회로도 일부를 사용하였는바,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휴대폰 회로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동일성이 없는 부분은 제3자 업체에 원천기술이 있으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비공지성이 인정될 만한 피해회사의 고유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연결,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음
- 피고인의 회사가 휴대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휴대폰 모델의 회로도 파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두 회로도 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엔지니어링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휴대폰 모델의 회로도 파일 자체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노5407 판결²¹⁴⁾

‘장비 제조원가표’에 대하여, 제조원가표가 있으면 해당 장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 통신락을 제조·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이 제조원가표(통신락의 자재, 자재 별 크기 및 재질, 단가, 구매처 등이 기재된 자료)를 통신락 도소매업자에게 이메일 발송함
- 이 사건 제조원가표는 통신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부 부품의 이름, 규격, 수량, 단가, 재질,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제조원가표가 있으면 통신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조원가표는 피해자 회사에서 7년 이상 변화하는 단가에 맞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조원가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 다만, 직원들에게 별도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업무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자료를 따로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택으로 가져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 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노1159 판결²¹⁵⁾

‘기계장비 설계도면’에 대하여,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고,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214) 2014. 6. 6. 확정.

21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6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다른 업체들이 피해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도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 이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배열, 연결, 규격과 수치 등을 표시하는 설계도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회사는, 대형 진공성형기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작하였고,
- 대형 진공성형기의 설계도면 등을 새롭게 작성하고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진공성형기를 제작하고 기술을 발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 후발업체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굳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회사가 굳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과 같은 자료를 관리할 이유가 없으며,
 - 피고인들로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부품의 위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부품마다 그램(g) 단위의 정확한 무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CAD 파일)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여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됨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108 판결

동일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이지만 피해회사 제품은 중국 제품의 구성 일부를 변형하였고, 중국업체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회로도 정보로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사례

- 피해회사는 핵심구성품을 공급하는 중국업체로부터 변형된 사양, 규격의 회로도 등을 제공받아 광다중화 장치를 공사에 납품했는데 피고인 등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회로도 등 피해회사의 자료를 무단 반출·사용함
- 피해회사가 공사에 납품한 광다중화 장치와 피고인의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중요 부품인 칩이 같고 구조와 기능도 거의 동일하고,
- 중국 업체의 원제품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설명서도 공개되어 있음

- 그러나, 피해회사 제품은 중국 업체 제품의 구성을 국내 발주처의 수요 등에 맞추어 일부 변형하였고,
 - 피해회사가 보유한 회로도, 기판도, 부품표 등은 중국 업체와 체결한 ‘국제독점대리점 및 독점 기술협력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피해회사 제품과 중국 업체 제품 및 피고인들 제품이 그 구성과 기능 등에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회사 제품에서 중국 업체 제품을 변형한 부분이나 그 제품에 관한 회로도 등에 관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
- 적어도 회로도 등 피해회사가 독점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정보는 국내에서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임

□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노3469 판결²¹⁶⁾

‘화학 제품의 레시피’에 대하여, 레시피의 경쟁력이 상실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레시피를 개발하였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 스파크 방지 등 기능성 코팅액을 제조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레시피(원료 비율, 제조방법 등)를 반출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회사 등에 납품함
-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설령 이 사건 레시피가 현재 경쟁력을 상실한 레시피라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이와 같은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와 같은 레시피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소요

216)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17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함),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

□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2026 판결

로봇 제조·판매를 하는 피해회사의 '견적서 자료'에 대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 피해회사의 직원이 경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견적서 자료(주거래업체에 납품한 로봇의 재료비, 단가, 원가, 출하가 등이 기재)를 이메일로 전송함
- 부품 재료비 등에 관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후 부품 제공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고,
 - 결과적으로 납품하는 로봇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 위 자료를 통해 경쟁사인 피해회사의 견적 내용을 예상하여 고객사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2) 경제적 유용성 부정 사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판결

'생산공정 기계 배치도면'에 대하여, 생산공정은 업계에 알려져 있고 납품받은 각 생산기계를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한 것이므로 도면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선박기계부품에 사용하는 다심관(고압연 스테인레스 다중관)을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의 다심관 생산공정별 기계 배치도, 다심관 생산공정 중 조관공정에 필요한 권취기(파이프를 감는 장치) 등에 대한 도면 등을 제공받음
-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 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

- 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피해회사가 작업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배치,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 각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점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모바일게임, 인터넷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을 하던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문서파일들을 가지고 나온 뒤 중국 소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문서파일들을 보관한 사례

- 문서 중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인 ‘임베디드 게임 기어’의 설명자료는 해당 업체가 해외 마케팅 대행사인 피해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임
- 위 설명자료 내용 중 일부가 피해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 내용에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3917 판결

회로도에 대하여, 사용된 회로소자, 소요된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한 사례

-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인이 PVR 개발회사를 설립한 뒤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PVR 회로도 검토를 부탁했고, 이에 해당 직원이 피해회사의 PVR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수정된 회로도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안
- 피해회사 직원이 회로도를 수정하면서 사용했던 칩은 훨씬 이전에 출시된 피해회사의 제

품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PVR제조업체들은 피해회사의 PVR제품에 해당 칩들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위 각 칩의 각 단자와 이웃 부품과의 결선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정보는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임

- 또한 해당 칩은 RTC(Real Time Clock) 회로소자에 많이 쓰이는 범용부품이어서 이를 PVR제품에 채용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 칩의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참고 회로도 등을 참고하여 별다른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3415 판결²¹⁷⁾

대기업이 생성·배포한 원청도면을 전달받은 뒤 일부 피해회사에 맞게 수정한 '제품 도면'에 대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한 사례

- 배전반 제조 설치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동종업체로 이직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가 공급했던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제작 가능성을 요청 받고,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회로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치 등을 수정하여 사용
- 피해회사의 회로도는 피해회사가 원청도면을 바탕으로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에 맞도록 변경한 도면으로, 피해회사가 처음부터 설계한 제품에 관한 도면이라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 게다가 원청도면은 그 도면에 따른 제품의 제작을 요청하는 대기업이 생성·배포한 자료로서, 이를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경쟁회사가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사가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려움

(3) 고려사항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

217)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1400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될 수 있다.

다. 비밀관리성

어떠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성 관련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2015. 1. 28. 시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비밀로 관리된’(2019. 7. 9. 시행)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²¹⁸⁾²¹⁹⁾ 현행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해당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반드시 필요하다.²²⁰⁾ 따라서 비밀관리의 정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현행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보유자가 취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비밀관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²²¹⁾

특별히 ‘상당한 노력’과 구별하여 ‘합리적 노력’의 의미를 검토한 다음 ‘합리적 노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

218) [법률 제13081호 제정·개정이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략)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후략)

219) [법률 제16204호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후략)

◇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220)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2020), 281.

221)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2020), 281.

1670 판결을 들 수 있다.²²²⁾²²³⁾ 개정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은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는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행위 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²²⁴⁾

[표 17] 비밀관리성 조항 개정 경과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시행)	법률 제16204호 (2019. 7. 9. 시행)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가 다른 일반 기술·정보와 구별되게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임이 필요하다. 즉, 비밀 관리성은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에 더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인정된다.

222)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2020), 346.

223)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게 고객정보에 상시 접근을 허용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소규모 여행전문업체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이 대표자와 그 가족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25년 정도이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속기간도 10년을 초과하여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객정보’를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 판결로 상고기각).

224)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2020), 346.

(1) 비밀관리성 인정 사례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설계도면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자료 관리, 외부 업체에 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의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전동차 설계회사인 피해회사가 전자매뉴얼 작성업무를 하도급 받은 A업체에 제공하여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 CAD 파일을 경쟁업체로 유출하여 경쟁업체가 전동차 설계 시 사용함
- 피해회사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CAD 파일 및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고,
 - 철도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CAD 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 A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CAD 파일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이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인정됨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프로그램 소스파일에 대하여, 저장된 서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 사업을 하면서 피해회사 웹사이트 소스파일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함
-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임
-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피해회사의 이용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 피해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파일 등은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함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설비 설계도 및 그 부품 설계도에 대하여, 파일 접근권한 제한, ID/PW 사용,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로그파일 관리 등으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냉각탑 제조업체에서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냉각탑 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유사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중국 소재 업체에 제공함
-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인 등은 퇴직 당시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고,
 - 피해회사 직원들 중에서 냉각탑 설계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었으며,
 - 위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고,
 - 로그파일에 관련된 기록은 보안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가운데 회사가 이를 관리해왔음

□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²²⁵⁾

헤드헌팅 전문회사의 인력채용 후보자 DB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관리방법, 서약서 청구내용 등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헤드헌팅 전문회사인 피해회사는 10여 년간 인력채용 후보자와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개인 이력, 학력, 경력, 병력, 자격사항, 특기, 채용현황, 이직 사유 및 조건, 기타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모아 DB로 정리함
- 인재정보 DB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만을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해왔고,
 - 피해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의뢰사에 대한 정보, 구직자·이직자·재직자에 대한 신상정보, 회사 재직 시 습득한 영업비밀 등)을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청구하였으며,
 - 피고인 또한 재직 중 위와 같은 서약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퇴직 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함

□ 대구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771 판결²²⁶⁾

비밀관리 기술·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하는 피해회사의 도면, 단가, 시험보고서, 사업계획, 시장분석자료, 기술자료, 제조공정정보 등의 자료가 경쟁 업체에 유출·사용함
- 보안업무규정과 정보관리규정, 직원복무규정을 시행하여 승진 시 위 규정들을 시험범위로 하여 사규시험을 치렀고,
 - '00. 4. 24. 개정된 문서취급세칙에 따라 일부 문서들에는 '대외비'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으며,

225) 2010. 6. 26. 확정.

22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부서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문서보안을 위한 암호화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경 기업부설연구소에 카르타각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인들의 연구소 출입을 통제하였고,
 - 2008. 6.경부터 전자문서관리시스템(DRM)을 도입하여 문서 전체에 대한 암호화를 시행하고, 2009. 3.경부터 매체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트북이나 외부저장장치 사용, 외부 메일전송, 중요자료 사용기록 등을 프로그램을 통제하였으며,
 - 팀별, 개인별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회사는 전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였음
- 비밀관리성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피해회사에 의해 모두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제품 제조기술 및 영업관련 자료에 대하여, 정보의 관리 및 피해회사의 규모, 연혁, 산업적 특성, 피고인의 지위, 해당 정보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유산균 제조업체에서 퇴직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유산균 이종코팅기술 관련 자료 등을 반출하여 사용함
- 피해회사는 유산균 이종코팅기술을 특허등록하였으나, 실험연구를 통하여 얻은 유산균별 코팅물질이나 배지의 배합비 등 기술적 요소, 설비의 최적화 등 설비적 요소, 거래처별 이종코팅 유산균의 완제품 제제방법 등 영업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 이종코팅의 최적화 조건에 관한 정보를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할 때 ‘유산균주’에 대한 정보의 무단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 피해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비정기적으로 유산균 제품생산 및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해왔고, 이메일을 통하여 정보가 누출되거나 개인용도로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며,
 - 비밀문서의 경우 ‘대외비’ 등으로 표시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분류하여 잠금장치가 된 문서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산망에 방화벽을 설치하였고,

- 피해회사는 그 규모, 연혁,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체계적, 조직적 관리보다는 인적 유대와 신뢰에 기초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해왔으며,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러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정보들은 유산균 제조기술과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보안교육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임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정보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²²⁷⁾

소스코드 비밀관리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규모·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3D 광학 스캐너를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스캐너 소스코드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사용함
- 피해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팀장과 책임연구원(피고인)만이 피해회사 서버의 모든 디렉토리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 ‘보안관리’가 있어 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회사의 허락없이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인정함
- 한편, 피해회사가 직원들이 외부에서 원격조정프로그램 ‘팀뷰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TortoiseSVN 프로그램으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파일 접근이 제한되었고,
 -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하기 전 연구개발팀장으로부터 일부 소스코드를 별다른 기밀

22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로 해당 부분 확정.

자료 표시 없이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으로 그 이후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적이 있는 등 일부 비밀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됨

□ 부산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421 판결²²⁸⁾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방화벽 설치, 컴퓨터 USB 포트 봉인, 대외비 표시, 보안관리규정, 서약서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비밀관리성의 충족 여부는 비밀관리의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함
- 본건 자료가 저장된 서버는 방화벽을 통하여 회사 외부 및 회사 내 타 부서로부터 접근이 차단되어 연구소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하였고,
 - 연구소 내 컴퓨터 USB 포트에 ‘사용금지’라는 봉인 태그를 붙여두었으며,
 - 피고인이 복사해 간 제작도면 등에는 ‘대외비’, 또는 ‘외부로의 제공을 금한다’는 취지의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 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징구 하였음
- 피해회사는 서버의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설령 회사 내 연구소 외의 부서에서는 연구소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외에서는 연구소 서버에 전혀 접속할 수 없어,
 -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업무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판결²²⁹⁾

파일 접근권한 차등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록된 ID를 이용한 접속 등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22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859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2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732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위폐감별기 개발업체인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파일들을 유출함
- 영업비밀이 '파일'로 되어 있는 이상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전산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회사의 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피해회사는 서버별·폴더별로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차등화 함
 -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 내부 직원에 한하여 등록된 PC에서 등록된 ID를 이용해서만 내부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함

(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²³⁰⁾

자료관리 내용, 피해회사의 규모와 인적구성, 해당 정보의 성질, 신뢰관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제약·식품업체 등이 해외전시회 등 행사개최시 항공권·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가지고 나가 사용함
-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 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23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행사정보, 지역의 여행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고(합리적 구분),
 - 네이버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기술적 관리),
 -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회사의 대표가 관리하였고(조직적 관리),
 - 피해회사는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전원이 대표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것에는 고객들이 피해회사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참석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실제로 참석했는지, 어떠한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 피고인의 피해회사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사 직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다운로드하였던 것이고,
 - 피해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 자 2016카합81253 결정

서버 파일 관리내용, 관계자들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부과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업체(채권자)의 제품을 유지보수하면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채권자의 기존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진행, 채권자가 정보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 채권자는 이 사건 파일을 별도의 서버에 관리하고 채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고,
 -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의무를,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로부터

비밀유지약정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채무자 소속 개발 직원들로부터도 비밀유지 서명을 받았으며,

- 별도의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비밀유지 및 관리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비밀유지 정도가 완화되었는바,

- 채권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6. 자 2018카합50314 결정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 가능한 사람이 제한된 점, 해당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애니메이션 영화·비디오물 제작,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채권자)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채권자의 영업비밀(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정보, 내부자료, 개발계획, 비용계산방법 및 분석자료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므로,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되, 비밀 관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정보에 채권자의 직원들 중 사업부의 4명(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차장)만 이메일 제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뿐 사업부의 팀장이나 개발팀, 디자인팀 소속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업부의 실장, 차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다고 보임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노3551 판결²³¹⁾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영업비밀 분류, 보안유지의무 및 관련 교육 실시, 입사 및 퇴사 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담당 업무 관련 서류 및 파일 등의 반납조치, 출입가능지역 차등화 등으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 차체, 휠,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중국 소재 동종 업체에 취직하기로 하고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원가자료 등 자료를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취득함
- 피해회사는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각 분야별 영업비밀(1급~3급)을 분류하였으며,
 -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무 및 관련 교육 실시, 입사 및 퇴사 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담당 업무 관련 서류 및 파일 등의 반납조치와 퇴직자의 컴퓨터 등록 ID 말소, 시설별 중요도 및 담당 업무에 따른 직원들의 출입가능지역 차등화, 통제구역 설정 및 전담관리자 지정 등 비밀을 관리하였음
-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인 노력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복제물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
 - 이는 피해회사와 같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내부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이 경직되고, 보유자가 영업비밀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비밀유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가 ‘합리적인 노력’을 판단함에 있어 과도하게 엄격한 관점을 취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

□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노2719 판결²³²⁾

자료 관리 내용, 피해회사 사이의 협업계약 내용, 협업계약을 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231) 2021. 10. 28. 확정.

232) 2022. 1. 21. 확정.

- 다인용 구강세정기 관련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피해회사와 구강세정기 제품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공동협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설계도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송부함
- 피고인과 피해회사가 맺은 공동협업계약서 제8조(비밀준수의무)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PC에 저장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비밀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동업을 하게 된 계기도 특허등록한 이 사건 세정기의 상품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이 경영상 중요한 정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1272 판결²³³⁾

영업비밀이 저장된 PC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에 위치하거나 PC의 비밀번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도 아니한 사정만으로 비밀관리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업소용 튀김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면서 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함
- 피해회사는 임직원에게 입·퇴사 시 비밀유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도면 등에 대한 비밀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 이 사건 영업비밀은 모두 피해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부 부장이 관리하는 PC에 저장되어 있었고, 위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개발부 부장 외의 다른 임직원이 위 PC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 모든 거래업체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고, 특히 업소용 튀김기 제작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철판을 제작하는 업체와는 20년 이상 거래하면서 유일하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지만 해당

23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619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업체는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 특수성에 비추어 도면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업체에는 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도 피해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한 방법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임

- 결국 이 사건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이나 피해회사의 거래업체가 모두 피해회사의 업소용 튀김기 설계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노력’이 영업비밀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사건 영업비밀이 저장된 PC가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에 위치하였다거나 위 PC의 비밀번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2) 비밀관리성 부정 사례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광소자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 중요도 표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방화벽 설치 등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PLC 소자를 생산·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피해회사의 공정기술 및 실험데이터 등에 관한 자료들을 경쟁업체의 광소자 개발에 사용함
- 피해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 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제품 관련 영업·기술자료에 대하여, 자료의 보관장소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순간정전보상장치 등 전동기·발전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경쟁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의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 관련 영업자료, 기술시방도면 등 자료를 제품 판매에 이용함
-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PC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PC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PC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고,
 - 또한, 위 PC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의 다른 PC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해당 직원의 PC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으며,
 - 해당 직원이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두었는데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 CD를 이용할 수 있었음
-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 중요도 표시, 접근 권한 차등, 복사 저장매체 반출가능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증권분석 프로그램 개발·공급업체에서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가지고 나가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참조하여 사용함
-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 피해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판결²³⁴⁾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기술문서 파일 등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정보관리 방식, 문서 보안규정, 비밀준수의무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의료기기 생산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직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성능시험자료, 기술문서, 작업표준서 등 전자파일 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함
-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정보들이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을 것이 요구됨
- 피해회사는 동종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연매출 400억 원, 직원이 200명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연구개발 분야의 직원 수만도 30여명에 이룸
- 각 문서는 전자파일로 생성, 보관되면서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 가능
 - 각 부서의 팀장들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서의 전자문서 열람 가능
 - 작업표준서(보안등급 1급의 비밀문서), 품질절차서(2급의 비밀문서)는 사무실 내지 작업 현장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 USB로 옮겨 저장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고,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책이 별도 마련되지 않음
 - 문서관리규정에 대외비 문서나 열람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고, 비정기적이라도 꾸준히

234)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162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333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보안유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입사 시에 포괄적, 일반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나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어떠한 서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퇴직자로부터 파일 회수나 업무용 노트북 회수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주류회사가 부정사용한 도매점 영업자료에 대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도매점장들은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PDA를 이용하여 판매 거래처 정보, 매출정보, 수금정보, 거래조건 등을 입력하고 이 자료들은 주류회사의 별도 도매점 서버에 저장되며,
 - 각 도매점장마다 각자 ID/PW가 부여되어 자신의 정보만 열람가능하고 주류회사 직원들도 업무 범위 내에서 도매점이 입력한 정보만 열람 가능함
- 주류회사가 일부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아 퇴출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물품을 공급받은 도매점의 영업자료(도매점의 거래처·매출·수금 등 정보)를 활용, 해당 도매점의 중요 거래처를 선별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해당 도매점 대신 거래를 개시하도록 유도함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하며,
 -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류회사는 영업계획 수립, 도매점의 소매점별 판매목표 설정·재고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도매점장들이 입력했던 정보를 활용하고,
 - 도매점들의 거래처인 음식점, 주점 등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비용을 지원하거나 도매점들을 평가하여 포상금과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 도매점을 관리하는 주류회사의 직원들에게 ID/PW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면서,
 - 본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6~7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고 주

류회사와 도매점장들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음

- 도매점장들은 주류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만약 제3자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류회사와 그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710 판결²³⁵⁾

소스코드의 비밀관리성 여부에 대하여, 관리내용, 접근권한 제한 여부, 피해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피해회사에 플라스틱 선별기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한 뒤 피해회사의 퇴사자가 설립한 동종회사에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 위해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함
-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비밀등급, 비밀보존 기간 등 표시나 출입카드 등에 의한 출입 및 접근 제한 장소 보관 등이 없고 단순히 피해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저장, 보관되어 있고,
- 피해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없어, 직원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고, 서약서 등에도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이,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서 또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가까움
- 피해회사의 자본금이 32억 원을 상회하고 연매출이 25억 원 정도이며, 국내 폐기물 선별기 시장의 약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그 규모나 능력이 미미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함

235)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2357 항소기각 판결, 2018. 9. 22. 확정.

(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21 판결²³⁶⁾

파일이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고지'된 바가 없고 해당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PC에 비밀번호 설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의료용 레이저 컨트롤러 등을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기구도면 파일 등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뒤 피해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함
-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하여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고지'된 바가 없고,
 - 개인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추상적인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 피고인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각 파일을 보관하였고, 실제로 다른 직원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직접 노트북에 접속하여 파일을 복사해 가기도 하여 접근대상이나 접근방식에 제한이 없었으며,
 - 연구소는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실이 연구소 내부에 있는 관계로 일단 손님이 내부에 들어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었고,
 - 피고인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하기 전까지 디지털번호키나 현판 부착 등의 추가조치가 없었음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2435 판결²³⁷⁾

설계도면 등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가 없는 점, 출력이나 이메일 전송을 막는 보안장치가 없는 점, 하청업체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점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피해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설계도면,

236) 2018. 5. 12. 확정.

237) 2018. 10. 26. 확정.

구매리스트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 피해회사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설계실에 있는 메인컴퓨터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고 메인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았지만,
 -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회사의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바가 없음
- 또한,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도, 보안관리규정을 두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없었고,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 추적 기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설계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해회사는 하청업체에 설계도면을 보내는 경우 파란색 스탬프를 찍어서 보낸 다음 납품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회수하고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납품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폐기하였다고 하나,
 - 스탬프를 찍는다고 하여 복사본 제작을 방지할 수 없고, 하청업체가 이메일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폐기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 다른 업체와 비밀유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바도 없고, 설계도면 등 문서에 대한 DRM 등 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음
- ‘합리적인 노력’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는 등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자 2018라20665 결정²³⁸⁾

프로그램 사용 시 필요한 ID/PW가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국제물류 주선, 해운·항공운송의 대리·중개·주선 등 업무를 하는 회사(채권자)에서 퇴사하면서 채권자의 '윈 서비스(Win-Sabis)'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영업실적 및 선사 제시문임, 고객사에 대한 견적 가격 등을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함
-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내·외부인에게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 채권자의 직원들은 누구나 그 직급이나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제한 없이 검색할 수 있었고,
-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에는 비밀성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없었으며, 그 내용을 따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위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채권자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채권자의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용도로 기능하거나 사용되지도 않았음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및 정보보호서약서에 채권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 등 조항들은 비밀보호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비롯하여 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노416 판결²³⁹⁾

피해회사의 보안장치, 규정·서약서, 개발자만 접근가능한 시스템 등이 일반적인 보안조치이거나 기능상 도입된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PC 시간관리 솔루션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피해회사에서 경쟁업체로

238) 2018. 10. 27. 확정.

23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918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소스코드 등 자료를 이직할 경쟁업체 측에 이메일 전송하고 이직 후 사용하여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함

○ 피해회사에 철문 잠금장치, 디지털 도어락, CCTV 및 지문인식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인의 무단침입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일 뿐, 이 사건 소스코드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회사 내 직원 PC에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암호로 잠금처리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통상적인 PC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비밀처리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며

- 취업규정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직원들이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상적인 비밀유지의무로서 피해회사의 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주요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하고, 이 사건 소스코드가 피해회사의 다른 자료와 구분되어 특별히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는 징표로 보기에 부족하며,

- 이 사건 소스코드를 'GIT-SVN' 형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 보관하였으나, 이 시스템이 이 사건 소스코드를 서버의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개발목적 외의 사람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보안상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 이 사건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다른 자료도 외형적으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밀관리대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스코드가 해당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폴더에 올려져 있기도 하였음

○ 이 사건 소스코드가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이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3204 판결²⁴⁰⁾

설계도면 파일의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취급자 제한이 없었으며, 비밀번호 및 파일암호화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금속구조물 설계·제작·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동종 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 반출함

○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하여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도면에 대한 취급자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240) 2021. 5. 21. 확정.

-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고 열람 및 반출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았으며,
- 설계도면 파일을 공유폴더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위 공유폴더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사내 PC의 파일이 외부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았고,
- 출입 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식의 보안절차만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1697 판결²⁴¹⁾

누설된 자료의 관리내용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의 소규모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최소한의 비밀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산모 교실 등 행사를 진행하고 출산·육아 관련 업체들을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해 주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업체에 이메일 전송하여 누설함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하고,
 -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기밀엄수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사의 정보에 대한 보안규정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정보에 직원 누구나 접근 가능하였고, 접근권한을 차등설정하거나 관리직원

24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42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게 정보의 접근을 요청하여 승인받는 절차가 없었으며,
- 피해회사가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적도 없고, 직원들이 회원정보에 접근하여 제휴사에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통제나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회원정보나 그에 접근하는 네트워크상에 ‘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회원정보에 대한 보안담당직원이나 별도의 보안책임자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
- 본사와 지사의 직원이 7명 정도인 피해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밀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다) 비밀로 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333 판결²⁴²⁾

비밀표시를 하거나 다른 일반문서들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및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경쟁업체를 설립한 뒤 피해회사 사내 이메일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제작지원계약서’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무단 반출한 뒤 경쟁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함
- 피해회사가 보안시스템인 라인웍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출입문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반적인 보안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파일이나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비밀조치가 추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각 문서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외비 문서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보안폴더로 지정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 그 외 영업비밀이나 비밀정보로 지정, 관리하였거나 대표이사나 일부 임직원들만 열람

24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41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할 수 있는 문서로 접근이나 전송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2627 판결²⁴³⁾

해당 정보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관리하였다는 조치가 없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도 없어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던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의 부동산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된 매물정보(금액, 특징, 임대내역, 소유자, 작업내역, 토지, 건축물, 건축물대장 정보)를 반출하여 사용함
- 비공시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보유주체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관리를 위한 노력’과 ‘비밀로의 인식가능성’은 여전히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 특정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여야 함
- 피해회사의 프로그램은 회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나, 이는 영업상 필요에 따른 일반적인 관리조치일 뿐, 직원 누구든지 정해진 IP로 로그인하면 프로그램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개인 PC와 노트북을 통해서도 접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 더구나 공용아이디와 공용비밀번호를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는데, 누구나 외우기 쉬운 번호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누구라도 각 매물정보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했고, 저장되어 있는 매물정보 자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여 영업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폭넓게 공유되었고,
 - 정보관리의 책임자나 주체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정보보안이나 정보관리의 측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범용성이 중시되었으며,
 - 피해회사가 출력물이나 USB, 이메일을 통한 자료의 외부 유출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1072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 프로그램 접속 화면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없고, 출력된 자료 하단에는 단순히 피해회사의 동의 없는 복사, 수정, 배포를 금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를 위한 교육,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 ‘회사정보 유출 적발에 대한 징계 및 포상 시행공고’를 제정·시행하고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출받았으나, 영업비밀 내지 영업기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어떠한 규범력이나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각 매물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취급되어 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고려사항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와 비밀로 관리된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① 해당 정보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비밀임을 고지하였는가, ② 다른 일반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는가, ③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는가, ④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가, ⑤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⑥ 직원들에게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준수서약서의 제출,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고 있는가, ⑦ 해당 정보를 거래 업체에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당 정보의 회수·폐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의 법문에 비추어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생산·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방법’ 또는 ‘정보’를 지칭하므로 해당 정보가 내재된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유체물에 내재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²⁴⁴⁾

24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2924 판결²⁴⁵⁾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광학렌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는 군수물품인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자체 설계·제조하고 위 모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규격으로 지정받았고,
 - 동종업을 하던 피고인들 소속 A회사는 피해회사의 ‘단안형 야간투시경’ 모델의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완제품, 부품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는바, 그중 ‘완제품’, ‘부품’은 유체물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 어느 경우이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유체물의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영업비밀의 취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체물이라고 하여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5924 판결²⁴⁶⁾

‘특정 양배추 원종’의 취득에 대하여, 원종은 F1 종자의 생산에 관련된 유전적 정보가 담겨있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종묘육종,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는 양배추 원종*을 개발하였고, 중국에 종묘회사를 설립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회사가 개발한 ‘양배추 부계 원종’을 전달받아 취득함

24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도13931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46)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11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원종'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씨앗(F1 종자)을 일정하게 생산하기 위한 씨앗으로, '부계 원종'(꽃가루를 주는 쪽)과 '모계 원종'(꽃가루를 받는 쪽)으로 나뉜다

- 피고인은 '부계 원종' 45g은 유체물(씨앗)로서 영업비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부계 원종'만으로 F1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계 원종'을 취득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양배추의 F1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

○ 새로운 양배추 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 0년차: 목표형질의 양배추개발 설정 및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
- 1년차: 유전자원들 중 목표형질을 갖춘 자원분리를 위한 분리세대 양성(1차 재배)
- 2년차: 분리세대에서 목표형질을 갖춘 개체선발 및 다른 형질의 원종과 1차 여교잡 실시 및 재배, 목표형질을 갖춘 자원 분리
- 3년차~7년차: 매년 전년에 여교잡하고 재배하여 획득한 개체들 중 목표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기존개발보유 원종과 여교잡 실시 및 재배, 목표형질이 고정된 우수자원 분리 작업 반복
- 7년차: 목표형질이 고정된 씨앗(F1 종자)의 생산을 위한 '부계 원종'과 '모계 원종'의 개발을 완성하는 개발과정을 거치는 등
-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인 '양배추 구의 모양', '양배추 구의 색깔', '병저항성', '포장저장성' 등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을 발현하는 양배추 품종의 씨앗(F1 종자)을 생산하는 유전적 정보를 자신의 전체 DNA 안에 가지고 있는 '부계 원종'과 '모계 원종'을 개발하여,
- 원종 자체가 목표형질을 가진 양배추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집약체임

○ '부계 원종'과 '모계 원종'과의 교배 과정을 거쳐 특정한 유전형질을 가진 F1 종자가 생기게 되므로, '부계 원종' 자체가 F1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의 일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 '부계 원종'과 '모계 원종'은 각각 자가수분의 방식으로 동일한 원종을 대량으로 생산가능하고, 이 원종들을 이용하여 교배를 거치면 F1 종자의 무제한적인 생산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

○ 피고인 측은 원종을 눈으로 보거나 분석함으로써 제품(F1 종자)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종을 설계도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부계 원종'에는 제품(F1 종자)의 생산에 관련된 유전적인 정보가 담겨 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유전적인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분석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만 제품(F1 종자)의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 유전적인 정보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여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계 원종'의 정보성을 부정할 수 없음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제3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민사상 금지청구(제10조),²⁴⁷⁾ 손해배상청구(제11조)²⁴⁸⁾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상 처벌되는 침해행위는 제18조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되는 침해행위의 유형은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의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 ㉢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 요청에 반하여 계속 보유, ②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③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등 크게 3가지가 있고, 영업비밀 침해의 의도가 외국 사용(제18조 제1항)과 국내사용(제18조 제2항)의 경우로 구분되어, 외국 사용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가.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²⁴⁹⁾

(1) 부정한 목적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노979 판결²⁵⁰⁾

피해회사의 스마트폰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안에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247)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48)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4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250) 2006. 7. 13. 확정.

-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상위그룹 내 직원 동호회가 외부 업체(甲 회사)와 협력하여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하자, 피고인 A는 업무상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FPGA 보드(모바일 CPU 개발에 사용) 회로도의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위 동호회 소속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발송하여 누설하였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목적을 부인함(피고인 A는 동호회에서 학습용 보드를 제작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 피고인 A가 FPGA 보드 회로도의 전자파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이는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회로도 등의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내지 스마트폰에 사용될 보드를 연구, 개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노트북에서 위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등의 파일을 복제한 후 이메일로 미국에 있는 제3자에게 발송하였고,
 -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甲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바일 단말기 제작을 진행하자 甲 회사 직원에게 위 MITs GSM/GPRS 스마트폰 소스코드 등 파일이 복제된 DVD 1장을 참고하라며 교부하였음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노1537 판결²⁵¹⁾

파일의 저장방법, 시점, 경위 등을 종합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 조선해양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선박 설계도면 등 대용량의 영업비밀 파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에 다운받아 저장함
-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속해 있던 기술본부에 설치된 모든 PC의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외장형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피고인은 2007. 4.경 경쟁업체로부터 전직 권유를 받았고,

25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11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2007. 4. 14. 원유운반선에 대한 선주인도 자료파일 4,382개 3.7GB 분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저장하고,
 - 2007. 6. 5.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한 후 원유시추선 관련 설계도면, 해양플랜트 관련 설계도면 등 파일 9,412개 6.65GB 분량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받았고,
 - 2007. 6. 6.경 기술기획팀 파트장의 PC에 접속한 후 사업계획-기본설계담당.ppt 파일 등 경영자료 파일 684개 1.9GB 분량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받았으며,
 - 퇴사하기 직전인 2007. 8. 27.부터 2007. 8. 30.까지 자신의 회사 PC 하드디스크에 음악파일 3,909개 17.7GB 분량을 저장하고 삭제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복구를 어렵게 했고,
 - 피해회사는 퇴사예정자인 피고인에게 파일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에 저장되어 있거나 복구한 파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명토록 했으나, 피고인은 삭제 파일 복구작업을 하지 않고 삭제되지 않은 파일만을 출력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며,
 - 피고인이 퇴사한 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PC를 복구하자 기술기획팀, 생산기획팀,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수만 개의 파일들이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고,
 - 피고인은 2007. 8.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의 기술기획실장으로 입사하였음
- 피고인은 퇴사 무렵 동종 업체로 이직하면서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3고단116 판결²⁵²⁾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석사논문에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제조 등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기술개발, 연구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태양광 추적·집광 장치의 회로도 등을 그대로 게재하였고,

252)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항소만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2235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2014. 11. 6.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연구 목적으로 학위논문을 작성·제출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학위취득에 이용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 피고인이 대가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향후 이를 이용한 경쟁기업이 출현하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초래되어 업무상배임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4228 판결²⁵³⁾

유출방법,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 대한 인식 여부, 피해회사와 중개업체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 반도체 제작업체인 피해회사에서 생산 장비의 설치·작동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생산 장비 등을 납품하려던 중개업체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영업비밀인 생산 장비의 현황, 공정흐름도 등을 전달함
 - 중개업체가 납품을 검토하던 장비가 피해회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변소하면서 부정한 목적 부인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회사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관리 규정이나 교육 등을 통해 자료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USB의 사내 반입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은 USB 등이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 피고인 A는 자신의 PC(USB 차단 기능이 있음)에 있던 이 사건 파일을 굳이 WP(Wafer

253) 2014. 9. 26. 확정.

Process, 웨이퍼에 반도체칩을 상하층으로 더 고도로 집적하기 위해서 하는 재배선 작업 등의 공정) Line 내에 있는 PC(USB 차단 기능이 없음)를 이용하면서까지 USB에 저장하고, 이를 담뱃갑에 숨겨 반출한 뒤 납품 중개업체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열람, 복사시켜 주었고,

- 피고인 B는 피해회사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업체의 직원이며,
-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 A나 중개업체 직원인 피고인 B가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하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 B의 경우, 입사 당시부터 피해회사에 장비 납품 일을 담당하여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 관리방법, 그에 관한 사내 규정과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고,

- 이 사건 파일을 복사하기 전 파일을 열람하였는데 각 파일의 우측 상단에 'SECRET'이라는 빨간 문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 피고인 B가 말았던 일은 피해회사와 협력관계라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WP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면 피해회사에 공식적으로 질문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된 이 사건 파일을 열람한 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됨

□ 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704 판결²⁵⁴⁾

경쟁업체 측에 영업비밀이 전달된 이상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 사출기 제조업체인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 B는 함께 근무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고인 C에게 영업비밀인 회로도를 송부하였고,
 - 피고인 C가 송부받은 회로도를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참고하여 경쟁업체에서 사출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이던 사람들이고, 피해회사에 재직할

254)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159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당시 모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영업비밀 유출방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 이 사건 유압회로도에는 아직 판매되기 전의 사출기에 대한 것이며,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유압회로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불법인가?’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유압회로도를 넘기면서 경쟁업체에 보여 주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고,
 - 피고인 C는 경쟁업체에서 대형 사출기 개발 업무를 맡고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유압회로도를 전달할 경우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 C는 ‘대형 톨수 사출기의 유압회로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여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유압회로도를 기존의 유압회로도 또는 경쟁업체가 당시 개발 중이던 사출기의 유압회로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경력, 이 사건 유압회로도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및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부정한 목적 부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088 판결²⁵⁵⁾

1년 지나 이직한 회사 서버에 업로드 된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피해회사와 업무분야가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 사례

- 통신용 IC 설계·개발 업체인 피해회사에서 다른 A회사로 이직한 뒤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무렵 피해회사의 설계보고서 파일 등을 A회사 공용서버에 업로드함(반출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인정)
- 피해회사의 파일 15개를 A회사 공용서버에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개인하드의 용량이 부족하여 공용서버의 개인폴더에 옮겨 두었던 것으로, 개인폴더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55)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506 항소기각 판결 2019. 6. 22. 확정.

- 위 파일들이 업로드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어본 흔적이 없으며, 파일들이 업로드 된 시점에 A회사와 피해회사의 업무 분야가 서로 달라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았음
-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A회사에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113 판결²⁵⁶⁾

피해회사의 특허권을 압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 사례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해회사의 연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제안서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기재하였는데,
 -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특허권에 대해 피고인이 체불임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특허권 압류와 매각명령을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에는 현재의 특허권자가 피해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특허권 압류와 매각명령을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매각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확보할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별도로 개발하여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였고,
 - 특허권 매각절차에서 취득하여 추가 개발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체불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무산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취득할 이익이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가 특허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법률이 보호하려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 특허권 취득에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피해회사가 사용한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로써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을 뿐이고, 비교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 결과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만한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님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전형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행위를 하려는 경우

256) 대법원 2020. 9. 11. 자 2020도9566 상고기각 결정으로 2020. 9. 16. 확정.

인정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수원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1640 판결²⁵⁷⁾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이고, 과거 다른 협력업체에도 피해회사 내부 정보가 제공된 점이 있으며, 업체가 문건을 입찰 등에 활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 사례

-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해회사의 직원 A가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영업비밀인 피해회사의 투자계획 보고 문건을 전달
- 피해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통상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과 달리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아니라 등록 협력업체이고,
 - 피해회사의 생산기술팀 직원들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도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 피고인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의 사전 견적서를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사 생산기술팀 내부 검토가나 최저 견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실제 입찰 참가시 타 업체의 견적가 등을 참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 회사가 피해회사의 사업투자 계획에 따라 미리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확장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3) 고려사항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고려사항으로는,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피해회사의 서약서, 보안관리규정 등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까지 취득하였는지),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허용되는 방법인지, 취득한 영업비밀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영업비밀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밝힌 적이 있는지, 영업비밀을 취득한 직후에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는지, 입사한 다른 업체는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등이 있을 것이다.

257) 2019. 10. 3. 확정.

나.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 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 임직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²⁵⁸⁾

(1) 취득 인정 사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사내망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로 다운로드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취득’의 기수가 인정 된다고 본 사례

- 자동차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변속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다운로드받아 일 부는 CD에 저장하여 중국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운로드받은 직후 삭제한 사안 중에 서 삭제한 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피해회사 사내망인 도면전자출도시스템에 제3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하여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각 다운로드받음으로써 그 영업비밀 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해 영업비 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이로써 영업비밀 취득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25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382 판결²⁵⁹⁾

영업비밀 자료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영업비밀의 '취득'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모바일게임, 인터넷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해외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문서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중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파일들을 보관한 사안
- 각 문서들의 컴퓨터 파일을 CD에 복사할 당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미 그 문서들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취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상 더 나아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요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3156 판결²⁶⁰⁾

피고인이 다른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는 별도로 영업비밀의 '취득'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유압무단변속기 등 제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 A가 외부인 피고인 B 등과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내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한 뒤 중국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반출한 다음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사안
-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그와 같은 자료를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성립하는 반면,
 -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행위자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므로,

25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46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60) 2015. 4. 11. 확정.

- 업무상배임 행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공동정범들 전원이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A가 2013. 7. 20.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을 위 공범들과 함께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 A, B 등의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3. 7. 23.부터 2013. 8. 8.경까지 피고인 B 등에게 설계도면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를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실상 이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와 별도로 성립함

(2) 취득 부정 사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무단 송부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의 ‘취득’이 부정된 사례

- 우수처리장치 제작·판매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 무렵 피해회사의 우수처리장치의 도면 등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뒤 퇴사 이후 설립한 경쟁업체 제품 개발에 활용한 사안
-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같은 취지에서, 영업비밀을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

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피해회사 임원이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저장해둔 상황에서 '외장하드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중공업 업체인 피해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근무 당시 담수플랜트 등 관련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가 약 1개월 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온 사안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2006. 11. 30. 및 2006. 12. 20.경 외장하드에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78개 파일들을 복사함으로써 이미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고 별개의 취득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판결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퇴사 무렵 암호화 해제하고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제품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 기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 파일들을 암호화 해제, 메일전송, USB 메모리 저장한 후 개인 노트북에 다시 저장하여 피해회사 밖으로 무단반출한 사안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37 판결²⁶¹⁾

영업비밀의 취득시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피해회사의 그룹장이던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경쟁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1. 9.부터 2012. 2.경 퇴사 무렵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암호해제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취득한 사안
- 피고인이 2011. 6.경 허가받지 않은 외장하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당시 외장하드에 도면자료 등 백업자료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업무를 망라하는 내용의 200GB가 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고,
 - 임원이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량의 데이터 저장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 암호화된 피해회사의 파일들을 해제하여 피해회사의 PC에 저장하는 것은 보안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 2011. 6.경 불법 외장하드 사용이 발각된 후 피해회사의 직원이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회사 내부의 데이터 저장장치인 넷드라이브에 옮겨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피해회사는 보유한 파일들을 대외비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보안설정을 하였을 뿐 특별히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이미 2011. 6. 이전에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지 않을 때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26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로 해당 부분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판결²⁶²⁾

해당 자료를 업무 목적으로 보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위폐감별기 개발업체인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저장했던 위폐이미지 정보 등 영업비밀 파일을 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옮겨 저장한 사안
-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연구소장 및 중국 해외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미 저장한 상태였는바,
 -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고려사항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영업비밀 자료를 보유하였는지, 영업비밀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타인의 접근권한(ID/PW)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라도

① 무단 반출행위 이전에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하게 된 별개의 행위가 존재하고, ② 업무상 사용할 목적의 보유 등 영업비밀 보유 시점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면, 영업비밀 취득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²⁶³⁾ 다만, 이러한 반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또는 영업비밀 무단 유출 범행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26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732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63)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술 유출·침해 범죄 법률·판례 해설(2022), 163.

다.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²⁶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정사용행위가 절도의 불가별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²⁶⁵⁾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 피해 기업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 등과 일치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원이 감정을 촉탁하거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⁶⁾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의 전문적 심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된 기술조사관에게 자문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술조사관 의견은 소송법에 근거한 의견청취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²⁶⁷⁾

(1) 사용 인정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²⁶⁸⁾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범행 진행 단계를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각 영업비밀별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 및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

264)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26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266)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47.

267)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48.

26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중공업 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담수플랜트 등 관련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후 경쟁업체에서 담수 관련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는데 참고한 사안
- 영업비밀 사용범죄에 대해 단계별 범죄 성립 여부 및 미수, 기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 파일을 열람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1단계, 파일을 열람했으나 경쟁업체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2단계, 파일을 열람했고 경쟁업체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3단계로 각각 구분

[기수, 미수의 구분]

단계	행위의 태양	구분
0	취득	
1	저장 or 비치	실행의 착수 없음
2	열람	미수
2-1	열람 후 이용성·활용성 고려중	미수
3	실행(이용 or 활용)	기수
4	결과(미완성 포함)	기수

□ 대구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노771 판결²⁶⁹⁾

영업비밀인 파일의 열람여부, 열람 후 경쟁업체의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의 '사용'을 인정한 사례

-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도면, 단가, 시험보고서, 사업계획, 시장분석자료, 기술자료 등 자료가 경쟁업체에 유출·사용된 사안
-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당해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함
-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문서나 도면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이를 변형·가공하는 행위는 물론,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문서나 도면을 작성하면서 영업비밀인 피해회

²⁶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도372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사의 문서나 도면 등을 열람하여 비교·대조하여 보거나 문서의 형식이나 도면의 양식 등을 참조하는 행위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에 포함됨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²⁷⁰⁾

피해회사의 특징적인 제조기술을 일부 채용하였고 양측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침해자 파일에서 피해회사 파일 속성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을 인정한 사례

- 재생의료제품 개발·판매를 하는 회사(채권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콜라겐 제품 개발·제조·생산·인허가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품목허가를 받았으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
- 채무자 제품의 제조 공정은 채권자 제품의 제조 공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채권자의 특징적인 제조기술을 일부 채용하고 있고,
 - 채무자 회사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여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 요약서’, ‘콜트릭스 시험방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채권자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콜트릭스 시험방법서’는 채권자의 ‘테라필 시험방법서’ 파일을 수정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함으로써 파일 속성의 ‘만든이’가 채권자의 대표이사 영문 성명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테라필 시험방법서’ 중 ‘하이드록시프롤린 분석’에 관한 자료(시약의 종류, 구입처, 보관조건 등)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음
- 유출된 피해회사의 기술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자 2019카합10295 결정

피해회사 설계도면과 침해자의 설계도면의 유사정도, 침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사용이 인정된 사례

270)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재항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 냉열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채권자)에서 퇴사하여 동종업을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반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
- 채권자 설계도면과 채무자 설계도면은 제품명·모델명, 도면의 배열(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구성 및 치수선 배치 방식, 도면 제작일, 재질, 규격, 처리방식, 수량, NOTE 내용, 도면 검토자, 도면의 수정을 기록하는 날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 채무자는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연구나 투자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한 설계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했을 뿐 튀김기 제작 경험이 없었는데, 채무자가 2018. 7.경 업소용 튀김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곧바로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위 제품을 납품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자 설계도면의 기술상 정보를 참고하지 아니하고는 위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 설계도면을 취득하였고, 채무자 실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위 설계도면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사용 부정 사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95 판결

A회사로 이직한 이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A회사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일부 파일을 실행시킨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이 부정된 사례

-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부품을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A회사로 이직한 피고인이 퇴사 후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은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A회사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그중 일부 파일을 실행 (파일 실행 부분은 영업비밀 사용의 기수죄, 나머지는 영업비밀 사용의 미수죄로 기소)

- 파일 실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파일을 실행시킨 시점에 A회사가 파일과 관련된 PDP 코더 장비 개발 착수나 진공건조장치 개선 추진, 또는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 피고인이 파일 중 일부를 실행시킨 것만으로 부정한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파일 보관 부분에 대해,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지칭하는데,
 - 파일형태의 영업비밀은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람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착수시기는 파일을 불러들여 이를 읽는 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실행의 착수 이전인 단순 보관의 단계에 불과하여 미수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가합60058 판결²⁷¹⁾

웹에 공개된 코드인지 여부, 오픈소스인지 여부 등 고려한 소스코드 유사도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부정된 사례

- 은행창구업무를 PC 등 단말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원고가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출시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웹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유사도는 약 17.72%에 불과하고,
 - 피고의 프로그램 중 단말 엔진 부분의 소스코드 유사도는 오픈소스를 80% 이상 참고한 35개 소스코드를 제외하면 원고의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와의 유사도가 16.3% 정도에 불과하며,
 -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중 일부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코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웹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임

271) 2014. 5. 9. 확정.

○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고려사항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의 보관에 그치지 않고 열람(파일 실행)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비밀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영업비밀의 ‘누설’

형사처벌 대상인 ‘누설’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인 ‘공개’가 동일한 것인지는 법규정상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보이고,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⁷²⁾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피해회사의 경쟁회사 등 타 업체에 영업비밀을 전달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반드시 피해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일 필요는 없을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2466 판결 같은 경우, 곧 출시될 신차 정보를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전송한 행위를 영업비밀의 누설죄로 판단하였다.²⁷³⁾

(1) 누설 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노7423 판결²⁷⁴⁾

피해회사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피해회사가 의뢰한 설비를 제작한 것 이외에 설비를 추가 제작하여 해외 제3자에게 판매하고 기계 보수용으로 관련 도면을 송부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전구용 필라멘트 등 제조업체인 피해회사로부터 자동 압착설비 제작을 의뢰받은 피고인

272)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4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참조.

273)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술 유출·침해 범죄 법률·판례 해설(2022), 184.

274) 2021. 7. 15. 확정.

- 이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도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설비 2대를 추가로 제작, 중국 및 인도 업체에 판매하고 기계 유지보수에 참고하도록 위 도면 등을 함께 전달한 사안
- 피고인은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력, 해외업체가 피고인의 회사에 설비제작을 의뢰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설비 관련 신기술이 해외업체로부터 관심을 끌 정도의 기능상 개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기밀유지 계약을 위반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기계설비를 제작·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

□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노3836 판결²⁷⁵⁾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철강회사인 피해회사의 연구원이었던 피고인이 영업비밀인 롤 제작 관련 도면 등을 피고인의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납품업체 관계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 피고인이 영업비밀 자료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숙소에 옮겨 놓거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고, 납품업체에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인정됨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3817 판결

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항암제 실험 결과의 정리 자료를 제출하여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여 누설한 사례

-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자신이 미국 내 특허권자가 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에 피해회사의 실험결과 정리 자료를 제출하여 미국특허청 사이트에 게시되게 한 사안
-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성과물 전부에 관하여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신규사항으로

27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2361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추가하여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특허출원에 따른 자료의 공개는 결국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져옴

-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및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2) 누설 부정 사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실제 발명행위를 한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그 결과물을 승계하기 전 발명을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합금개발 업체인 피해회사의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새로운 합금 기술을 개발하자 이를 피고인 A 명의로 특허출원하고 경쟁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안
-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 종업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
- 다만,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위반(제58조 제1항, 제19조*)으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발명진흥법 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영업비밀 ‘무단유출’의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행위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접근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퇴사 무렵 회사 밖으로 임의반출한 경우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상배임죄로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위와 같은 행위에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8538 판결²⁷⁶⁾

배터리 검사 기기 등을 개발·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한 피고인이 퇴사 직전 피해회사 연구소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소스코드, 회로도 파일 등을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후 연구소 밖으로 가지고 나간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인정

276)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5609 항소기각 판결로 2022. 8. 19.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7044 판결²⁷⁷⁾

무선통신 반도체의 연구개발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확정되자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뒤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다음 서버 내 폴더 내에 있는 영업비밀 등을 개인용 PC의 하드디스크로 옮겨 저장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 인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1773 판결²⁷⁸⁾

사직권고를 받은 뒤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피해회사의 업무용 메일계정에 있는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메일계정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해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을 인정한 사례

- 전자통신기기 제품 개발 및 제조를 하는 피해회사에서 사직권고를 받아 퇴사하기 전날 피고인의 회사 메일에 보관 중이던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19차례 전송한 사안
- 피고인은 퇴사에 앞서 개인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 메일계정으로 일괄 전송한 것이어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연구소 차장으로 유출된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 피해회사 내부 갈등을 겪던 중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일 전날 오전에 개인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일괄적으로 전송하였음에도 수사관으로부터 정보유출목차를 제시받기 전까지 이메일 전송사실을 부인하여,
 - 피고인이 위법한 무단 반출임을 인식한 채 범행한 것에 나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하였음을 추단케 함
- 또한, 피고인이 개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19개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하나, 19개 이메일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음

277) 2022. 6. 23. 확정.

278) 인천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1945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고단9730 판결²⁷⁹⁾

DLP 로그자료, 피고인의 지위 및 영업비밀의 관리 방법, 유출 시점 및 퇴사 시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을 인정한 사례

- 화장품 성형 및 충전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전산실 서버에 접속하여 설계도면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받은 뒤 3차례 걸쳐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안
-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사실과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 그러나 DLP(Data Leakage Prevention, 데이터 유출방지) 로그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인이 2019. 10. 11.경 내지 2019. 10. 22.경 사이에 이 사건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10. 2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9. 10.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업체에 입사하였고,
 - 피해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설계도면 개선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도면의 관리 방법과 형태, 피고인의 퇴사 시기, 경쟁업체 취업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 부정한 목적이 추단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정22 판결²⁸⁰⁾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마케팅 관련 자료 등을 출력하여 집으로 가지고 나간 사안에 대해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을 인정한 사례

- TV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에 피해회사의 마케팅 전략 관련 자료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여 나간 사안
- 권고 사직 제안을 받고 이력서 작성 등 목적으로 과거 수행했던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문서를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279) 2021. 7. 2. 확정.

2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2056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퇴사 직전 보직 해임된 상태에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 무단유출 인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1405 판결²⁸¹⁾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설계도면 파일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집으로 가지고 나간 사안에 대해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을 인정한 사례

- 모터 등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를 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PC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주거지로 가져간 사안
- 피고인은 이직한 회사의 업종이 다르고 유출한 파일들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할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
- 피고인은 2020. 3. 25. 피해회사의 전산팀에 보안해제를 요청하여 보안해제를 받아 노트북에서 이동식 저장매체로 파일을 복사한 뒤 2020. 3. 26. 연차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0. 4. 23.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2020. 3. 17.부터 이직한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직을 제안받아 이미 이직을 생각하며 자료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이 복사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자료이며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 이외에도 피해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이 다수 포함된 자료를 복사하여,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직 후 업무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피해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 유출한 자료가 이직한 회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이상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이 인정됨

281)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11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바.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계속 보유’의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하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 또는 반환 요구’가 필요하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는 자가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한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사 후에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²⁸²⁾에 따라 2019. 7. 9.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8538 판결²⁸²⁾

배터리 검사 기기 등을 개발·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퇴사 시 재직 중 보관한 회사의 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기업비밀보호 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시 같은 취지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사 이후에도 기구 설계도 및 부품리스트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를 인정함

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영업비

²⁸²⁾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5609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밀 침해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취득’, ‘사용’, ‘누설’, ‘무단 유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와는 달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²⁸³⁾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을 알고 있던 경쟁회사의 직원을 고액 급여 지급 등을 조건으로 스카우트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을 인정한 사례

-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잉크제조 관련 기밀사항을 잘 알고 있던 A를 고액 급여 지급 등을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고, A는 전직 사실을 숨긴 채 신병 치료 등 이유로 퇴사한 뒤 피고 회사에 입수하여 단기간 내 원고 회사의 제품과 성분이 동일·유사한 펜을 생산한 사안
-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고,
 - A는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 피고 회사로 하여금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하였으므로,
 - A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임

28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유성잉크의 제조방법에 관한 중요한 기밀사항을 잘 알고 있는 A를 원고 회사보다 높은 직위와 급여를 주기로 하는 등 스카우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 피고 회사가 별다른 연구, 개발 실적이 없이 A를 스카우트한 후 단기간에 원고 회사의 제품인 염료타입 메모리펜과 그 성분이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 6색을 생산한 점에 비추어,
- 피고 회사는 단지 A가 원고 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A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고용하여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을 기술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날 피해회사의 업무용 PC에 있던 문건 자료를 복사하여 간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을 인정한 사례

- 모바일게임의 해외 판매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가 퇴직일 다음날 원고 회사의 업무용 PC에 있던 자료를 복사하여 가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PC에 위 자료를 복사하여 보관
-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고,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한다고 봄이 상당함
- A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

4. 미수, 예비·음모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미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행위의 예로는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낼 계획을 세우고 해킹 장비를 구입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음모행위의 예로는 경쟁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영업비밀을 빼내어 건네주기로 약속한 경우를 들 수 있다.²⁸⁴⁾

‘미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고단8544 판결²⁸⁵⁾

소셜커머스 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종업체 사무실에서 외부용 IP를 사용하는 PC로 피해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하였으나 ID/PW를 사용할 수 없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취득의 예비·음모죄를 인정한 사례

284)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51.

285) 2014. 4. 16.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4835 판결²⁸⁶⁾

가전제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벤처회사를 설립한 피고인 등이 피해회사가 적용한 냉장고 관련 기술(에지벤딩 기술)을 연구하여 중국 회사가 개발 중인 냉장고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피해회사의 에지벤딩 관련 도면을 편집하여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영업비밀 누설의 '예비'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술검토보고서가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규격과 수치가 생략된 에지벤더의 형상 자체이며, 에지벤더 방식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례

5. 죄수 관계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상호 간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²⁸⁷⁾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인터넷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을 하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문서파일을 가지고 나와 중국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문서파일들을 보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²⁸⁸⁾

3D 광학 스캐너 생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3D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누설 등에 대해 동일한 범의하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일부 위반 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죄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286) 2017. 2. 10. 확정.

28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28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로 해당 부분 확정.

나. 절도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별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피해회사 소유의 유체물’을 절취한 경우 ‘영업비밀 취득죄’ 등과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²⁸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선박용 엔진부품 판매를 하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판매단가, 부품 규격 등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함

□ 창원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09고단4031 판결²⁹⁰⁾

피해회사에서 경영혁신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제작도면, 부품명 세표 서류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신고 간 사안에서, 영업비밀 취득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다. 업무상배임죄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영업비밀 무단 유출죄 또는 영업비밀 누설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28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378 판결 참조(업무상배임죄와 절도죄의 죄수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사안임).

290) 창원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노1669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자동차 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변속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다운로드받아 CD에 저장하여 중국업체에 판매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유출·침해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²⁹¹⁾

첨단기술,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인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등 A대학 보유 연구자료 등을 윈드라이브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중국 B대학 소속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6. 영업비밀 침해 판단 고려사항

앞서 본 판례들에 비추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9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098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표 18] 영업비밀 침해 판단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비공지성	○ 특허, 논문, 인터넷 자료, 카탈로그 등에 의해 공지된 정보인가 ↔ 일부 공지된 정보 이외에 활용 목적에 맞게 시간과 비용을 들인 피해자 고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생산된 제품에서 역설계(역분석)로 손쉽게 정보취득이 가능한가 ↔ 역설계(역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가
	○ 절차에 의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한 정보인가 ↔ 보안서약, 회수 또는 파기 등 조건을 준수해야 열람이 가능한 정보인가
	○ 특허, 문헌 등 공지된 내용만으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한 기술인가 ↔ 공지된 내용 이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파악가능한 기술인가
	○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인가
경제적 유용성	○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가
	○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가 ↔ 특별한 시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가
비밀관리성	▶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와 비밀로 관리된다는 객관적 인식 가능
	○ 해당 정보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비밀임을 고지하였는가
	○ 다른 일반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는가
	○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는가
	○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가
	○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는가
	○ 직원들에게 입사·퇴사 시 영업비밀 준수서약서의 제출, 퇴사 시 영업비밀 자료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고 있는가
	○ 해당 정보를 거래 업체에 제공할 경우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당 정보의 회수·폐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부정한 목적	▶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비밀관리성 인정
	○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회사의 서약서, 보안관리규정 등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까지 취득하였는가
	○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허용되는 방법인가
	○ 취득한 영업비밀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밝힌 적이 있는가
	○ 영업비밀 취득 시점과 다른 업체 입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가, 입사한 다른 업체는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가

구분	고려사항
영업비밀의 '취득'	○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영업비밀 자료를 보유하였는가,
	○ 영업비밀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접근권한이 있었는가 ↔ 타인의 접근권한(ID/PW 등)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는가
영업비밀의 '사용'	○ 영업비밀의 보관에 그치지 않고 열람(파일 실행)하여 실행에 착수했는가
	○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비밀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는가

III.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는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으나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이 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

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²⁹²⁾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인정 사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퇴사한 피고인이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설계·제작 등 업무를 도와주는 기회에 전기도면 파일 등을 무단반출한 사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한 사례

- 태핑기계 생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형과 한달 전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경쟁업체로 전직했는데, 피해회사로부터 퇴직 후에도 태핑기계에 대한 전기제어장치 설계 및 사후관리를 계속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터치스크린 프로그램도면파일, 전기도면파일, PLC프로그램파일, 사용설명서 등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됨
-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할 당시 피해회사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여전히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292)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 사례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 3차원 광학스캐너를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2011. 8. 5. 퇴사한 이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경쟁업체에 입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광학스캐너 소스코드를 가져가 사용하고(업무상배임 인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4. 피고인 A가 임의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 사용(업무상배임 가부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논외
-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나,
 -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 A가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

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노1481 판결²⁹³⁾

해당 제품이 시판되어 누구라도 동일 제품을 복제·판매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동일 금형들과 제품을 제조·판매한 OEM 계약의 상대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 인조손톱의 제조방법 등에 대해 특허를 가진 피해자와 인조손톱의 금형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인조손톱 제작 OEM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금형들을 임의제작하여 인조손톱을 제작, 판매한 사안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안한 디자인의 인조손톱이 공개되기 이전의 개발 단계에서 그와 동일한 인조손톱을 제작·판매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상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조손톱이 시판되어 누구라도 동일한 인조손톱을 복제·판매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동일한 금형과 인조손톱을 제작·판매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금형제작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

293)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03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²⁹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⁹⁵⁾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²⁹⁶⁾

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사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퇴사 이후 경쟁업체에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반출행위 또는 미반환·미폐기 행위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는 사례

- 피고인들은 의료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각각 DSC(Digital Scan Converter)팀 책임연구원, PA(Probe & AP&I)팀 연구원, 고객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동일 경쟁업체의 Hardware팀 전임연구원, 초음파 영상이미지 검사 전임연구원, 해외영업팀장으로 이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파일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뒤 일부는

294)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9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296)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경쟁업체의 PC에 복사하여 사용한 사안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은,

- 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택근무 및 백업목적으로 수시로 자료를 보관하였고,
- ② 피고인 A는 퇴사 당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공용 PC에 옮겨 놓은 뒤 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인수인계서에 승인을 받아 퇴사하였으며,
- ③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다른 업체를 거쳐 퇴사일로부터 5개월 뒤 경쟁업체에 입사했고, 피고인 C 또한 퇴사한 뒤 다른 업체를 거쳐 퇴사일로부터 3개월 뒤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등 퇴사할 당시에 경쟁업체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④ 피고인 B는 자신의 거주지 PC에 자료를 옮겨 저장하지 않고 CD로만 보관하였으며,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경쟁업체에 국내연구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 ⑤ 피고인 C는 외부에서 피해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대리점이나 공장 출장 시 회사서버에 접속할 목적으로, 퇴사한 이후로는 피해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재택근무 및 백업을 위하여 자료를 집에 보관한 것을 넘어 개인의 이익 또는 앞으로 이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업체를 위하여 그 자료를 유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어 무죄 선고

○ 그러나,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입사 시 또는 재직 중에 서약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각 작성하여 퇴사 시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 피해회사는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용 자료의 사외 반출을 금지하면서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용인하였으나 피고인 B, C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 퇴사 시 사직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파일들의 반출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은 채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고,
- 피고인 A, C는 경쟁업체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의 PC에 옮겨 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향후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가사, 피고인 A의 경우 순전히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에 있어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퇴사 시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음)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무단 반출한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로 제한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 태핑기계 생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형과 한달 전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경쟁업체로 전직했는데, 퇴직일 전후로 태핑기계에 대한 판매처별 제품전적, 거래가격 등이 기록된 인보이스파일, 기계매매계약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전송하여 경쟁업체의 영업에 이용하고,

- 피해회사로부터 퇴직 후에도 태핑기계에 대한 전기제어장치설계 및 사후관리를 계속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터치스크린 프로그램도면파일, 전기도면파일, PLC 프로그램파일, 사용설명서 등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PLC회로 프로그램 도면은 특정 태핑기계 모델에 1 : 1로 대응되는 자료이고 복잡한 전기선의 배선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및 기존 제어신호의 논리적 제어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제작·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도면 등을 변경하는 데에 1개월 이상, 변경된 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데에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 태핑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태핑기계가 고장 시 수리할 때에도 필수적인 자료들이고,
 - 매매계약서 파일, 인보이스 파일, 거래처 주소록 파일에 있는 자료는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및 태핑기계에 관한 매매조건, 부품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가 수년 동안 거래하면서 작성한 자료인 점, 동종영업을 영위하려는 피고인으로서 피해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태핑기계에 대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정보, 거래처별로 제시하거나 계약한 금액, 납품조건 등 매매계약의 내용도 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 대표 및 그 일부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 대표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태핑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 사진 파일은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적용한 태핑기계의 터치화면의 사진을 저장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유출할 당시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적용한 태핑기계는 이미 제조되어 있었고 그 터치화면은 외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 대표가 그에 관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거나 그 사진자료에 의하여 태핑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진 파일에 있는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부정 사례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359 판결

특허권기본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권을 1년간 위임한 제3자와 회사 경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자 피해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업활동정보처리방법'에 관한 특허권의 등록명의자를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사안
- (원심²⁹⁷⁾) 피고인이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발명하여 그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 출원 전에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장차 출원하여 취득하게 될 특허권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그 명의를 누구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특허권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회사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 위 기본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의결을 행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고 임시주주총회를 거친 후에 위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특허권 기본계약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계약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유효하고, 이와 같이 특허권 기본계약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과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가 피해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그 등록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준 행위는 위 특허권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피해회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297)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노5482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이미 공지된 이론을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변수들을 변화시켜 실시한 실험결과 등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전극선 제조·판매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창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연도금 전극선의 제조와 관련한 실험결과 분석자료를 PC 및 CD에 저장하여 퇴사한 뒤 수주 등에 사용한 사안
- 이 사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되어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공지되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단말기를 생산하는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피고인 A, 하드웨어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회로도, 부품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등이 들어있는 CD와 PC를 반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단말기 등을 제조한 사안
-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MPU와 모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단말기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반출할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술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의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술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피해회사에 권리 양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직무발명자인 피고인들이 특허출원 명의를 변경하여 특허출원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특허법인에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피해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의뢰하였다가 발명자인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해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한 사안
-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는 피해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사용자인 피해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들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그 발명자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해회사가 위 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관한 발명을 완성할 당시 피해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없었고,
 - 피해회사가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과 사이에 미리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관한 발명의 완성 후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양도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합의의 성립을 추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 등의 등록출원에 관련된

업무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은 물론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음

- 결국 피해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등으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퇴사하면서 무단 유출한 개발진행보고서, 테스트 결과 등이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자료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PTMEG(스판덱스 섬유와 폴리우레탄의 원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면서 개발진행보고서, 테스트 결과 등을 무단 반출한 사안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 'New Catalyst 개발진행 보고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그의 주도로 발명해 왔던 '엽납석 촉매 및 이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직원이 실시한 실험결과 자료일 뿐으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 'PTG PILOT TEST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그의 주도로 발명해 왔던 '부반응기를 이용한 PTMEG-디에스테르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단지 그 운전조

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도 및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직원이 실시한 실험결과 자료인데, 반응 시간 및 온도, 반응 원료인 무수초산(無水醋酸)의 농도 등이 생략된 채 실험결과 수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로부터 실험한 운전조건 등을 알아내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실험방법의 잘못으로 그 실험결과를 실제로 적용한 시험 운전에는 실패하여 현재 피해회사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 부반응기를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위 실험결과가 부반응기 운용방식의 개선과 같은 기술개발 등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를 찾기도 어려워,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음

- 나머지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PTMEG의 물성이나 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 자료, 피해회사가 중국 회사들에 PTMEG 생산기술을 수출하면서 제공하거나 작성한 일반적인 홍보자료나 계약서 또는 특허출원하였으나 거절된 발명에 관한 자료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이거나, 피고인이 주도의 발명에 관한 자료 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 등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자료들이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고령토 촉매 발명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회사가 이익을 제기하거나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바는 없음에 비추어 피해회사도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 또는 새로운 PTMEG 제조방법 등에 관한 실패한 실험자료일 뿐으로 이후의 기술개발 등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를 찾기는 어려운 자료 등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료들임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피해회사에서 기술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5건의 직무발명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4건은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공동명의로, 1건은 피고인과 피해회사 대표이사와의 공동명의로 각각 특허출원한 사안
-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어서, 직무발명에 대하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고,

- 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음

○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피해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그 완성 후에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 이 사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 결국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회사 또는 자신과 대표이사 공동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3. 재산상 이익 및 손해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²⁹⁸⁾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298)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²⁹⁹⁾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³⁰⁰⁾

가. 재산상 이익 및 손해 인정 사례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으로 판단한 사례

- 피해회사의 반도체총괄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64M SDRAM 회로도 일부, 64M SDRAM 칩 사이즈 에스티메이션, 설계·공정·불량분석 결과 등 자료들을 복사, 출력,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유출한 사안,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기소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관계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 그 재산가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

299)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30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15747 판결.

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그 자료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는 이유와 피고인들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삼성전자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상당인 것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

□ 대구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3노163 판결³⁰¹⁾

유출된 자료의 가치평가액을 산정한 자료가 피해회사에서 가지는 가치만을 평가한 것이어서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 및 손해액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피해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인 휴대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뒤 경쟁업체에서 GSM 휴대폰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
-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로 경쟁업체가 기술개발비 74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특경법위반(배임) 죄로 기소(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시장교환가격이 133억 4,000만 원으로 공소장 변경)
-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 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임
- 한국기술거래연구소에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가치를 133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

301)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실이 인정되나, 통상 기술평가방법에는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이 있는데 한국기술거래연구소에서 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가치평가는 위 자료가 미래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기술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료의 가치평가를 산출한 것으로,

- 5년간 피해회사에서 휴대폰 사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무형재산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이 사건 체크리스트의 기여에 따른 가치평가금을 산정한 것인 점, 그런데 위 가치평가는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 아니고 체크리스트가 피해회사에서 가지는 가치만 평가한 것인 점, 이 사건 자료가 거래되거나 교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3억 4,000만 원이 위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경법위반(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피해회사에서 마케팅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경쟁사 직원에게 피해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 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안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후발 경쟁업체가 신속히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주 경쟁의 심화로 기존업체인 피해회사에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 기술정보들의 유출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개발·제조하는 피해회사에서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도, 레이아웃 도면파일, 공정 관련 설계자료집 등을 유출, 취득, 사용한 사안
 - 검사는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들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된 위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함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이중양도해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한 사례

-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기존의 아연합금보다 성능이 뛰어난 고강도 경량 아연-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합금을 개발하게 되자 피해회사를 배제한 채 성분분석 업무 등을 위탁받아 합금 개발에 참여했던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이후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안
-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함

나.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부정 사례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를 부정한 사례

-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제안으로 연구원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을 발명하였고, 경영기획팀장이던 피고인이 특허출원을 위임하면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인으로 작성하여 특허출원하도록 한 사안
-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

에 대표이사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배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³⁰²⁾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안서약서 등 작성 여부, 자료의 관리 상태, 업무상 자료 반출 필요성 유무, 반출 자료의 경쟁회사 등 제공·이용 여부, 업무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사실 부존재 확인 여부, 퇴사 후 자료 계속 보관 여부 등이 주로 고려된다.

가. 배임의 고의 인정 사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퇴사 이후에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입사한 후 파일들 중 일부를 해당 회사 컴퓨터에 옮겨놓은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피고인들은 의료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각각 DSC(Digital Scan Converter)팀 책임연구원, PA(Probe & AP&I)팀 연구원, 고객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동일 경쟁업체의 Hardware팀 전임연구원, 초음파 영상이미지 검사 전임연구원, 해외영업팀장으로 이직

30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파일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뒤 일부는 경쟁업체의 PC에 복사하여 사용한 사안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818 판결 2006노1818)은,

- 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재택근무 및 백업목적으로 수시로 자료를 보관하였고,
- ② 피고인 A는 퇴사 당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공용 PC에 옮겨 놓은 뒤 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인수인계서에 승인을 받아 퇴사하였으며,
- ③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다른 업체를 거쳐 퇴사일로부터 5개월 뒤 경쟁업체에 입사했고, 피고인 C 또한 퇴사한 뒤 다른 업체를 거쳐 퇴사일로부터 3개월 뒤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등 퇴사할 당시에 경쟁업체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④ 피고인 B는 자신의 거주지 PC에 자료를 옮겨 저장하지 않고 CD로만 보관하였으며,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경쟁업체에 국내연구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 ⑤ 피고인 C는 외부에서 피해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대리점이나 공장 출장 시 회사서버에 접속할 목적으로, 퇴사한 이후로는 피해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재택근무 및 백업을 위하여 자료를 집에 보관한 것을 넘어 개인의 이익 또는 앞으로 이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쟁업체를 위하여 그 자료를 유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어 무죄 선고함

○ 그러나,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입사 시 또는 재직 중에 서약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각 작성하여 퇴사 시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 피해회사는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용 자료의 사외 반출을 금지하면서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용인하였으나 피고인 B, C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 퇴사 시 사직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파일들의 반출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은 채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고,

- 피고인 A, C는 경쟁업체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의 PC에 옮겨 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향후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가사, 피고인 A의 경우 순전히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에 있어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퇴사 시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음)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반출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한 점, 퇴직 전 상당기간 창업을 준비한 점, 반출한 정보들의 피고인의 지위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유산균 제조업체인 피해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유산균 이 중코팅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기재된 서류사본이나 파일을 임의반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사용한 사안

○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및 직위,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 상당한 기간 창업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이용하여 회사를 경영하거나 제품 제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 이 사건 정보들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정보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됨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보안서약서 작성, 승인 없이 퇴사 무렵까지 개인용 외장하드 반입 및 영업파일 저장·반출, 외부 업체에 영업파일 중 일부 송부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LCD,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피해회사에서 개발그룹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그 일부를 외국으로 누설한 사안
- 피고인은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관련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퇴사 무렵까지 계속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용 외장하드를 회사 안으로 반입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으며,
 - 하청업체의 부사장에게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96개 파일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교부하였고,
 - 중국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 등은 중국을 방문하여 위 중국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저장한 개인용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음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됨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서약서 등 작성, 자료를 보관하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후 일부를 업무에 참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LCD 자동화 설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에서 설계2팀 차장, 구매팀 차장, 구매팀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 등을 사용한 사안
-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재직 중 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일체의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경쟁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 피고인 A는 퇴사 직전에 피해회사의 설계2팀 대리로 근무하던 제3자에게 설계2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제작도면 및 사양서 등 모든 자료를 공용노트북에 저장하여 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퇴사 이후에 위 제3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가 저장된 공용노트북을 전달받아 위 각 자료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계속 보관하였고,
 - 피고인 B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2, 3, 5 내지 12번 각 자료를 저장해 놓은 개인용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으며,
 - 피고인 C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 4, 13 내지 16번 각 자료를 저장해 놓은 개인용 USB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고,
 -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에 입사한 후 위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였음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각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위 각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퇴사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각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됨

나. 배임의 고의 부정 사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퇴사 후 개발한 프로그램이 위 자료와 유사하거나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 증권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경쟁업체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사안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해야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대부분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 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증권분석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축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5. 범행의 기수 및 공범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³⁰³⁾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된다.³⁰⁴⁾

업무상배임의 기수 이후 그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누설등죄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제3자를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303)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0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피해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인 휴대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뒤 경쟁업체에서 GSM 휴대폰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
-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시디롬과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이므로,
 - 피고인 A가 그중 시디롬을 피해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 이미 위 시디롬에 담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외부에 표출되고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는 그 이후에 피고인 A와 접촉하여 위 시디롬에 담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가 위 시디롬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음
- 디스켓 역시 이를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때에 그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디스켓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접촉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후에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의 집으로 반출하였지만,
 - 그 당시까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집에 보관중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C는 단순히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자료를 추가로 더 가지고 오는 방법이나 수단 등에 관하여 상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가 위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에 관한 한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른 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를 위 디스켓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차원 광학스캐너를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2011. 8. 5. 퇴사한 이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경쟁업체에 입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광학스캐너 소스코드를 가져가 사용하고(업무상배임 인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4. 피고인 A가 임의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 사용한 사안(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공범 여부)
-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나,
 -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고,
 - 퇴사한 회사직원에게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 A가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음

IV.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며, 특허등록 등을 통해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과 산업발전법이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범위,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입법목적 및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비밀유지대상이 되는 산업기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 (형식적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로 지정·고시한 기술일 것, ② (실질적 요건)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기관 고유의 산업기술일 것이다.

피해회사의 자료나 파일들 일체를 반출·사용한 경우 각 자료 또는 파일별로 실질적으로 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대상기관의 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출된 파일들 전체를 산업기술로 구성하여 기소된 경우, 법원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의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자료 또는 파일별로 무죄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국가핵심기술 인정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09노108 판결³⁰⁵⁾

‘드릴쉽(drillship)’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로 고시되지 않았으나 국가핵심기술에 고시된 기술에 포함되어 있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선박의 선급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인 드릴쉽 설계도면 등 드릴쉽 관련 파일을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순차 복사한 후 이를 반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함
-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또한 첨단제품 자체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별도로 정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해양특수선의 한 종류로 이 사건과 같은 드릴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첨단제품의 하나로 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문언상 드릴쉽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이 함께 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아울러 고려하여 본다면, 위 고시에서 ‘첨단제품’으로서 드릴쉽을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드릴쉽 설계기술이나 건조기술 등 드릴쉽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09호)’는 그 자체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위 고시에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고부가가치 선박해양 설계기술’이 명시되어 있고,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위 국가핵심기술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면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위 고부가가치 선박에는 드릴쉽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고시에서 정한 드릴쉽 설계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고시된 기술에 해당함

30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942 판결³⁰⁶⁾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부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면을 취득하는 것은 그 도면으로
가시화된 설계기술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을 보유한 피해회사에 핵심부품인 노즐, 플런저 시제품을 납품하던 피고인이 비밀 유지 및 삭제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노즐 등 도면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계속 보유함
 - 피고인은 연료분사장치 등 핵심장치를 부품별로 분해한 다음 노즐부품에 대해 육안 또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거나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그 도면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1심> 연료분사장치 등 핵심 장치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별로 분해한 다음 육안 또는 측정장치로 치수, 유량, 공차, 소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거나 측정할 수 있는 부품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엔진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조건을 달아 국가핵심기술로 확인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확인서에는 그러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특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엔진을 구성하는 개개 부품별로 분해하여 육안 또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코끼리를 해부해 놓고 해부되어 있는 부분이 코끼리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음)
- <항소심> 국가핵심기술 고시와 국가핵심기술 설명자료의 문언, 내용 등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500마력 이상의 디젤엔진’은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치수, 유량, 공차, 소재 및 연료노즐 쿨링 여부 등이 합쳐져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종합기술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 설계도면은 해당 부품의 기본성능에서부터 작업자의 작업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가시화된 것이므로 노즐, 플런저 부품 등의 설계도면을 취득하는 것은 그 도면으로 가시화된 설계기술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 같음

306) 대법원 2020. 2. 18. 2020도1332 상고취하로 확정.

나. 국가핵심기술 부정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64 판결³⁰⁷⁾

범죄일람표에 파일명을 적시하지 않고 ‘외 ~개’로만 통칭한 나머지 파일들과 파일명을 적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은 산업기술로 지정·고시된 AMOLED 공통층 재료기술 및 형광 호스트 재료기술(각 첨단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피해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산업기술 파일 5,130개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건네받음
 - 범죄일람표에 ‘20170220_H4TB_HTL(LHT211, 350, 3130, 3131)_B'(LBIL001)_E ML(BH06,BH29)_Buffer(AETL)_ETL(TTP225)_HTL 평가.ppt 외 764개’ 등과 같이 기재함
- <1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외 (다수)개’로 기재되어 있는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의 자료 파일들이 다수의 폴더로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고, 제목(파일명)란 기재에 파일명이 기재된 대표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 자료의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파일을 통칭하여 ‘(파일명) 외 (다수)개’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록 포괄일죄의 경우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만 놓고 보면 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일명이 적시된 파일 이외에 어떤 파일들이 ‘외 (다수)개’로 통칭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 나아가 파일명이 적시된 파일은 49개뿐인데 ‘외 (다수)개’로 통칭되어 피고인 등이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 파일은 총 5,130개에 이른다고 적시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 피해회사의 연구소 책임 임원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유출한 파일의

307)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로 해당 부분 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산업기술 파일로 지목하였는데, ‘외 (다수)개’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파일의 내용을 모두 열람한 것이 아니고 제목을 보고 추정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

-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까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항소심〉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등 9개 파일은 2015. 6. 12.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형광 호스트 재료 기술’을 소재부품 산업 중 디스플레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이와 개념상 구분되는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은 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광 호스트 재료 기술’에 해당하는 위 부분은 위 고시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 11번 파일은 각 패널회사별 어떠한 구조로 소자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재료와 두께 등의 정보로서 피해회사의 영업 등을 위해 패널회사의 정보를 수집한 자료에 불과할 뿐 피해회사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2013년 이후 연도별 휴대폰 모델과 소자 구조, 재료 정보(재료공급회사 및 재료별 증착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동일한 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포함)에 관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첨단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에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³⁰⁸⁾

가. 첨단기술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5노4804 판결³⁰⁹⁾

첨단기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시’ 외에 ‘인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 피해회사의 검색엔진 기술이 ‘인증’받기 전이라도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피해회사에서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표절 등 검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사안
- 변호인은 해당 검색 프로그램이 첨단기술로 ‘인증’받은 시점이 2012. 4. 18.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에는 첨단기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색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에 해당하여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인증’을 받아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 또한, 해당 검색 프로그램이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프로그램

30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309)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928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프로그램 중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에 관련된 기술만이 산업발전법 소정의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므로, 프로그램 중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과 무관한 부분은 산업발전법 소정의 첨단기술이 아니므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 위 프로그램은 ① KQL, ② 데몬, ③ 기능 모듈(약 120개)로 구성되고, 이 중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은 검색엔진에 해당하는 ① KQL 부분이므로 ② 데몬은 검색기능이 없어 의미기반 정보검색 기술이 아니어서 산업발전법 소정의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4562 판결³¹⁰⁾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산 기술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문건 등 자료를 유출하고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은나노와이어 정제과정을 시연하여 설명하여 유출한 사안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범죄일람표 7의 6, 9의 각 정보[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이하 위 합성일지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각 합성일지’라 한다]는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들이 2012. 8. 28. 및 2012. 11. 2. 작성한 은나노와이어 합성과 관련한 개발일지로서, 위 자료에는 은나노와이어 합성에 필요한 용매, 촉매제 등의 종류와 용량, 질산염의 질량, 촉매제 투입 온도와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들이 은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각 합성일지의 중요성에 관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연구원1은 원심 법정에서 ‘합성일지가 회사의 핵심기술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연구원2는 당심 법정에서 ‘합성일지에는 피해회사가 반복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실험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피해회사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성일지가 있어야 나노와이어를 제대로 합성할 수 있다’

31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77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연구원3은 당심에서 ‘합성일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합성일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수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합성일지가 은나노와이어를 만드는 핵심기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각 합성일지에는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가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 해당하고,
- 지식경제부 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위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분야의 현재 기술이 비록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산 기술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분야가 새로운 고시 시행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고시의 시행 시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726 판결³¹¹⁾

특허등록으로 산업기술(첨단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공개가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인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 기술’ 관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연구하여 획득한 데이터 파일인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USB에 임의로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퇴사 시 이를 유출함
- <1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31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94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위 장비 등에 적용된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정한 '고연색성 형광체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며,
 - 비록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 기술'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해당 업체에 알려져 있었더라도 같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가 위와 같은 자료를 입수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연구개발이나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항소심〉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 기술'은 피해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확인 신청을 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회사와 타 업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서, 합의서, 장비개발위탁계약서 등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가 LED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였음을 인정하고, 타 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 기술'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1942 판결³¹²⁾

드라이 에치(Dry Etch) 장비 제조기술에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평판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및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제조공장 설비 중 하나인 '드라이 에치' 설계 사항에 대한 내부보고서 파일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한 사안
-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2017. 11.경 수주하여 국내 대기업의 중국 광저우 공장에 공급할 드라이 에치 장비(8.5세대)의 설계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위 드라이 에치 장비의 컨셉, 구성도 중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스펙 등 피해회사의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첨단기술(첨단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5-101호로 지정) 중 디스플레이분야 AMOLED / AMOLED 공정장비 / Backplane 장비 중 '건식식각장비 기술'에 해당함

312) 수원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노3941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21. 1. 22. 자 2020도1676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나. 첨단기술 부정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³¹³⁾

범행 이후 첨단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포함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피해회사로부터 3D Lamination 기술을 이전받아 제조해오던 중 비밀유지계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 등에 유출함
- 첨단기술 고시는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을 첨단기술로 분류하면서 그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의 핵심기술개요가 ‘웨어러블 전자소자의 접합을 위한 기술’로 기재되어 있는바,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은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전자기기와 관련하여 연성재질로 제작된 전자부품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은 첨단기술 고시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233호로 폐지제정(2010. 12. 29. 시행)되면서 위 고시상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당시에는 3D Lamination 관련 기술이 개발되기 전이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1. 28. ‘실리콘 접합 PAD를 이용한 초정밀 접합기술(3D 진공 Lamination)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고시의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뿐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위 범위에 속하여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의 의미나 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해석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므로, 법원이 위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3D Lamination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소정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산업기술로 특정한 내용이 첨단기술 고시 중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31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5294 판결³¹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디스플레이 패널에 윈도우(커버글라스)를 부착시키는 공정에서 기존 시트지(양면테이프 역할) 대신 패널 위에 액상형태의 접착제 레진을 잉크처럼 도포한 뒤 그 위에 윈도우를 올려붙이는 ‘OCR 잉크젯 프린팅 기술’ 및 그 기술을 구현한 OCR 잉크젯 알파기를 보유한 피해회사에서 위 알파기 설비의 세부 구조도, 헤드 배치도, 스펙 등을 노트에 옮겨 적은 뒤 그 노트를 낱장으로 찢어 반출한 사안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8. 11. 피해회사의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 Lami 합착기술’은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2019-121호로 지정) 중 생산기반분야 주력 전자산업 생산기반/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 기술 중 ‘플렉시블/웨어러블/스트레처블 기반 전자 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함
-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OCR 잉크젯 알파기 설비에 관한 것으로 리지드 패널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POL 및 ACTIVE 도면은 리지드 패널에 한정되는데,
 - ① 리지드 패널은 플렉시블 패널과 다른 점,
 - ② 비록 OCR 잉크젯 라미 공법이 양자에 같이 적용되고 그 기초개념은 같더라도, 리지드 패널에 대한 위 공법은 완성되어 양산을 예정하고, 폴더블 패널 관련 공법은 현재도 계속 개발단계여서 위 공법이 양 패널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 ③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 Lami 합착기술’을 ‘플렉시블 OLED 패널’과 커버 부품을 합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나아가 위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중 소분류로 ‘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기술’에 해당하는데, 리지드 패널이 플렉시블 패널이나 연성패널이 아닌 점 등
- OCR 잉크젯 관련 자료에 기재된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OCR Lami 합착기술(생산기반분야 주력 전자산업 생산기반/디스플레이 생산기반/연성패널 모듈부품 생산기반 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314)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노1410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없으므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유죄

□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노2796 판결³¹⁵⁾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의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피해회사로부터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의 조성표, 배치표, 실험데이터 등을 이메일과 출력 등의 방법으로 반출한 사안
-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제조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비정질/결정질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기술’로 고시되었고, ‘OLED 봉지재료 Seal 재료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OLED 봉지재료 Seal 재료 기술’로 고시되었음
-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 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 제품에 고유한 정보로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이거나
 - ②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보인지, 즉 해당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그렇지 않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고유하고 필요불가결한 정보로서의 산업기술을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 일체(실험데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게 되면, 가별성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됨

315)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22도7718호로 상고심 계속 중임: 2024. 10. 14. 대법원 제278차 특별소송실 무연구회에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범위와 판단기준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대상 판결에 관한 발표를 한 바 있다.

- 첨단기술의 개발과정에서 실험대상이 된 잠정적인 조성비율, 실험데이터 등은 산업기술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신기술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2016. 1. 6.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삭제, 다목에 통합·운영)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우수한 보건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핵심 뿌리기술)

※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내지 자목에 의한 신기술 등 산업기술의 경우, 그 산업기술로 인정되려면 각 목에 규정한 법률에 따른 인증이나 지정, 고시된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목에 규정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인증 등을 받은 기술일 것은 물론, 각 법률에서 유효기간을 규정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내의 행위인지 여부, 각 법률에서 기술과 제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기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각 법률별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³¹⁶⁾

가. 산업기술 인정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1520 판결³¹⁷⁾

의료기기의 설계도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시켜 반출한 사안에서, 해당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신기술³¹⁸⁾로 인증받은 ‘정형용 교정베드의 척추 중심 트러스트 정렬기술’이 적용된 ‘산업기술’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노3457 판결³¹⁹⁾

열경화성 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관련 자료의 유출과 관련하여,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료 중 외주업체가 작성한 열경화성수지 도우징장비 견적서에 대해 견적서 작성 과정에 위 외주업체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장비가 피해회사의 소유인 이상 그에 수반되는 견적서 또한 피해회사에 귀속되고, 피해회사의 제품이 아닌 금형의 문제점을 기록한 자료에 대해 쿨러너시스템을 적용한 시험사출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열경화성소재용 금형 성형기술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어 산업기술로 인정한 사례

316)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술 유출·침해 범죄 법률·판례 해설(2022), 309.

317) 대법원 2021. 12. 30. 자 2021도15310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318) ‘신기술’과 ‘신기술적용제품’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는 달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신기술 인증’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별도의 신기술적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관한 자료도 그 기술의 핵심원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보건신기술에 해당함.

31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4126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나. 산업기술 부정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판결³²⁰⁾

신기술로 인증받은 위폐검출 방법에 관련된 자료 및 위 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하여 적용한 제품인 지폐계수기 관련 자료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폐검출 방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받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유효기간 연장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폐계수기’는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신기술적용제품’이 분명하고 산업기술의 ‘신기술’에는 ‘신기술적용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산업기술보호법 제2호 제1호 다.목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산업기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는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것을 ‘신기술’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으로 정의하여 명백히 그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문에서 ‘신기술’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해서는 ‘확인’이라고 하여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대상·절차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의 개념에 같은 조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러한 해석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형사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벌칙 및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32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732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

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침해의 행위 태양은, 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의 취득,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법 제14조 제1호), ②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유출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제3자 사용(법 제14조 제2호), ③ 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산업기술 취득 후 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의 사용·공개(법 제14조 제3호, 제4호), ④ 기타 금지행위(법 제14조 제5호 내지 제8호)가 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의 취득, 그 사용·공개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중처벌 규정인 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정에 기재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해당 산업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단순 취득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절취·기망·협박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하였다면 법 제14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³²¹⁾

(1)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 취득 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단6297 판결³²²⁾

광학신호 처리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여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 ‘Si기반 광수신 IC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전집적회로 기술’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파일 등을 다운받아 취득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단2698 판결³²³⁾

기술자료 접근, 취득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취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 취득을 인정한 사례

- 경쟁업체 이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제조기술 관련 파일들을 사내 이메일의 ‘내게쓰기’ 방식으로 첨부파일로 발송한 뒤 주거지에서 이를 다시 포털회사 이메일의 ‘내게쓰기’로 발송하여 취득한 사안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 이 사건 산업기술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후에도 피해회사의 점유

321)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술 유출·침해 범죄 법률·판례 해설(2022), 317.

322) 2019. 5. 13. 항소취하로 확정.

323) 2017. 9. 16. 확정.

가 배제되지 않고 피해회사도 여전히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기술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이지 경쟁회사로의 이직이라는 개인적이고도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 피해회사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산업기술의 점유·관리자인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기술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음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의 요소를 거의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절취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2)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 취득 부정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1320 판결³²⁴⁾

피해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보관·하역 설비’ 관련 파일을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료들은 피고인의 업무분야인 공정 설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피고인의 휴대용 컴퓨터 각 폴더에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용 파일과 함께 위 자료들이 함께 존재하며,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던 참고인도 피고인에게 위 자료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했는지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본건 자료들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판결³²⁵⁾

신기술로 인증받아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다파장 교차 주사를 이용한 위폐검출 방법’ 및 이를 실증적으로 구현한 ‘지폐계수기’ 관련 파일들을 퇴사하면서 제3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산업기술의 ‘취득’·‘유출’(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적용)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관련 자료는 이미 보유하고

32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5365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32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732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있었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였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등 목적으로 ‘유출’ 또는 유출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제3자에게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비밀유지의무자의 ‘취득’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③ ‘위폐검출 방법’의 신기술 유효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기술적용제품인 ‘지폐계수기’는 산업기술의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 선고한 사례

나. 부정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그 사용·공개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구성요건으로, 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③ 유출 또는 유출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제3자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목적 등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성립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³²⁶⁾

32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1) 부정한 목적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2680 판결³²⁷⁾

산업기술을 유출할 무렵 이직하려는 원자재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직 직후 원자재 공급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 초저온보냉재 등의 생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5. 3. 23. 원자재 공급업체에 이직하기 전인 '14. 8. 18. 피해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인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관련 자료인 'C-3 Project 진행사항보고' 등 파일을 '논문준비'로 압축하여 피고인의 포털사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출한 사안
- 피고인은 피해회사 메일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회사 자료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또는 석사논문 준비 작성을 위해 피해회사 자료를 전송하였다고 변소
- 그러나, 피고인이 '14. 2.경부터 동종업체의 폴리우레탄 단열재 분야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는 등 동종 업체로 이직을 시도하였고, 피해회사의 초저온보냉재 관련 자료들을 유출할 무렵 원자재 공급업체의 인사 담당자 등과 지속적으로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직한 직후 '15. 3. 23. 해당 원자재 공급업체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피해회사의 초저온 보냉재 개발 관련 자료들을 피고인의 이직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퇴직 후 관련 업체로 이직하면서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개인 메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논문 준비' 변소에 대해, 피해회사의 상무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석사논문 작성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초저온보냉재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논문에 표현해야 할 데이터나 수치 등은 최신버전이 아닌 이미 연구가 끝난 구버전(C1)에 관한 자료만을 참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14. 9. ~10.경 위 석사논문 초안 등에 관하여 상무로부터 논문의 내용에 관한 검수를 받았는데,
 - 피해회사가 해당 논문을 검수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상무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14. 8. 18. 당시 개발 시작 단계에 있었던 C3 관련 자료들을 논문에 반영한다는 점이

327) 대법원 2017. 2. 10. 자 2016도21509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나, 주장과 같은 논문 작성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달리 연구소장의 반출승인 받지 않은 채 피해 회사의 문서보안시스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도록 문서 폴더의 제목을 바꾸어 개인 메일로 유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 피고인은 '14. 2.경부터 전직을 시도하였는데 이 부분 유출 행위 무렵인 '14. 8. 5. 동종업체 1의 후반기 경력직 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14. 8. 14.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14. 10. 20.경 동종업체 2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14. 5.경 이후 원자재 공급업체 직원 등과 빈번한 통화를 하였고, '14. 9. 24. 무렵에도 원자재 공급업체와 전직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타나며, 위 동종업체1, 동종업체 2는 초저온보냉재 품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을 취급하는 회사들이고, 원자재 공급업체는 피해회사에 초저온보냉재 원자재를 공급하는 화학원료 생산업체로서, 비록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는 아니지만 피해회사의 원자재 배합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스스로 보냉재를 생산하거나 피해회사의 배합비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들로부터 원자재 공급을 수주함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음

□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고합289 판결³²⁸⁾

중국 동종업체에 이직하는 과정 또는 퇴직 후 중국 동종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인정한 사례

- 피고인은 산업기술로 지정·고시된 AMOLED 공통층 재료기술 및 형광 호스트 재료기술(각 첨단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피해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산업기술 파일들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건네받음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한 이익을 부인함
- 피해회사의 보안규정에는, 퇴직자에 대하여 그룹의 장은 PC, 정보저장매체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이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그룹은 퇴직자 PC에 대한 반납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퇴직 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제품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

328)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명시적인 보안규정과 비밀유지서약 등을 어기고 자신이 소유하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저장하여 이를 외부로 반출하였음

- 피고인이 '18. 2. 23. 피해회사에 퇴사예정일을 '18. 3. 31.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18. 3. 19.자 퇴직각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퇴직각서에 '재직 기간 중 습득한 영업비밀 및 보안사항을 재직 중과 퇴직 후 3년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나 퇴직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피해회사의 보안시스템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곧바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었고,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 서버에 있는 파일을 알집으로 압축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편법으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이와 같은 방법을 다른 직원에게 가르쳐주고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보안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음
- 피고인이 저장한 피해회사의 자료 파일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피해회사의 모든 고객사 관련 자료, 피해회사가 개발 중이거나 양산 중인 모든 재료의 물성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중국으로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특히 중국 동종업체와는 직원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이직 협상을 진행하였음
-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하는 과정 또는 퇴직 후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됨

□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942 판결³²⁹⁾

시제품 납품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자료를 자료 폐기 통보 이후에도 보관하면서 그와 동일한 부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인정한 사례

329) 대법원 2020. 2. 18. 2020도1332 상고취하로 확정.

- 피고인(선박엔진의 노즐과 플런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이 피해회사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인 엔진(‘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에 해당)의 핵심부품인 노즐 등에 대한 시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도표 등 자료를 받아 시제품을 생산한 다음 계약종료로 피해회사로부터 기술자료 삭제요청을 받아 폐기 취지 통지를 하고도 위 기술자료를 계속 보유한 사안
- 피고인은 ‘13. 7.경 피해회사의 노즐, 플러저 부품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통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16. 5. 17.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피고인 회사의 공유 서버 컴퓨터, 직원의 컴퓨터 등에 이 사건 도면 파일을 보관하였으며,
 - 피해회사의 도면에서 피해회사의 상호, 도면번호 등 관련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보관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작성된 노즐 부품 도면에는 치수, 분공크기, 공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 회사는 ‘12. 1.경부터 ‘15. 1.경까지 피해회사의 노즐과 동일한 부품을 임의로 생산한 후 피해회사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증받은 번호를 타각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과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2) 부정한 목적 부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777 판결³³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산업기술 자료를 반출할 것이라면 곧바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시 사례

- 피해회사의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 기술’의 내용이 담긴 전체 공정 흐름도 등 47개 자료를 유출한 사안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공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

33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727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까지 헤드헌터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헤드헌터 직원들의 이메일에서도 특별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헤드헌터 또는 경쟁업체와 이직을 위한 접촉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PC나 메모에서도 이력서 등 이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보안규칙을 위반하여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반출하거나 자료반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품질팀장으로서 대외비자료 반출의 승인권자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대외비자료 반출을 승인한 다음 보안부서의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였음
-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PC에 보관하고 있거나 이메일로 전달받은 자료를 자신이 직접 출력하거나 비서에게 지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물 하단에 출력일자, 출력장소, 출력자가 표시되고, 피해회사의 시스템에도 위 출력정보와 함께 출력물의 첫 장이 이미지로 보관되어 유출 경위가 비교적 쉽게 확인되며,
 - 피고인은 '16. 7. 30. 차량 정밀검색에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회수당한 이후로도, '16. 8. 5.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까지 서재의 책상 위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피해회사에서 출력한 자료를 그대로 쌓아두었고,
 - 한편, 피고인은 집에서도 임원에게 제공되는 노트북PC으로 RBS에 접속해서 사내 메일 및 첨부파일을 피해회사 내에서와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고, RBS 접속화면을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하여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 자료반출기록이 남지 않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반출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던 점 등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료반출방법이나 반출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보안감시를 피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반출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반출한 것이라면, 비록 피해 회사의 보안규칙상 학습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반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더라도 그 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며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6장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제1절 기술 유출 범죄 심리의 어려움



I. 기술의 이해도 문제

기술 유출 범죄의 영업비밀성 판단 기준인 비공지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은 유출 기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소송지휘가 어렵다.

유출 기술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성이 부정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형사공판 사건 제1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무죄율이 29.8%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3.1%보다 월등하게 높다.

[표 19]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제1심 처리현황

연도	처리사건	자유형		재산형	무죄	기타 ³³¹⁾
		유기	집행유예			
총계 (비중)	97 (100.0%)	9 (9.2%)	36 (37.1%)	7 (7.2%)	29 (29.8%)	16 (16.4%)
2022년	20	6	5	0	1	8
2021년	33	2	9	2	20	0
2020년	14	0	10	1	3	0
2019년	15	1	8	3	1	2
2018년	15	0	4	1	4	6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2019년~2023년)

특히,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대부분 기술적 의미 파악에 한계가 있는 단독 관할의 사건인데, 일부 법원에서 지재 전담 형사단독 재판부를 두고 있더라도 지재 전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331) 공소기각 결정 등.

화된 재판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 역시 국가핵심기술 내지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검사가 직관하고,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은 공판검사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술 및 증거 설명에 한계가 존재한다.

II. 공판절차의 장기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증거 인부 과정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전문성을 이유로 한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 정보의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다 투기 위한 방대한 기술자료 제출 및 귀속 관련 문제제기로 인하여 심리의 장기화가 초래된다.³³²⁾ 앞서 기술 유출 범죄의 사건 처리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6개월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래와 같이 기술 유출 사건 심리에 관하여 재판의 장기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이외의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은 단독관할로 현실적으로 집중심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6개월은 너무 부족하다. 재정합의 결정과 전문가의 보조인력 활용, 공판준비기일의 충실화 등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출 기술의 기술적 의미 파악에 한계가 있는 일반 형사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며 대부분 단독 사건으로, 심리가 장기화 되고 있다. 기술심리관 등 재판 관련 전문인력의 보충과 더불어 전담 혹은 전문재판부 지정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 대검찰청 부장검사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기술 유출 범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332) 정창원, 특허청·국회 이학영 의원실·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기술유출 범죄 관련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한계 발표문, 14.

단독판사가 재판을 할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데,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집중심리를 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방법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큰데, 국외 유출 사건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판사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의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 또한, 쟁점과 관련 있는 증거만 부동의하고 증인 신청하도록 소송지휘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신속히 증거열람을 마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소송지휘를 해야 한다.

○ 법무법인 Y 변호사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심리의 지연·장기화가 문제된다. 이는 재판부의 기술이해도로 인한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조사관 등의 전문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단독사건이라도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의 집중적인 심리를 해야 한다.

○ 법무법인 S 변호사

기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데, 행위 시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공판 기일 종결 당시 기술이 갖는 매력과 가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경우 최대한 공판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술 가치의 시간적 감소를 의도하고,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을 초과시켜 불구속 재판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판이 지연되는데, 기술 유출 범죄 전문재판부의 신설 및 기술전문가의 심리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재판부의 기술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S전자 변호사

기술 유출 범죄 심리에 있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부 배당 및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고, 전문재판부 설치의 확대, 관할집중 도입, 전문심리위원 제도, 기술조사관 제도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허청 서기관

지식재산권 소송의 경우 민사는 관할집중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형사를 그러한 체계가 미비하여 전문적인 기술적 쟁점에 관한 심리가 지연되는 것 같다. 관할집중과 전문가 활용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절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

I. 기술 유출 범죄 담당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

1. 기술 유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전국 법원 중 형사재판부에 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지재” 전담을 설치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부 2개, 형사단독 6개), 수원지방법원(형사단독 4개), 대전지방법원(형사단독 1개) 세 곳에 불과하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수가 다른 법원들에 비하여 많기는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세 곳 이외에도 상당한 건수가 접수되는 법원들이 존재한다. 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같이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지원에서는 지재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전담 재판부 법관연수 프로그램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표 20] 최근 10년간 법원별 부정경쟁방지법 접수 현황³³³⁾

(단위: 명)

연도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의정 부	고양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원주	청주	충주	대전	서산	공주
2014	33				2	1	2	4	2	12	2			3	4				3		
2015	58	3	1		1	1	9	4	6	36	3		1	1	4		3		4		1
2016	19	2	17			2					2		1	2				5			
2017	7	2	2		2	2		9		8	6			3	8		2		7	1	
2018	22	1	1	2	1		3	7	6	30	4		3				1			5	
2019	21		5	1		2	1	1	2	13	6		5	7	1				6		
2020	19	2	7	6			2	11	2	44			3	5			2		2		
2021	33	3	1		3	7	1	3		20	4	2	1			1	2		14		
2022	20		2	1	3	1		3	1	32									8		
2023	8	4	2		5	2	1	4	1	46	2		3	2	1		8	2	17		
합계	240	17	38	10	17	18	19	46	20	241	29	2	17	23	18	1	18	7	61	6	1

연도	천안	대구	김천	영덕	포항	대구 서부	부산	부산 동부	부산 서부	창원	진주	통영	밀양	마산	울산	광주	목포	순천	군산	제주	계
2014	2						10			7					3	1		7			98
2015	4	2				4				5					7				3		161
2016	1	2	2			1	14			8			1		8	2		1			90
2017	8	2				5	3	4		1						2					84
2018	8	2	3				1		2	16											118
2019	11		4			6			3	12				3	3	4					117
2020	11	2	2		3	5	4			2					1	3				2	140
2021	1	3				11	7	1	6	2		1			1		1	1		1	131
2022			2	1		3			2	6				4	5	4				2	100
2023	5		1		2		8			4		1			1	1	1				132
합계	51	13	14	1	5	35	47	5	13	63	0	2	1	7	29	17	2	9	3	5	1171

2. 법관연수 프로그램의 개설

2025. 2.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 중 지재 전담 형사재판 연수 프로그램은 개설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³⁴⁾

333)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대검찰청 제공.

334) 한편,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권소송” 법관연수는 매년 개설되고 있는데, 위 과정에

기술 유출 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변경이 있는 초기에 전문적 지식과 정보 및 경험 등을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관연수 프로그램의 일환 또는 전문분야연구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과의 협의 및 토론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전문가의 활용

1. 기술조사관

가. 현황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 심리가 필요한 법원에 기술조사관을 두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조사관이 있다.³³⁵⁾ 2024. 8. 현재 기술조사관은 모두 25명인데, 그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허청 고용휴직(국가기관) 및 법원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특허청 소속 서기관 6명(전기·전자, 약무, 기계, 전기, 기계, 화공 각 1명)이 대법원에, 2명(화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 각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배치되어 있다.³³⁶⁾ 또한 법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여러 경력을 가진 기술조사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명(전기·전자 3명, 기계 2명, 건축, 약학, 화학, 바이오·의약 각 1명), 특허법원에 8명(통신, 화학 2명, 약품 2명, 기계 2명, 전기 1명)이 각 배치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기술조사관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과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형사사건도 검토 가능하다.³³⁷⁾ 그

서도 기술 유출범죄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좌가 개설된 적은 없다(주요 대법원 판례 소개 강좌에 일부 형사 판례가 포함된 적은 있음).

335)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5.

336)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79.

33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술조사관은 사건 초기와 심리 중에는 '기술검토서' 또는 '기술검토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을 전후해 판결 선고 전까지 그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의견서'라는 이름의 서면을 제출한다고 한다[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6].

러나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된 기술조사관의 형사사건 검토 건수는 9건 정도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³³⁸⁾

나. 절차

일선 법원에서 유일하게 기술조사관이 배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사건 검토에 관한 요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부[재판장 또는 주심판사]의 기술조사관 배정요청 - 재판부는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이하 '2수석부장')에게 기술조사관 배정요청을 할 수 있음
↓ 2	대표조사가관이 사건 분야를 분류하여 각 분야 배정담당 기술조사관에게 배정 - 재판부의 의견 반영
↓ 3	배정담당 기술조사관이 배정원칙 및 해당 분야 내 협의를 통해 기술조사관 추천
↓ 4	대표조사가관이 기술조사관 배정에 대하여 2수석부장에게 보고
↓ 5	2수석부장의 기술조사관 배정 승인
↓ 6	대표조사가관이 기술조사관 배정 요청한 재판부에 배정 사실 고지

배정된 기술조사관은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술에 관하여 기술검토서를 작성한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술검토서는 기술 쟁점에 관하여만 기술되고, 재판부 참고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공판기록에 편철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재판에서의 기술조사관 활용은 사건의 배당 초기에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증진의 방안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38) 202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 회신 내용으로, 형사사건 검토 현황이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다. 검토

형사 사건의 심리에서 기술조사관의 적극적인 활용은 재판부의 기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조사관의 배치가 되어 있는 법원은 사실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기술조사관의 원칙적인 업무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사건이므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검토 요청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인원으로는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히려 사건 지연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조사관 배치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가.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³³⁹⁾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기술 유출 범죄의 기술이해도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33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434.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³⁴⁰⁾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기술조사관과 함께, 또는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³⁴¹⁾

340)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서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보석·구속집행정지 등 인신구속 관련 절차와 그 밖에 치료감호 청구사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약물치료명령 청구사건 등 특수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활용 매뉴얼(2014), 20.

341)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36.

나. 다른 제도와의 구별

(1) 감정인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형사소송에 조력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감정제도에 유사점이 존재하나 감정 제도는 감정인이 공판기일에서 선서를 해야 하고 감정인의 판단결과가 원칙적으로 증거자료가 됨에 반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을 통하여 간편하게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증거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³⁴²⁾

(2) 기술심리관

[표 21] 전문심리위원 · 기술심리관 비교³⁴³⁾

	기술심리관(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전문심리위원
의의	특허법원에 배치되어 기술적 · 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관을 보조함	
유사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 가능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 가능
	심리에 참여한 경우 조서에 성명과 소송관계인에게 한 질문의 취지 기재	기일에 참여한 경우 조서에 성명과 소송관계인에게 한 질문의 취지를 기재
차이점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파견된 공무원	공무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계 소송의 심리에 참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소송 절차에 참여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진술 가능	재판의 합의에 참여 불가

다. 전문심리위원 활용의 구체적 절차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34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1)(2022), 434.

343)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활용 매뉴얼(2014), 19.

를 정하여 명단을 관리한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 제1항). 현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년 단위로 ‘정기등록’이 실시되는데, 재판부(법원)가 법원행정처에 후보자 ‘수시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후보자로 추가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본 기술조사관의 경우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2024. 8. 현재 기술조사관 25명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기술조사관 5명이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023. 3.에는 재판부의 추천에 따라 기술조사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데(앞서 본 ‘수시등록’), 이 경우 기술조사관은 공무원이므로 소속 기관장의 검직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기술조사관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에 배치된 기술심리관의 경우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전문심리위원 등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⁴⁴⁾

(2)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및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후보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2007-2, 이하 ‘전문심리위원예규’라 한다) 제4조 제1항]. 지정은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공판기일 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³⁴⁵⁾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의견청취서 등에 의견청취 방법과 의견의 취지를 적는 방식 또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의견청취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의견청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심리위원예규 제4조 제2항).

344) 2024. 8. 기준으로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40명 중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된 인원은 5명(화학 2명, 전기·전자, 기계, 건축 각 1명)에 불과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4. 8. 8. 회신.

34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435.

○ ○ 지 방 법 원

제 ○ 형사부

의견청취 보고서

사 건 20 고

피 고 인

의견 청취 대상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의견을 표시한 사람 검사(피고인)

의견 청취 연월일시 20 . . .

의견 청취 방법 (예시)전화통화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 안에 √ 표시)

☐ 지정에 동의함 ☐ 지정에 동의하지 않음 ☐ 의견 없음

위와 같이 검사(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 ○

(3) 설명, 의견 요구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이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다.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설명 등 요구서를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전문

심리위원예규 제5조 제2항). 이때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등에 관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전문심리위원예규 제5조 제1항), 기일 외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전문심리위원예규 제5조 제3항). 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한 때에도 당사자에게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0).

○ ○ 지 방 법 원

제 ○ 형사부

설명 등 요구서

사 건 20 고
수 신 전문심리위원 ○ ○ ○ 귀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20 . . . 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사항

1. 이 사건에서 ... 에 관한 ... 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
2. ...

20 . . .

재판장 판사 ○ ○ ○

◇ 유의 사항 ◇

* 위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은 '설명(의견)서' 양식[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download)하실 수 있습니다]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의견 진술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2항). 재판장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도 있다.³⁴⁶⁾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통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9).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³⁴⁷⁾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

(5)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의견의 활용

원칙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으나 실무상 당사자 일방이 전문심리위원 작성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³⁴⁸⁾

라. 당사자 참여 기회 보장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

346)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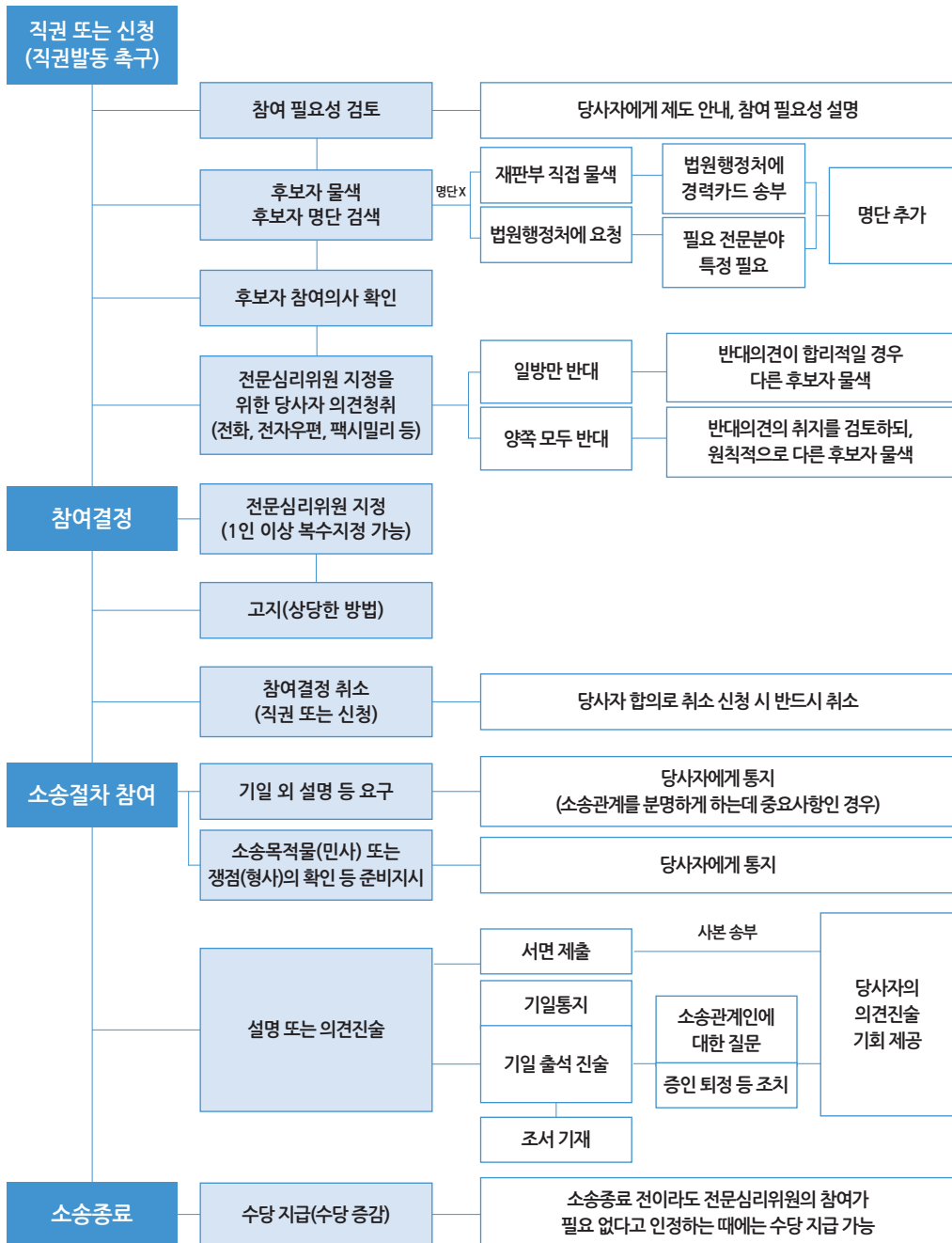
34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436.

34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437.

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회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³⁴⁹⁾

34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그림 8]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흐름도³⁵⁰⁾



350)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활용 매뉴얼(2014), 9.

III.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

1. 서론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절차이자, 집중심리를 위하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³⁵¹⁾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정리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재판부의 사건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앞서 재판 현황에 관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이 많고, 심리의 장기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에서 심리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심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351) 노태약 편, 주석 형사소송법(II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29(김정훈 집필부분); 형사소송절차실무, 사법연수원(2016), 45.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2. 공판준비절차의 진행³⁵²⁾

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재판부 결정으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공판준비명령을 통하여 검사에게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개요와 기술적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측에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기술적 쟁점에 관한 의견, 주장사항을 정리해오도록 하여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를 목표로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정리와 증거신청과 채부, 향후 심리계획 마련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적어도 한 달 내 2~3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는 의견 및 주장 정리에 필수적이므로 제1회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기록의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의 진행은 형해화 될 수 있다.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에 쫓기다 보면 준비기일의 진행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재판 장기화 원인 중 하나로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이 꼽히는데, 2025년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전자소송의 적용 시점 이전 기소 사건에 관하여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은 검찰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측의 재판지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현실이므로 피고인 측에도 제1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통한 기록 열람·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공판준비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검사에게는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지체 없이 협조할 것을 명하고, 만일 피고인 측이 공소제기 이후 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제1회 공판준비기일까지 열람·복사가 이루

352)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방안—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법원행정처 보고용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2024. 8.), 99-102, 131-135: 위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심리모델을 기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어지지 않을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실권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³⁾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공판준비명령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형사부

공판준비명령

사건 2024고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1. 증거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협조 요청

가. 공판준비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측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는 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피고인 측에서 공소제기 이후 검찰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음에도 검사가 본 공판준비명령에 불응하여 열람·복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의한 기록 열람·복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향후 검사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353) 검사의 열람·등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한 추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일부 증거의 열람·등사 제한을 요청하고, 검사가 이에 따라 제한 증거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명령이나 기록의 물리적 복제 방지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만을 강조하며 검사의 열람·등사를 강제할 경우, 피해자는 공판에서 추가 기술 유출을 걱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이전에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안 USB 등을 통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우려를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절차 촉진을 위한 검사의 열람·등사 절차 강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정창원,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자료집 토론문(2024. 12. 18.), 82.

나. 제1회 공판준비기일(사건파악 및 쟁점정리)

1	검사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설명 - 검사로 하여금 준비해온 PPT를 활용하여 사건의 내용과 기술적 쟁점 등 주된 쟁점을 설명하도록 함
↓ 2	피고인 측의 입장과 주장 정리 -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제출된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청취
↓ 3	제2회 공판준비기일 안내 -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의 증거신청과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검사와 피고인 측에 송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술적 쟁점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의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부는 기술조사관에게 기술검토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술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공판준비명령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공판준비명령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형사부

공판준비명령

사건 2024고합○○○

이 사건의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2024. ○. ○○. 10:00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사의 증거신청과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검사는 2024. ○. ○○.까지 [증거목록] 외 첨부한 양식에 공소사실별로 직접증거와 간접증

거를 중요도 순으로 구분하여 적고, 각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측에게]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제3항에 의거 피고인 측에게 송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당 증거목록 양식을 활용해 제2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법원에 증거인부 사항이 기재된 [증거의견서]와 별도로 검사가 증거목록과 별도로 제출하는 공소사실별 증거관계 표에 부동의 취지(Ex. 진술탄핵필요, 구체적 진술 확인요, 원진술과 상이, 공소사실과 무관 등)를 적고, 반대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중/하로 구분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증거신청 및 채부, 입증계획 청취)

1	증거신청, 증거의견 및 입증계획 청취 -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증거목록을 제출받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재판부가 처음 접하는 증거목록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대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제1회 공판준비절차 이후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제2회 공판준비기일 전 검사와 피고인 측으로 하여금 증거신청에 갈음한 증거목록 제출 및 증거의견이 담긴 서면을 미리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
↓ 2	증거채부 -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을 미리 검토하여 당연히 증거신청을 기각할 서증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기각 - 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 곧바로 증인신청에 대한 채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후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그 채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3	제3회 공판준비기일 안내 -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관한 채부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협의하는 절차임을 미리 고지함

특히,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 증인의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그 증인이 어느 쟁점에 관련된 증인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 쟁점별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로, 증인신청 단계에서 관련 쟁점을 명시하도록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제3회 공판준비기일(증인채택 및 향후 재판일정 협의)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쌍방이 신청한 증인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하고, 향후 재판일정 및 증인신문기일의 일괄지정을 하도록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신문기일은 쟁점별 진행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

1. 쟁점별 증거조사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는 한 번의 출석기일에 여러 쟁점에 관한 신문과 답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회사의 엔지니어 등 기술 관련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하여 한꺼번에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증거서류별로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증인에 대한 한 번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쟁점에 관해 진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해당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재판부 기술이해도나 실체 파악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증거조사를 쟁점별로 진행할 경우 한 명의 증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번 출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통상 피해회사 기술 관련 참고인은 매 기일 출석하여 방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든 해당 기일에서의 방어권 행사 범위가 명확해지므로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든 하나의 쟁점이 정리되고 새로운 쟁점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는 것이 진행 과정에서 사건을 장악하기에 유리하고, 결심 이후 공판기록의 검토 및 실체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심에서 쟁점별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상소심에서의 사건 파악 및 진행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진술서는 원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제3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경우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바, 제315조의 서류들은 원래 진술서에 해당하지만 특히 신용성이 높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³⁵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위 신청서를 단순한 진술서로 보아 부동의할 경우 그 신청서 작성 명의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다음, “국가핵심기술로서 지정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맞다.”라는 증언을 듣고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신청서 작성인은 기술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작성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변호인은 다투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에 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증인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는 대답이 반복되는 법정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한 신청서와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 등에 관하여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아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354) 노태악 편, 주석 형사소송법(II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637(송민경 집필 부분).

성된 문서”로서 증거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 유출 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9]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1.>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 판 정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인에게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V. 재정합의 결정 등을 통한 합의부에서의 심리

1. 기술 유출 범죄의 사물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이 형사재판부에 ‘지재’ 전담을 두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지재 전담 형사재판부는 주로 단독 재판부로 운영되는데, 지재 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2]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전담 분류

법률명	사물관할	전담
부정경쟁방지법	단독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산업기술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기술 유출 범죄 중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행위만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다.

2. 재정합의 결정의 필요성

지재 전담 형사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2024. 8. 기준으로 단독 사물관할인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재정합의 결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형사단독 사건에 관한 재정합의 결정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공판절차의 장기화 문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들과 검사 및 변호사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모두 ‘사물관할이 단독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나 피고인의 수를 고려할 때 단독 재판부에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을 담당할 경우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고, 특히 구속사건이라면 구속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한다면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인데, 앞서 살펴본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공판기일 횟수, 증인의 수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만이라도 단독 사물관할일 경우에 배당 단계에서 재정합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절 제도적 개선방안



I. 관할집중 논의

1. 서론

현재 우리 법원에는 기술 유출 범죄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전담 형사단독 재판부를 두고는 있으나 위 재판부는 지재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아니고 일반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문재판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성이 부족한 법원에서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법원간 판결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 관한 관할집중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 현황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과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과 산업 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³⁵⁵⁾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³⁵⁶⁾으로 한정)로 하기 위하여 2016. 1. 1.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³⁵⁷⁾ 한편,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개정을 통하여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종전부터 이미 특허법원이 전담해왔던 심결취소소송과는 달리 특허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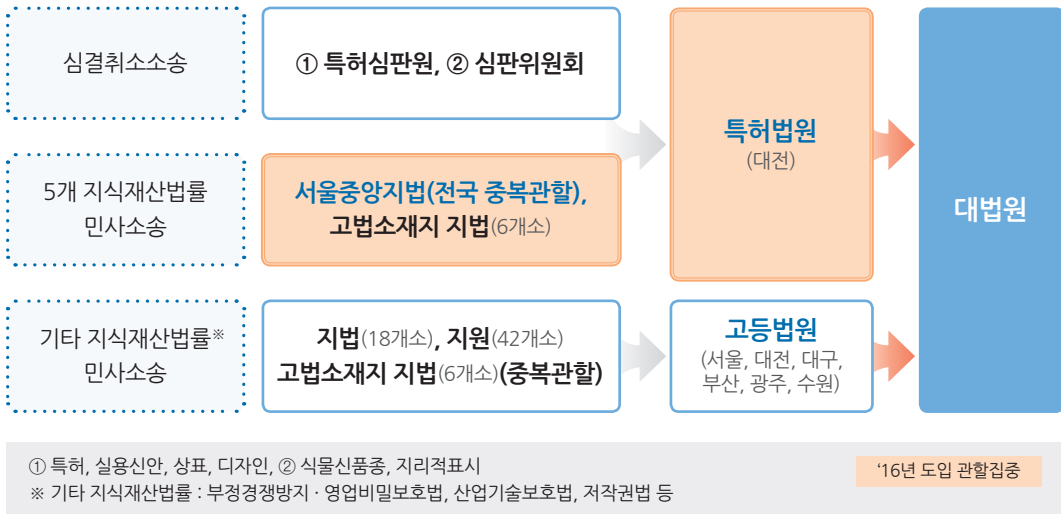
355) 개정 당시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고등법원 5곳이었으나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현재는 6곳이다.

356) 다른 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문재판부들이 왕성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고, 그 처리비중이 한국 전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박준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실무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2019. 9.), 362.

357)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민사소송법 개정이유.

소송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나뉘어 심리되고 있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모두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일원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³⁵⁸⁾

[표 23] 지식재산권소송 관할집중 현황



3. 형사소송의 관할집중 논의

지재 전담 형사소송의 사물관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만이 합의부 관할이고,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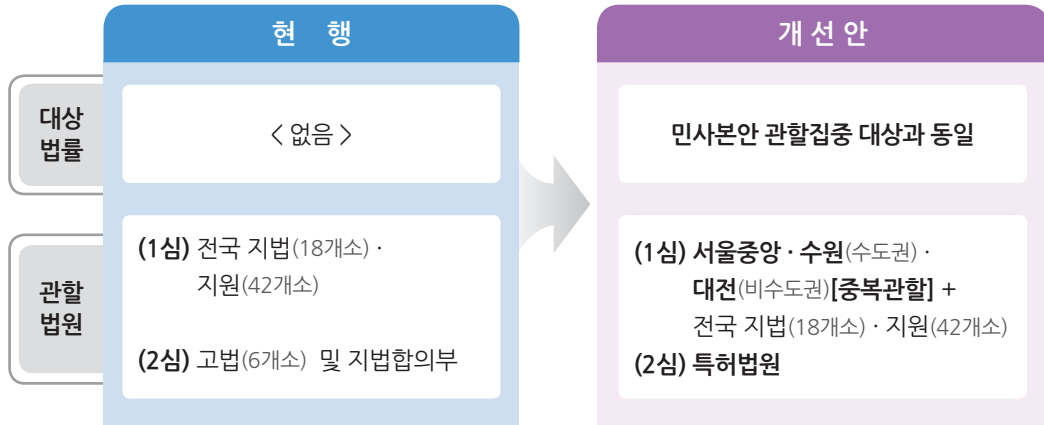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기술이해도의 문제, 기술전문인력 활용의 제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관할집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³⁵⁹⁾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토지관할에 따른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심의 경우 기존의 토

358) 박준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실무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2019. 9.), 363.

359)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주무 관청으로, 2022~2026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지재권 형사소송의 관할집중을 선정하였고, 대통령실 주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 역시 2024. 5. 29. 상반기 전체회의에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관할집중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관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³⁶⁰⁾ 수원지방법원³⁶¹⁾에 병존적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³⁶²⁾

[표 24] 지식재산권 형사소송 관할집중안



또한 형사사건의 관할집중을 위한 규정이 마련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관할집중 법원에서 토지관할이 있는 각급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³⁶³⁾

3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제 보고서(2023. 12.), 58-59: 대전지방법검찰청은 2015. 11. 특허범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특허범죄 등 지재 사건을 이송·자문의뢰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2018. 2. 이공계 전공자·변리사 자격자 등 경력검사와 특허청 파견 수사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61) 수원지방법검찰청은 그 관할지역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SK하이닉스,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2017. 12.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었고, 산업기술·영업비밀 범죄 전담수사부를 설치하여 엔지니어, 변리사 출신 등 전문 경력을 가진 검사와 전문적인 인력인 특허청 소속 서기관 2명이 기술수사자문관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편,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간 업무협약의 체결로 지식재산 분쟁 조정 법원으로 지정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두 곳이었다가, 최근 2024. 12. 24. 대전지방법원이 추가되었다. 연합뉴스, “지식재산 분쟁 조정 법원, 서울·수원 이어 대전으로 확대”, <http://yna.co.kr/view/AKR20241224116800063> (2025. 1. 6. 확인).

362)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4. 12. 지식재산권소송 관할집중 확대방안을 의결하면서, 지재권 형사사건 관할집중 추진방향에 관하여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지방법원(비수도권)을 중복 관할로 인정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36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제 보고서(2023. 12.), 70.

[표 25] 관할집중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³⁶⁴⁾

현 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토지관할) 다음 각 호 위반 사건(이하 “지식재산권 등 사건”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 대전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1. 특허법 제12장 2. 실용신안법 제10장 3. 상표법 제12장 4. 디자인보호법 제11장 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장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7장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③ (신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③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신설)	④ 제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사건을 관

364)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4. 12.), 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형사소송 1심의 병존적 중복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2곳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 유출 범죄를 고려할 때 수원지방법원까지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 행	개정안
	할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II. 전문가 배치의 확대

1. 기술조사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선 법원에 기술조사관이 배치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일하다. 기술조사관의 기술검토는 재판부의 기술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조사관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인원을 배치하여 다른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기술조사관을 활용하는 방안,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접수가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기술조사관을 신규배치하는 방안, ③ 수원지방법원에는 기술조사관을 신규배치하고, 대전지방법원은 특허법원에 배치된 기술조사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조사관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른 법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형사기록 송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5년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 기술조사관 면담 결과, 1년에 검토하는 기술 유출 범죄사건 50건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적으로 3명 내지 4명의 충원이 필요하고, 현재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 기술조사관을 새로 배치할 경우라면 최소한 전자와 화학 분야 각 1명씩 2명의 기술조사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기술심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 법원의 역량강화 방안으로서 현행 지식재산 심결취소소송에만 참여하고 있는 기술심리관의 참여범위를 지식재산 민사·형사·

가치분소송까지 확대하고, 채용법원을 현행 특허법원에서 지방법원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는데,³⁶⁵⁾ 기술 유출 범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앞서 본 기술조사관의 확대 배치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술심리관의 확대 배치 역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표 26] 기술심리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 —————.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 —————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조의2·제260조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III. 피해자 절차 참여권 제고

1.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개관

가. 서론

우리의 현행 형사절차는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와 가해자인 피고인 사이에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대결하고, 법원은 심판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당사자소송구조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형사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의 자격으로서만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소극적인 지위에

365)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4. 12.), 19.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피해자 지위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꾸준한 비판이 있어왔는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써 피해자 등의 진술권(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권(제294조의4) 등이 도입되었고,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관련 규정

(1)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공개조치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체포, 구속, 보석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 배상 등 고려

제70조(구속의 사유)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5조(필요적 보석)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압수물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피해자 고소권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6) 피해자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7) 피해자진술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권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절차 참여 관련 문제점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 있어 유출 대상 정보의 내용 및 가치 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94조의2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증인신문 방식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이라는 제한된 방식만으로는 영업비밀 내지 산업기술이라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³⁶⁶⁾ 그나마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심리에 있어 피해회사의 직원 등에 관한 증인 신문이 필수적인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매우 크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대리인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어서 피해자 대리인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³⁶⁷⁾

366) 정창원,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자료집 토론회(2024. 12. 18.), 77: 증인신문 방식의 어려움에 관하여, ① 증인은 수동적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엔지니어의 경우 공학적 사고 방식에 친숙하여 전제에 따라 기술 평가에 대하여 전혀 다른 증언을 할 수 있고 그 증언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③ 증인이 증인 신문 과정의 짧은 시간 동안 변호인이 제출한 다수의 문헌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여 대상 정보와 변호인 제출 증거의 기술상 차이점을 증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④ 변호인은 증인신문 직전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증인이 해당 증거를 미리 숙지하기 어려운 점, ⑤ 검사 또한 공판 준비를 위하여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는 것은 공소 제기 후 수사로 인식되어 금지되므로 검사가 증인신문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어려운 점, ⑥ 변호인은 통상 공지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을 시각적 방법으로 공판에 현출하고 불리한 부분의 시각적 현출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증인이 그 기술적 차이를 이해하고 증언하더라도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시각적 자료가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현출되기 어려운 점, ⑦ 결국 검사의 재주신문 과정을 통해 시각적 자료와 함께 증인의 기술적 차이점에 대한 증언이 현출되어야만 재판부가 해당 증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나 공판 검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재주신문 과정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 변호인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등, 현 제도의 실무에서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재판부가 대상 정보의 영업비밀성 내지 산업 기술 해당성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67) 정창원, 피해자 절차 참여권 및 감정 처분에 대한 제안(특허청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발표문)(2024. 5.), 18.

3. 비교법적 검토

가. 일본

(1) 개요

일본에서는 2007. 6. 20.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³⁶⁸⁾이 제정되어 2008. 12. 1. 시행됨으로써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피해자참가제도는 형사소송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³⁶⁹⁾

(2) 주요내용

(가) 피해자참가인의 범위

제316조의3

① 재판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죄에 관한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이러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등이나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피고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한다.

1.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2. 형법 제176조, 제177조, 제179조, 제211조, 제220조 또는 제224조부터 제227조까지의 죄
3. 전항에 열거하는 죄 이외에 그 범죄행위에 이러한 죄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죄(제1항에 열거하는 죄를 제외한다)
4. 「자동차의 운전 등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 제4조, 제5조 또는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죄
5. 제1항 내지 제3항에 열거하는 죄의 미수죄

368)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7年 法律 第95号).

369) 조미선, “형사절차 내 피해자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196.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상범죄의 피해자 등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이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참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범죄에 한한다.

(나) 피해자참가의 허가

제316조의33

② 제1항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이하 ‘피해자참가인’이라고 한다)가 해당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척조항이 철회 혹은 변경되어 해당 피고사건이 동항 각 호에서 언급하는 죄와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결정으로 동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게 된 때에도 같다.

(다) 공판기일의 출석 및 통지

제316조의34

①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공판기일은 피해자참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재판소는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다수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러한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중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재판소는 심리의 상황,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의 출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전 각 항의 규정은 공판준비에서 증인신문 또는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

제292조의2

- ① 재판소는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심정 및 기타 피고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 ③ 재판장 또는 배석재판관은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④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고지하고, 이러한 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⑤ 재판장은 피해자 등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의견의 진술 또는 소송관계인의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질문이 이미 한 진술 혹은 질문과 중복되는 때 또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관련되었을 때, 그 밖에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제157조의4, 제157조의5, 제15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⑦ 재판소는 심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의견의 진술을 대신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⑧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93조(최종변론)

- ①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검찰관은 사실 및 법률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5조(신문·진술의 제한)

-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하는 신문 및 진술이 이미 한 신문이나 진술과 중복되는 때 또는 사건에 관계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때 그 밖에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

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 재판장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혹은 이러한 친족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자를 경외하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자의 주거, 근무처 및 그 밖에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가 특정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검찰관이 하는 신문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신문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판장은 제290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하는 신문 또는 진술이 피해자특정사항에 관계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④ 제290조의3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하는 신문이나 진술 또는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이러한 경우 동항 중 ‘피해자특정사항’은 ‘증인 등 특정사항’으로 한다.

⑤ 재판소는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관을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호사인 변호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통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취한 조치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검찰관의 권한행사 및 통지

제316조의35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검찰관에 대하여 해당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검찰관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해당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바) 증인신문

제316조의36

- ① 재판소는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그 자가 그 증인을 신문할 것의 신청이 있을 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심리의 상황, 신청에 관한 신문사항의 내용, 신청을 한 자의 수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황사항(범죄사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자가 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전항의 신청은 검찰관의 심문이 종료된 후(검찰관의 심문이 없을 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심문이 종료된 후) 즉시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신문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 ③ 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하는 심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사) 피고인신문

제316조의37

- ① 재판소는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그 자가 피고인에게 제311조 제2항의 진술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참가인 혹은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진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리의 상황, 신청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항의 내용, 신청을 한 자의 수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한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질문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전항의 신청은 미리 질문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해당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 ③ 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하는 질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견의 진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16조의38

- ① 재판소는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리의 상황, 신청한 자의 수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제29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찰관의 의견진술 후에 소인으로서 특정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 자가 그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전항의 신청은 미리 진술할 의견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제29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피해자참가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제1항에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은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나. 독일

(1) 기술 유출 범죄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가) 피해자의 개념 및 상대적 친고죄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공익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개입의 필요성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고소 없이 소추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이다.³⁷⁰⁾

①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이다(형법 제77조 제1항).³⁷¹⁾ 그 밖의 고소권자로는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자, 법인의 경우 조직구성원 내지 포괄적 대리인 또는 업무상 대리인, 도산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이 있다.³⁷²⁾

370)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12 Rn. 162.

371)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12 Rn. 163.

372)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② 고소의 형식과 기간

고소는 서면 또는 조서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58조 제2항).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행과 범행을 범한 자를 안 때부터 3개월이다(형법 제77b조 제1항 제1문). 다만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³⁷³⁾ 고소는 형사절차의 종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형법 제77d조 제1항).

③ 고소장에 담긴 영업비밀 및 열람에 대한 반대

영업비밀 보유자는 고소 시에 고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검사에게 알리면서, 제3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부과절차에 관한 규칙 제260b조 참조).³⁷⁴⁾ 피의자의 기록열람권(형사소송법 제147조)은 제한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는 어떠한 정보가 사건기록에 기재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³⁷⁵⁾

(2) 검찰의 기소 후 공소참가인으로서 참여

(가) 검찰의 예외적 기소 및 그 요건

① 검찰의 예외적 기소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소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때에는 검찰이 기소한다(같은 법 제23조 제8항 참조).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비밀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스파이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익에 속하며, 관련 기업이 고소를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³⁷⁶⁾

§ 12 Rn. 163.

373)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12 Rn. 163.

374)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23 Rn. 164.

375)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23 Rn. 164.

376) Harte-Bavendaumm/Ohly/Kalbfus/Harte-Bavendaumm,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2020, GeschGehG § 23 Rn. 78.

② 기소 요건(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의 존재)

검찰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인정하는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6조). 3개월의 고소기간(같은 법 제77b조 제1항)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소를 한 사례 역시 직접적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속한다.³⁷⁷⁾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형사소추하는 것에 대한 공익”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부과절차에 관한 규칙 제260조 참조 제1항 제1문 참조).

특히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한 공익은 ① 피의자가 경제형법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심각한 피해가 임박하였거나 발생된 경우, ③ 해당 범죄가 영업비밀을 염탐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세운 계획의 일부인 경우 또는 ④ 피해자의 경제적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같은 규칙 제260a조 제1항).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이 인정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이 부정될 수 있다.³⁷⁸⁾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으로 인해 직권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검찰의 결정은, 법관의 사후적 심사를 받지 않는다.³⁷⁹⁾

(나) 기술 유출 피해자의 공소참가 제도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보유자(피해자)가 기간 내에 형사고소를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검사가 사적공소를 인수한 경우, 공소에 공소참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제6호 참조).³⁸⁰⁾

원칙적으로 피해자만이 공소참가권을 가지며, 이때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

377) Harte-Bavendaumm/Ohly/Kalbfus/Harte-Bavendaumm,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2020, GeschGehG § 23 Rn. 78.

378)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23 Rn. 165.

379) BGH NJW 1961, 2120 (2121);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23 Rn. 165.

380) Harte-Bavendaumm/Ohly/Kalbfus,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2020, GeschGehG § 23 Rn. 82; Keller/Schönknecht/Glinke/Schönknecht,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GeschGehG § 23 Rn. 161; Köhler/Bornkamm/Feddersen/Alexander, 42. Aufl. 2024, GeschGehG § 23 Rn. 118.

즉 범죄로 인해 실행된 형벌규정상의 보호법익의 보유자만을 의미한다.³⁸¹⁾

(다) 공소참가인으로서 피해자의 권리³⁸²⁾

① 공판에 참석 및 소환 받을 권리

공소참가인의 핵심적인 권리는 공판심리에 참석할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1문 참조). 이 참석권은 공판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³⁸³⁾ 원칙적으로 공소참가인은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출석하도록 명할 수 없지만, 법원이 공소참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에만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³⁸⁴⁾

또한 법원 입장에서 공소참가인은 공판기일에 공식적으로 소환 받을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전문).³⁸⁵⁾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187조 제2항 참조)

② 공판기일에서 공소참가인의 권한

공소참가인에게는 포괄적인 참여권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3문). 이는 기존 판례가 공소참가인에게 인정한 공판 관련 권한들이다.³⁸⁶⁾ 구체적으로 공소참가인은 (a) 법관 또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권(같은 법 제24조, 제31조, 제74조), (b) 공판 중 피고인·증인·감정인에게 질문할 권리(같은 법 제240조), (c) 재판장의 지시·법원 또는 다른 절차관계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제242조), (d) 증거신청권(같은 법 제244조 제3항 내지 제6항), (e) 증거조사 후 질문권·의견진술권, 최후진술권,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론권(같은 법 제257조, 제258조)을 가진다.³⁸⁷⁾

특히 공소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검찰과 같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판에 입회하여 심문할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제4문).³⁸⁸⁾ 여기서 심문권은 공판에 참석한

381) MüKoStPO/Valerius, 2. Aufl. 2024, StPO § 397 Rn. 37.

382)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3–17.

383) MüKoStPO/Valerius, 2. Aufl. 2024, StPO § 397 Rn. 4.

384)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3.

385)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3.

386)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6.

387)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6; MüKoStPO/Valerius, 2. Aufl. 2024, StPO § 397 Rn. 12ff.

388) BGHSt 28, 272 (273);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3.

공소참가인 또는 적어도 변호사 대리를 받는 공소참가인에게만 적용된다.³⁸⁹⁾ 소환장은, 공소참가인이 기록상 대리권 수여를 통해 명시적으로 소환장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공소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송달될 수 있다(같은 법 제145a조 제2항 제1문 참조).³⁹⁰⁾ 송환장 송달과 공판기일 사이에는 최소 1주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참조).³⁹¹⁾

그 밖에 공소참가인에게는, (a) 절차의 협상(Deal)에 대한 공소참가인의 절차관계인으로서 의견진술권(같은 법 제257c조 제3항 제3문),³⁹²⁾ (b) 재판부 구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c)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신청함으로써, 법관의 석명 의무(같은 법 제244조 제2항)를 적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³⁹³⁾ 특히 (c)는 명문의 규정에 없지만, 공소참가인의 소송관계인이라는 지위 및 법적 심문청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³⁹⁴⁾ 다만 이는 공소참가권한의 근거가 되는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³⁹⁵⁾ 공소참가인은 상소의 방식으로 석명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³⁹⁶⁾

③ 기타 권리

공소참가인은 신청으로 공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문). 검찰이 통지 받는 모든 결정을 공소참가인도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제5문 전단).³⁹⁷⁾

공소참가인과 그 변호사는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406e조). 공소참가인은 자신의 기록열람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³⁹⁸⁾ 끝으로 공소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할 권한이 있다(같은 법 제400조).³⁹⁹⁾

389) MüKoStPO/Valerius, 2. Aufl. 2024, StPO § 397 Rn. 24.

390)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3.

391)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3.

392)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5.

393)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7; MüKoStPO/Valerius, 2. Aufl. 2024, StPO § 397 Rn. 22f.

394)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7;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17.

395)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7.

396)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7.

397) KK-StPO/Allgayer, 9. Aufl. 2023, StPO § 397 Rn. 4.

398)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14.

399)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16.

[표 27] 독일 공소참가인의 권리

	형소법 및 기타 규정	공소참가인의 권리
1	제397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공판심리에 출석할 권리
2	제24조, 제31조, 제74조, 제397조 제1항 제3문	법원과 감정인 기피신청권
3	제240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3문	피고인,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권리
4	제238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3문	재판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제242조, 제397조 제1항 제3문	질문권
6	제244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97조 제1항 제3문	증거신청권
7	제257조, 제397조 제1항 제3문	진술권 및 최후진술권
8	제397조 제1항 제4문	입회 및 심문할 권리
9	제397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과 대리를 받을 권리
10	제397조 제2항 제5문	법원 재판을 통지 받을 권리
11	제257조 제3항 제3문	절차협상에 대한 의견진술권
12	법원조직법 제187조 제2항, 제397조 제3항	통역인 및 번역인을 사용할 권리
13	제201조 제1항 제2문	신청으로 공소장을 송달 받을 권리
14	제406e조	변호사를 통한 기록열람권
15	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 부과절차에 관한 규칙 제222a조	심문권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불기소시 의견제시권 범죄피해자의 특별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제시권
16	제395조 제4항 제2문, 제401조 제1항 제1문	상소권
17	불문의 권리	신청으로 법원이 진실규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권리
18	불문의 권리	인증(人證) 대상인 자를 직접 소환할 권리

(3) 공소참가인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

공소참가인에게 속하지 않는 권리로는, 공판유예신청권(제246조 제2항, 제265조 제4항), 문서낭독 이유의 조서 기재 신청권(제255조), 공판조서에 과정·진술·의견표명을 완전히 기록하도록 신청할 권리(제273조 제3항), 감정인이 선서하도록 신청할 권리(제79조 제1항) 등이 있다.⁴⁰⁰⁾

4.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진술권의 구체적 보장 방안

가. 서론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한 국가인데, 이러한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권리로, 이로써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⁴⁰¹⁾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한 재판절차진술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

400) BeckOK StPO/Weiner, 53. Ed. 1.10.2024, StPO § 397 Rn. 18.

401) 조미선,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31.

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절차법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규정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절차 참여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문제점에 비추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규정만으로는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1)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관련 규정은 피해자의 위해 방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규정된 것이고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소송구조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도입 방식

도입 방식으로는, 앞서 본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내지 38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를 참조하되,⁴⁰²⁾ 기술 유출 범죄 특수성 반영과 법률개정의 수월함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일반적인 참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구체적 내용

(가) 참가절차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검사에게 참가신청을 하도록 하

402) 조미선,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195-211.

고, 검사가 이에 의견을 붙여 법원에 통지를 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피해자참가를 허가하도록 한다.

(나) 공판준비기일 · 공판기일 출석 및 공판기일 통지

피해자참가인 또는 피해자참가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기일을 피해자참가인 또는 피해자참가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심리의 상황, 피해자참가인 또는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수를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을 경우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증인신문권 및 피고인신문권

피해자참가인 또는 피해자참가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신문이 종결된 이후 바로 신문사항을 밝혀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을 붙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주장 · 입증과 피해자참가인의 증인신문이 모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사실 및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진술권

피해자참가인은 사전에 의견진술의 취지를 밝혀 검사에게 의견진술 신청을 하고, 검사는 의견을 붙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심리의 상황, 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 공소사실, 양형에 기초가 되는 정상사유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물론, 이러한 의견의 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피해자참가인의 의견진술은 사실인정 및 양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4) 소결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칫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의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훼손을 가할 가능성이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절차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참가의 절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이 허가사항으로서 적절히 통제하면서 사실 및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시기를 증거조사 이후로 제한한다면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에 있어 당사자소송구조와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라는 원칙과의 정합성,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의 달성에 방해됨이 없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

피해회사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피해회사의 다양한 기술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술자료가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사는 증거목록을 등사하여 볼 수 있지만, 각 증거별로 피해회사의 어떠한 기술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등(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는 재판장의 허가사항이고,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는데, 재판장의 허가·불허가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한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는 피해자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현행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 및 실무의 경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마다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부 및 그 시기·범위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실무상 공소장과 피해자 진술, 피해자 제출 증거는 대체적으로 허가하는 실무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외 증거목록, 공판조서나 피해자 증거 외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정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절차진술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허용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허가, 공소장과 증거목록(입증취지 부분 제외),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제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은 원칙적 허가, 증인신문조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허가, 그 외 증거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의 확대는 재판부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이는 2025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IV.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방지 제도

1. 개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회사

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은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 나아가 국가의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기술 유출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유출 발생이 우려되는 측면이 크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에 관한 열람·등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최종실험 결과 중 일부인데,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자신이 유출한 실험 결과 외에 개발 히스토리와 중간 실험결과, 최종 실험결과 전체 원본과 같은 자료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회사가 작성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판정서, 이를 심사한 전문가의 확인·판정 관련 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제공되면서 대상기술과 무관한 피해회사의 다른 기술 내용 등이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추가 유출을 우려하여 ‘등사’는 제한하고 ‘열람’만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증거기록 분석의 어려움, 방어권 행사 등의 이유를 들어 ‘등사’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외면한 채 계속적으로 ‘등사’를 불허하기는 어려우므로 최종적으로는 등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열람·등사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모적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요구된다.

2. 타 소송절차에서의 비밀 보호 제도

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의 비밀유지명령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2011년 한·미 FT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합의사항⁴⁰³⁾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

403) 제18.10조 지식재산권 집행

11. 각 당사국은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사법 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령 및 그 위반 시의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다.⁴⁰⁴⁾ 비밀유지명령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은 그 대상이 아니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동반되므로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비밀 유지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서 비밀유지명령과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의2에서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동일하다.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외에 특허법 제224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217조, 상표법 제227조, 저작권법 제129조의3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전반에 규정되어 있다.⁴⁰⁵⁾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4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특허청(2022), 281.

405) 박병민 · 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36.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비공개 심리절차

(1) 민사소송법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비공개 심리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은 문서제출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거부 사유 심리를

위해 문서소지인에게 제시를 명하고,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비공개 심리절차’라 하고 미국의 in camera 절차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⁰⁶⁾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06) 박병민 · 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17.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제2문은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할 뿐 비공개 심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공개 심리절차의 주체, 형식,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여부 및 범위, 문서를 제시받는 방법, 조서 작성 여부, 기록 관리 및 문서의 상급심 송부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⁴⁰⁷⁾ 그러나 한편, 우리 법의 참조가 된 일본 민사소송법 제223조 제6항도 “이때 누구도 그 문서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미국의 법령도 in camera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변론이 아닌 심리는 판사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⁴⁰⁸⁾

(2)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⁹⁾

정보공개법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407) 박병민·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19-20.

408) 박병민·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19.

409) 박병민·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54.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11조(비공개 정보의 열람·심사) ①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 사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취소소송이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공개 청구된 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명령을 받은 피고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은 그 자료를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원고에게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소송기록과 분리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그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 또는 위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상소법원에 송부한다.

(3) 심리의 비공개

우리 헌법은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공개재판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제57조로 헌법과 같은 내용의 공개재판원칙을 규정하고 있다.⁴¹⁰⁾ 한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410)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2012), 132-133.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 신고자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¹¹⁾ 또한 소년 법은 제24조에서 비공개심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411)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2012), 147-153.

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검토

비공개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본 제도 중 in camera 심리절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그 심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정해져있지 아니하고, 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in camera 심리절차를 거쳐 일방적인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절차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기술 유출 범죄의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제도로써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심리의 비공개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4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와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비밀유지명령과 함께 기록의 열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용되어 오던 보안 USB 등 기록의 유출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활용된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⁴¹²⁾

412) 정창원,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개선방안 자료집 토론문(2024. 12. 18.), 82.

[표 28] 비밀유지명령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 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때 영업비밀을 보유한 당사자는 피해자 및 검사로, 다른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에 준용한다.
(신설)	제14조의8(심리의 비공개)⁴¹³⁾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심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재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즉, ①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법정에서 영업비밀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재판소의 비공개 결정, ②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검찰관이 기소장을 낭독할 때 영업비밀 구성정보의 특정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행,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면 범

41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03. 10. 17. 부정경쟁방지법에 재판심리의 비공개에 관한 개정안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2012), 155.

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 가능, ④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심문하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의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며, 공개법정에서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및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 ⑤ 증거서류의 낭독의 경우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 ⑥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일본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할 때에도 증거를 공개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하는 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당사항이 관계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다.⁴¹⁴⁾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특례 규정 역시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추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V. 구속기간의 완화

1. 개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414)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107.

2. 기술 유출 범죄 사건과 구속기간

기술 유출 사건, 특히 해외유출 사건의 경우 구속기소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⁴¹⁵⁾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불구속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증가일수보다 형사합의부의 경우 2.54배, 형사단독의 경우 2.19배, 고등법원의 경우 1.79배,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7.40배 길다.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사법자원이 구속사건에 집중됨에 따라 불구속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기준 제1심의 경우 합의사건 144.1일, 단독사건 110.7일로 법정 구속기간을 상회한다.

[표 29]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현황⁴¹⁶⁾

연도	구분(건/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2019년	건	5	30
	명	10	91
2020년	건	13	43
	명	14	100
2021년	건	4	44
	명	15	95
2022년	건	13	28
	명	20	63
2023년	건	14	51
	명	2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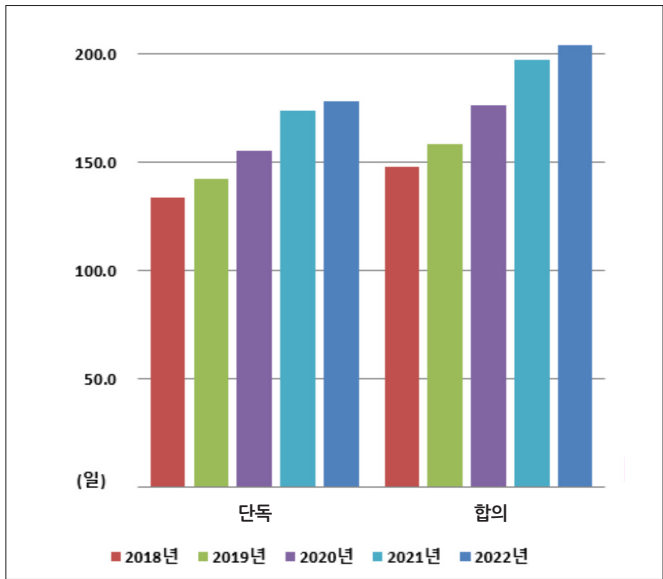
415) 2022. 9. 대검찰청에 기술 유출센터가 설치된 이후 기술 유출 사건의 월 평균 기소 인원은 3.3명, 처리인원은 12명 증가하였고, 기소한 사건 중 구속률은 23.2%, 기소율은 2.6% 증가하였으며, 검찰 직인지 사건 비율은 4.6%, 검찰 직인지 사건 중 구속비율은 19.4% 증가하였다고 한다[법률신문, “檢, 기술 유출범죄 강력 대응 300일...구속률 23.2% 증가”, <https://www.lawtimes.co.kr/news/188944> (2024. 8. 6. 확인)].

416)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대상, 대검찰청 제공.

[표 30] 형사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⁴¹⁷⁾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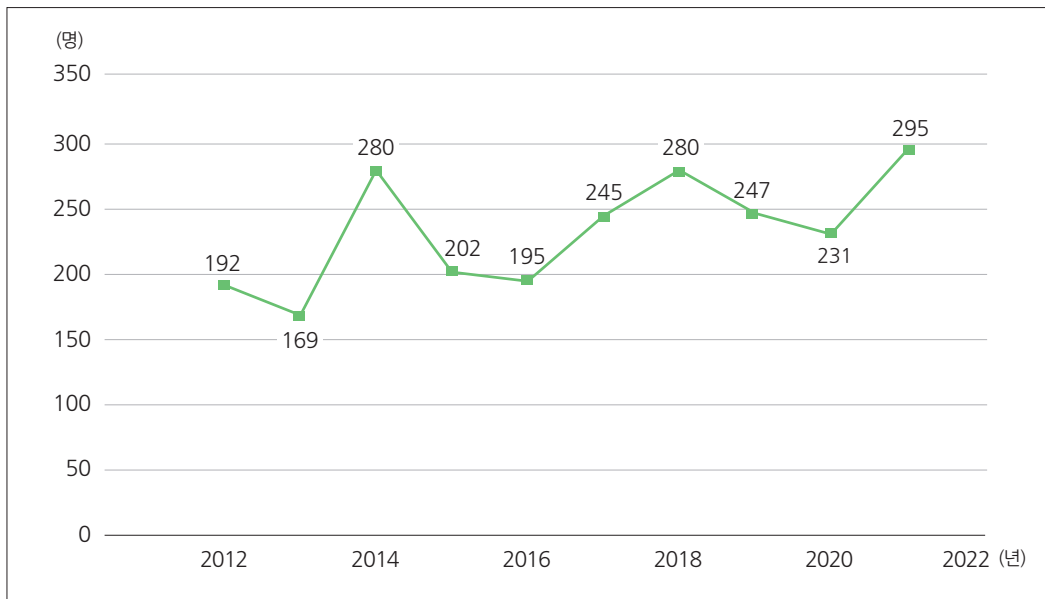
구분 연도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평균 처리기간							
	형사합의		형사단독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12	95.1	104.1	70.7	92.9	92.7	131.6	73.4	120.6
2013	104.2	151.8	77.9	102.3	99.5	229.7	77.2	125.8
2014	114.1	173.2	82.9	116.1	108.0	198.8	80.3	147.5
2015	112.1	173.5	79.8	119.6	115.5	159.1	80.1	167.2
2016	116.8	175.0	83.3	123.6	108.6	145.9	83.3	176.3
2017	118.4	168.0	87.1	128.9	115.5	141.6	84.2	169.9
2018	122.7	159.6	93.5	137.7	118.9	168.0	83.7	171.8
2019	122.5	174.0	96.0	146.6	122.2	179.1	91.0	194.7
2020	131.3	194.2	105.2	159.4	124.0	204.5	95.4	233.6
2021	138.3	217.0	118.3	178.0	128.7	204.2	98.1	241.2
2022	141.3	223.7	116.8	182.5	127.4	191.7	99.9	274.8
2023	144.1	228.7	110.7	180.7	127.9	194.9	96.3	290.2

[그림 10] 형사공판사건 제1심 처리기간⁴¹⁸⁾

417) 2014~2023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각 제6장 제1절.

418)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764.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행위 시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기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바, 공판기일 종결 당시 기술이 갖는 매력과 가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기간은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공범들이 관련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중 일부를 구속한 다음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결국 피고인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제1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추가적인 기술 유출 피해⁴¹⁹⁾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그 부작용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직권보석을 하는 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바, 구속기간의 문제는 비단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림 11] 2012년~2021년 제1심 직권보석인원⁴²⁰⁾

419) 조선일보, “세메스 반도체 기술 또 중국 유출, 동생 이어 범행한 형 구속기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29/EC32OYC7SRBPXG7PIW67RHFZEY/ (2024. 8. 7. 확인).

420)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179.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등 재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형사재판 처리기간이 증가되고 있는데, 2022. 7.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법관 770명, 변호사 138명 대상), 구속기간 제한의 완화(1심 연장, 사실심 연장, 전부 연장, 예외적 연장)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관은 93.9%, 변호사는 64.7%에 이르는 등, 현행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⁴²¹⁾에 비추어 볼 때, 입법론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유지하되 예외적 구속연장사유가 있는 때에 사실심인 제1심과 항소심의 최대 구속기간의 상한을 각각 1년으로 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⁴²²⁾

[표 31] 구속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방안

현 행	개정안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u>2개월로 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신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 6개월로 한다. ② ————— 필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제1심과 상고심은 제2차에 한하여, 항소심은 4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의 구속기간은 상소제기일부터 항소심은 1년, 상고심은 8개월을 넘지 못한다.

421)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266-281.

422)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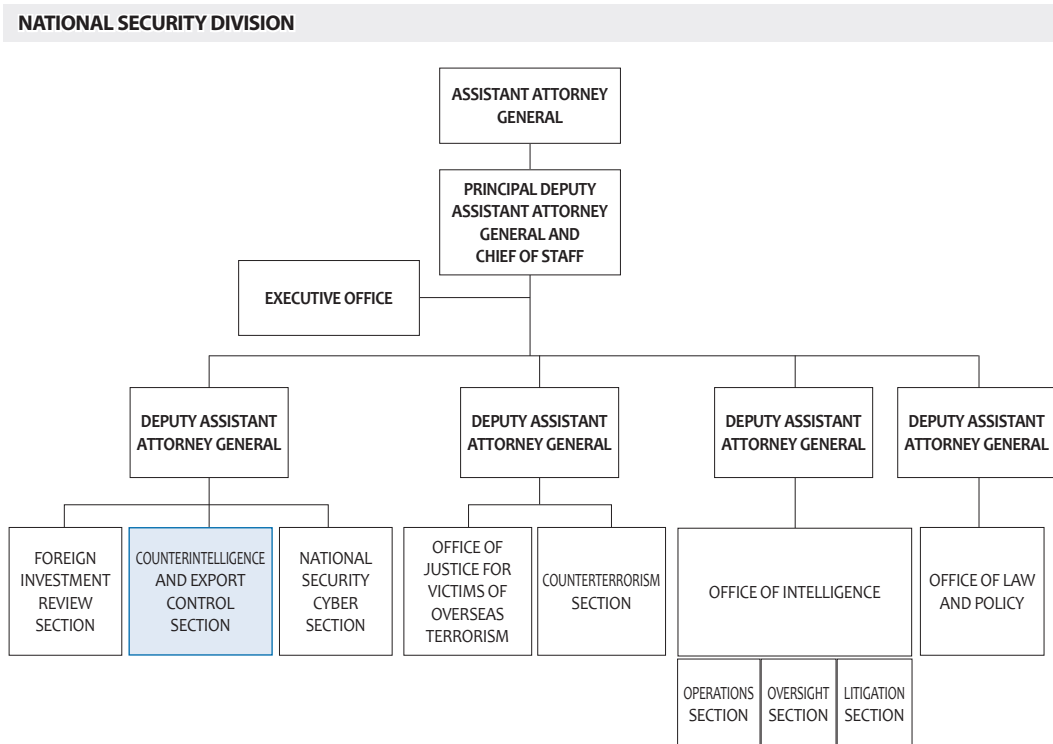
..... 제7장

기술 유출 범죄와 양형

제1절 개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영업비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경쟁국의 유출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기술 유출을 기업 자산 관련 범죄의 영역이 아닌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의 조사 및 기소를 감독하는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방첩 및 수출통제과(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는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소속이다.

[그림 12]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 조직도⁴²³⁾

423) https://www.justice.gov/d9/2023-06/nsd_org_chart_6-16-23_0.pdf (2024. 12. 5. 확인).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법정형 역시 상향하였는데,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과경하고, 실제 선고결과에 비추어 이른바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2024. 3. 25. 마련하였고, 2024.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 관련 통계를 확인한 다음, 2024. 7. 1.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관련 통계⁴²⁴⁾



I. 죄명별 형량분포

죄명별 형량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 기술 유출 범죄 죄명별 형량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월)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2	3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수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4	11.5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25.0	7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수	0	0	5	1	13	12	0	4	22	0	0	1	5	0	2	0	0	65	10.11	
	비율	0.0	0.0	7.7	1.5	20.0	18.5	0.0	6.2	33.8	0.0	0.0	1.5	7.7	0.0	3.1	0.0	0.0	100.0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수	0	0	0	0	2	0	0	1	2	0	0	0	1	0	0	0	0	6	10.67	
	비율	0.0	0.0	0.0	0.0	33.3	0.0	0.0	16.7	33.3	0.0	0.0	0.0	16.7	0.0	0.0	0.0	0.0	100.0		

424)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2023. 10.).

II. 영업비밀 침해행위 신고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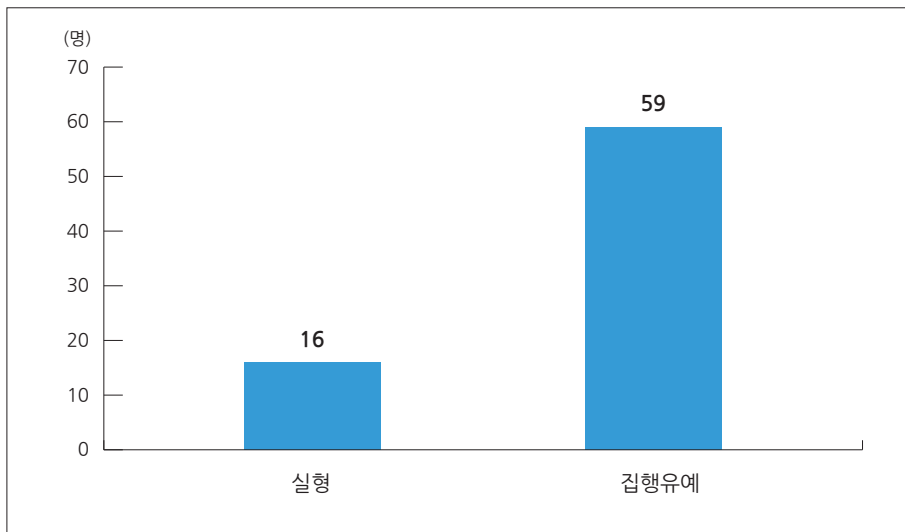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영업비밀침해행위(국내침해 및 국외침해)에 대한 신고내역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33]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침해행위 신고내역

(단위: 명, %)

유형		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국내침해	수	15	52	67
	비율	22.4	77.6	100.0
국외침해	수	1	7	8
	비율	12.5	87.5	100.0
전체	수	16	59	75
	비율	21.3	78.7	100.0

[그림 13] 영업비밀침해행위 신고내역



III.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량분포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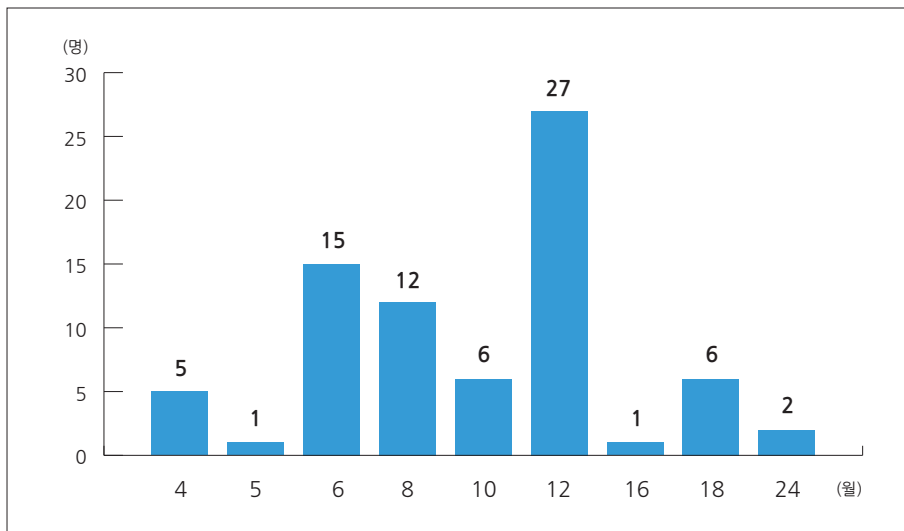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전체 사건에 대한 형량 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34] 영업비밀침해행위 전체사건 형량분포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월)
		4	5	6	8	10	12	16	18	24		
국내침해	수	4	1	15	11	5	22	1	6	2	67	10.22
	비율	6.0	1.5	22.4	16.4	7.5	32.8	1.5	9.0	3.0	100.0	
국외침해	수	1	0	0	1	1	5	0	0	0	8	10.25
	비율	12.5	0.0	0.0	12.5	12.5	62.5	0.0	0.0	0.0	100.0	
전체	수	5	1	15	12	6	27	1	6	2	75	10.23
	비율	6.7	1.3	20.0	16.0	8.0	36.0	1.3	8.0	2.7	100.0	

[그림 14] 영업비밀침해행위 전체사건 형량분포



2.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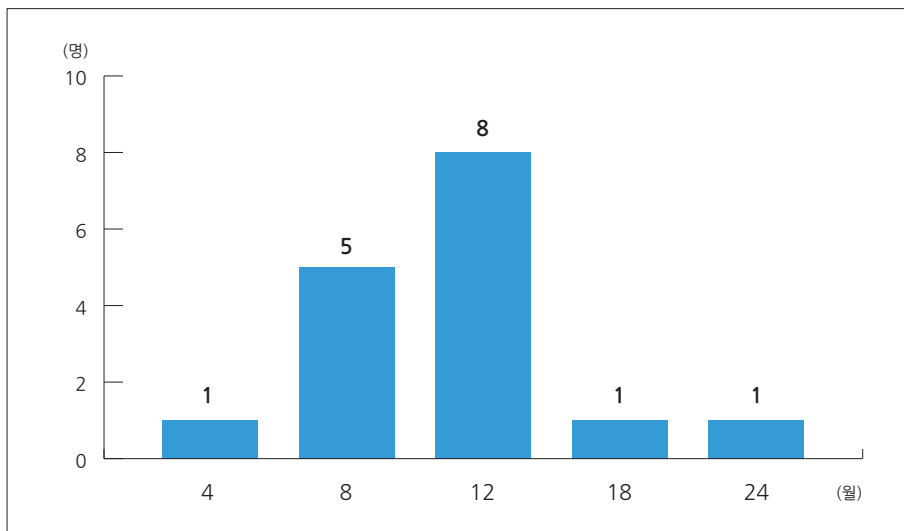
영업비밀침해행위 중 실행에 대한 형량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35] 영업비밀침해행위 실행사건 형량분포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월)
		4	8	12	18	24		
국내침해	수	1	5	7	1	1	15	11.33
	비율	6.7	33.3	46.7	6.7	6.7	100.0	
국외침해	수	0	0	1	0	0	1	12.00
	비율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수	1	5	8	1	1	16	11.38
	비율	6.3	31.3	50.0	6.3	6.3	100.0	

[그림 15] 실행사건 형량분포



3. 집행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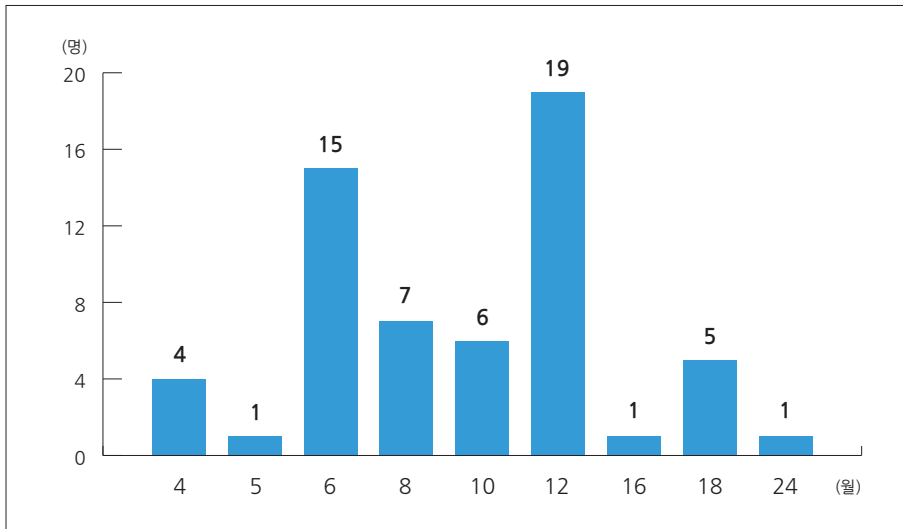
영업비밀침해행위 중 집행유예에 대한 형량분포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36] 영업비밀침해행위 집행유예 사건 형량분포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월)
		4	5	6	8	10	12	16	18	24		
국내침해	수	3	1	15	6	5	15	1	5	1	52	9.90
	비율	5.8	1.9	28.8	11.5	9.6	28.8	1.9	9.6	1.9	100.0	
국외침해	수	1	0	0	1	1	4	0	0	0	7	10.00
	비율	14.3	0.0	0.0	14.3	14.3	57.1	0.0	0.0	0.0	100.0	
전체	수	4	1	15	7	6	19	1	5	1	59	9.92
	비율	6.8	1.7	25.4	11.9	10.2	32.2	1.7	8.5	1.7	100.0	

[그림 16] 집행유예 사건 형량분포



4. 검토

가. 국내침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 중 국내침해 사건의 형량분포를 살펴보면, 평균형량은 10.22개월이고, 형량분포의 범위는 4개월~24개월, 빈도는 12개월, 6개월, 8개월 순이다. 기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인 10개월 이하에 53.8%가 분포해있고,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인 8개월~2년 범위에 70.2%가 분포해 있다.

나. 국외침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 중 국외침해 사건의 형량분포를 살펴보면, 평균형량은 10.25개월, 형량분포범위는 4개월~12개월, 최빈값은 12개월이다. 기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인 1년~3년 6개월에 62.5%가 분포하고 있다. 다만, 국외침해 사건의 경우 선고 사례가 적은 편이므로 통계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IV. 양형기준 준수율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의 연도별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식재산권범죄	80.5	76.9(▼)	76.8(▼)	73.9(▼)	75.8(▲)	77.2

2021년 기준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75.8%)은 증권·금융범죄(69.4%) 다음으로 낮고, 전체 범죄 양형기준 평균 준수율(92.2%)에 크게 못 미친다.

제3절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I. 양형기준 수정 경과

1. 연혁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의 양형기준은 2012. 6. 18. 최초 의결되어 2012. 7. 1. 시행되었고, 2017. 4. 10. 영업비밀 침해유형(대유형 3)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2017. 5. 15.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두 번의 수정이 더 있었다(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수정).⁴²⁵⁾

2. 양형기준 수정 배경

가. 법정형의 상황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영업비밀의 국내유출과 해외유출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여 2019. 1. 8. 개정되었고, 2019. 7. 9. 개정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국내유출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평균 징역형량도 2017년 10.7개월, 2018년 10.4개월, 2019년 11.3개월, 2020년 12.7개월, 2021. 13.6개월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된 법정형이 양형기준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강화된 형량이 소송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상향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425) 2024 양형기준, 양형위원회(2024. 6.), 71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

[표 38]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과 기존 양형기준 형량 범위⁴²⁶⁾

구분	부정경쟁방지법 (‘19.1 개정)	양형기준(‘17.4 개정)		
		감경	기본	가중
해외유출	15년 이하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국내유출	10년 이하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나. 구성요건의 신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에 관한 조항을 2019. 8. 20. 신설하여 2020. 2. 21. 시행되었고, 전략기술의 국외 및 국내침해를 규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이 2022. 2. 3. 제정되어 2022. 8. 4. 시행되었다.⁴²⁷⁾

3. 수정 경과

특허청은 2022. 8.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독립된 양형기준 신설, 권고 형량의 상향화, 형량의 감경·가중요소(양형인자) 정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비, 범죄 유형의 정의 규정 현행화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정비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발송·제안하였고,⁴²⁸⁾ 양형위원회는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업무로 의결하였다.⁴²⁹⁾

이후 2023. 8. 8. 제12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설정범위, 유형분류 수정 심의, 2023. 11. 10. 제128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수정심의, 2024. 1. 8. 제129차 및 2024. 1. 18. 제129-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수정심의 및 수정안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4. 1.부터 2024. 2.까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4. 3. 25.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⁴³⁰⁾

426)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특허청(2023. 4.), 5.

427)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

428)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특허청(2023. 4.), 5.

429)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2.

430)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2.

II.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1.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관련법률⁴³¹⁾

(1) 부정경쟁방지법

죄명	적용 법조	개정전		개정 법률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영업 비밀 침해 행위	§ 18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10년↓/ 1억 원↓ (재산상 이득액×10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 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 <u>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u> <u>무단 유출 / 영업비밀 보유자의</u> <u>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u> 2. <u>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u> <u>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u> 3. <u>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u> <u>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u>	15년↓/ 15억 원↓ (재산상 이득액×10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 18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5년↓/ 5천만 원↓ (재산상 이득액×10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 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 <u>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u> <u>무단 유출 / 영업비밀 보유자의</u> <u>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u> 2. <u>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u> <u>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u> 3. <u>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u> <u>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u>	10년↓/ 5억 원↓ (재산상 이득액×10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

431)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7. 17.), 6-8.

(2) 산업기술보호법

죄명	적용 법조	개정전		개정 법률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국가 핵심 기술 침해	§36 ①	〈신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	3년↑ + 15억 원↓
산업 기술 국외 침해	§36 ② (구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으로 제14조 ⁴³² 각 호(제4 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	15년↓/ 15억 원↓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 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 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 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항 행 위 제외)	15년↓/ 15억 원↓
산업 기술 유출	§36 ③ (구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 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년↓/ 7억 원↓	제14조 각 호(제4호·제6 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년↓/ 10억 원↓

432)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

나. 설정 범위

(1)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침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2019. 8. 20.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으로 법정형이 중하다. 선고사례가 적으나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였다.⁴³³⁾

(2)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따로 유형화하여 그 국내·국외 침해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것이다.

[표 39]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구성요건 및 법정형⁴³⁴⁾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전략기술 국외침해	§50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⁴³⁵⁾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년↑ + 20억 원↓
	§50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0년↓ / 20억 원↓
전략기술 국내침해	§50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5년↓ / 15억 원↓
	§50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년↓ / 5억 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3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4.

434)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7. 17.), 9.

435)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래와 같이 그 구성요건이 유사하다.

[표 40]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구조⁴³⁶⁾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6조 제1항 (3↑) 국가핵심기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등	제50조 제1항 (5↑) 전략기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
제36조 제2항 (15↓)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 등	제50조 제2항 (20↓)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수출 등
제36조 제3항 (10↓) 산업기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 등	제50조 제3항 (15↓) 전략기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
제36조 제4항 (3↓) 산업기술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목적 외 용도 정보사용·공개 등	제50조 제4항 (5↓) 전략기술 중과실 취득·사용·공개, 목적 외 용도 정보사용·공개 등

- 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36)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7. 17.), 13.

2022. 2. 3. 제정되고 2022. 8. 4. 시행되어 양형 사례가 없으나 설정 범위에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포함하므로, 그와 유사한 구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도 규범적으로 설정 가능하여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하였다.⁴³⁷⁾

2. 유형 분류

가. 대유형 분류

기술침해범죄를 별도의 범죄군으로 신설하지는 않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면서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하였다. 결국, 기존 양형기준 유형분류를 유지하면서 대유형 4를 추가하고, 대유형 4의 소유형은 법률 규정, 죄질과 법정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³⁸⁾

03 |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2	국외침해			

04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2	국내침해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437)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4.

438)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8.

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소유형 분류

(1) 제1유형(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2) 제2유형(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3)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4)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 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3. 권고 형량의 범위

가. 형량범위 설정 방식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
는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⁴³⁹⁾

법정형이 동일하고 성격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
를 참고하되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나쁜 유
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
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하였다.⁴⁴⁰⁾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

(1) 유형의 정의⁴⁴¹⁾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국내 침해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 방지법 제18조 제2항	10↓

439)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2.

440)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2.

441) 최형준,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0. 23.), 7.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국외침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3.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 방지법 제18조 제1항	15↓

(2) 선고 형량⁴⁴²⁾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월)
		4	5	6	8	10	12	16	18	24		
1유형	수	4	1	15	11	5	22	1	6	2	67	10.22
	비율	6.0	1.5	22.4	16.4	7.5	32.8	1.5	9.0	3.0	100.0	
2유형	수	1	0	0	1	1	5	0	0	0	8	10.25
	비율	12.5	0.0	0.0	12.5	12.5	62.5	0.0	0.0	0.0	100.0	

(3) 권고 형량범위 검토⁴⁴³⁾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10월 6월 - 1년6월	8월 - 2년 10월 - 3년	1년 - 4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3년	1년 - 3년6월 1년6월 - 5년	2년 - 6년 3년 - 8년

제1유형과 법정형이 유사한 도주·범인은닉범죄(법정형 도주원조 10년↓,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성매매범죄(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법정형 1년~10년)를,

442) 최형준,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0. 23.), 7.

44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6.

제2유형과 법정형이 유사한 공갈범죄(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법정형 상습특수 공갈 1년~15년, 누범공갈 2년~20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법정형 2년~15년)를 고려하되, 법정형 유사범죄와의 균형, 영업비밀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범죄 양형에 대한 규범적 상향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정형 유사 범죄 권고 형량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1) 유형의 정의⁴⁴⁴⁾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5 ↓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7 ↓
2	국내침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10 ↓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10 ↓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15 ↓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15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20 ↓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 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20 ↓

444) 최형준,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0. 23.), 11.

유형	명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3 ↑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5 ↑

(2) 권고 형량범위 검토⁴⁴⁵⁾

(가) 4-2유형(국내침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6월 - 6년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영업비밀 국내침해(3-1유형)와 같으나 국가경쟁력 보호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국내침해 및 선고사례(최고 형량 1년 6개월⁴⁴⁶⁾)보다 형량범위를 상향하였다.

445)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8-20.

446)

순번	사건번호	범죄사실	선고	비고
1	서울중앙 2020고단****	회사 내부자가 경쟁업체와 공모하여 기술 누설·활용	1년6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합
			1년	
			10월/징유 2년	
			8월/징유 2년	
2	수원 2021고단****	퇴사하면서 프로그램 정보 가지고 나와 누설 후 경쟁사 입사하여 유사기술 개발	1년6월	업무상배임 경합
			1년/징유 2년	
3	수원 2021고단****	해외이민 후 경쟁업체 취업 계획으로 산업기술 유출	1년6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합

(나) 4-3유형(국외침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1년 - 3년6월	2년 - 6년	4년 - 10년

영업비밀 국외침해(3-2유형)와 징역형 법정형(15년 이하)이 같으나,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영업비밀 국내침해 및 선고사례⁴⁴⁷⁾ 보다 형량범위를 상향하였다.

(다) 4-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이 유형에 관하여는 양형사례가 없어,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인 절도 범죄(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법정형 3년 이상), 공갈범죄(일반공갈)(법정형 3년 이상)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산업기술 등 침해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규범적으로 높은 형량범위를 제시하였다.

4. 양형인자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⁴⁴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447)	사건번호	범죄사실	선고	비고
	수원 2022고합**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하여 중국에 판매하고 관련 기술 유출	4년	영업비밀 침해 경합
			2년6월	
			2년6월/집유 3년	

448)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행위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⁴⁴⁹⁾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전략기술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기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기술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방위산업기술인 경우(1, 3유형) ● 전략기술인 경우(2, 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49)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3.

5. 집행유예 기준

가. 개요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없음’을 삭제하였다. 이는 대부분 초범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계상으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유의미한 집행유예 사유가 아님을 고려한 것이다.⁴⁵⁰⁾ 또한 횡령·배임범죄, 증권범죄 등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다.⁴⁵¹⁾

한편, 대유형 2(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중 제2유형(국내침해), 제3, 4유형(국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였고, 대유형 3(영업비밀 침해행위), 대유형 4(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서는 ‘생계형 범죄’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하였다.⁴⁵²⁾

나. 집행유예 기준표

(1) 영업비밀 침해행위⁴⁵³⁾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 피해 미변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u>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u> ○ <u>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u> ○ 자수, <u>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u>

450) 최형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등,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2. 4.), 22. 단위: 명, %

조사내용	구분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과 없음	아님	수	2	25	27
		비율	7.4	92.6	100.0
	해당	수	10	18	28
		비율	35.7	64.3	100.0

집행유예 비율: 전과 있는 경우 92.6% > 전과 없는 경우 64.3%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유의미한 집행유예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함.

45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5.

452)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5.

45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6-37.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벌금(집행유예 포함)]	<u>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u>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⁴⁵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3,4유형)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벌금(집행유예 포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54)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37.

제4절 기술 유출 범죄 양형의 개선 방향



I. 수정 양형기준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1. 양형인자의 중복 적용 문제

가. 문제의 소재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의 특별양형인자(행위) 중 감경요소로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는 실제 피해가 경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복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

나. 양형기준 정의규정

(1) 실제 피해자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피해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피해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검토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라는 양형인자에 해당할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할 수밖에 없어, 위 두 가지 인자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경쟁사나 국외로 유출되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인자를 중복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다.⁴⁵⁵⁾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 인자로 설정하여 손해 발생의 확대를 방지할 유인은 있지만 중복적용이 허용될 경우 양형 산정이 왜곡될 여지가 존재한다.

조세범죄(일반 조세포탈)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부분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 중복적용 제한 내용을 두고 있다.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4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합812 판결.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적용제한 내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인자

가.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통계상 집행유예에 있어 유의미한 참작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집행유예 참작기준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일반양형인자에는 여전히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감경요소로서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징역형 형량에 대한 통계 분석⁴⁵⁶⁾

(1) 국내침해의 경우

(단위: 명, 월)

조사내용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value
전과 없음		아님	27	9.52	3.65	-0.894	0.375
		해당	28	10.57	4.95		
전과유형 (중복선택)	동종 전과 여부	아님	47	10.19	4.46	-0.253	0.801
		해당	2	11.00	1.41		
	이종 전과 여부	아님	29	10.62	4.87	0.755	0.454
		해당	19	9.63	3.67		

* p<0.05, ** p<0.01, *** p<0.001

456)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2023. 10.), 86, 91: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0.05)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

(2) 국외침해의 경우

(단위: 명, 월)

조사내용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F 또는 t	p-value
전과 없음	아님	2	6.00	2.83	-2.236	0.155
	해당	2	11.00	1.41		
이중 전과 여부	아님	2	11.00	1.41	2.236	0.155
	해당	2	6.00	2.83		

* p<0.05, ** p<0.01, *** p<0.001

(3) 검토

통계상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경우 국내침해와 국외침해 모두에서 전과의 여부가 징역형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다. 검토

통계에 의할 때 전과 여부가 형량에 유의미한 참작사유가 아니고, 대부분의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초범에 의한 범행임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전과의 경우 현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종전과’를 가중요소인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II.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여부

1. 개관

횡령이나 배임,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해 정도는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양형위원회는 현실적으로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심리가 필수적인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민사) 사건에서도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저작권법 제126조 등)을 두고 있고, 상당수의 사안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⁴⁵⁷⁾

기술 유출 범죄는 기술 자체의 무체성에 더하여, 기술 가치 평가의 방법으로 주장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회사의 피해액 산정에는 ‘미래 손실’에 관한 예측⁴⁵⁸⁾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손해액의 산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임을 감안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타당하므로, 단순한 양형인자로서가 아닌, 범죄 유형 분류를 피해액이나 피해규모로서 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는 피해액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고, 기술 유출 피해액 또는 피해규모의 양형기준 반영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2. 비교법적 검토

가. 개요

주요국가 중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형사재판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면서, 그 양형기준에 기술 유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이므로,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 양형가이드라인(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USSG)에서 피해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 실제 재판에서 범죄 피해규모는 어떻게 심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57)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양형위원회(2024. 4.), 10-11.

458) 대검찰청, 기술 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2023. 12.), 5.

나. 형량표(징역개월 수)

범죄 단계	범죄 이력 항목 (범죄 이력 점수)					
	I (0 또는 1)	II (2또는 3)	III (4, 5, 6)	IV (7, 8, 9)	V (10, 11, 12)	VI (13 이상)
구역A	1	0-6	0-6	0-6	0-6	0-6
	2	0-6	0-6	0-6	0-6	1-7
	3	0-6	0-6	0-6	2-8	3-9
	4	0-6	0-6	2-8	4-10	6-12
	5	0-6	1-7	4-10	6-12	9-15
	6	0-6	2-8	6-12	9-15	12-18
	7	0-6	4-10	8-14	12-18	15-21
	8	0-6	6-12	10-16	15-21	18-24
구역B	9	4-10	8-14	12-18	18-24	21-27
	10	6-12	10-16	15-21	21-27	24-30
	11	8-14	12-18	18-24	24-30	27-33
구역C	12	10-16	5-21	21-27	27-33	30-37
	13	12-18	18-24	24-30	30-37	33-41
구역D	14	15-21	21-27	27-33	33-41	37-46
	15	18-24	24-30	30-37	37-46	41-51
	16	21-27	27-33	33-41	41-51	46-57
	17	24-30	30-37	37-46	46-57	51-63
	18	27-33	33-41	41-51	51-63	57-71
	19	30-37	37-46	46-57	57-71	63-78
	20	33-41	41-51	51-63	63-78	70-87
	21	37-46	46-57	57-71	70-87	77-96
	22	41-51	51-63	63-78	77-96	84-105
	23	46-57	57-71	70-87	84-105	92-115
	24	51-63	63-78	77-96	92-115	100-125
	25	57-71	70-87	84-105	100-125	110-137
	26	63-78	78-97	92-115	110-137	120-150
	27	70-87	87-108	100-125	120-150	130-162
	28	78-97	97-121	110-137	130-162	140-175
	29	87-108	108-135	121-151	140-175	151-188
	30	97-121	121-151	135-168	151-188	168-210
	31	108-135	135-168	151-188	168-210	188-235
	32	121-151	151-188	168-210	188-235	210-262
	33	135-16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34	151-188	188-235	210-262	235-293	262-327
	35	168-210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6	188-235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7	210-262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8	235-293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9	262-327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40	292-36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1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2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3	life	life	life	life	life

범죄단계(1~43)는 형량표의 수직축을 구성한다. 범죄이력(I~VI)은 형량표의 수평축을 구성한다. 범죄단계와 범죄이력 항목이 교차하는 부분은 판결 선고의 징역 개월 수의 범위를 보여준다. “Life”란 무기징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범죄단계가 15이고 범죄이력 항목 III인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형량 범위는 징역 24개월 내지 30개월이다. 드문 경우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범죄단계가 1 이하이거나 43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단계가 1이하이면 범죄단계 1로, 43 이상의 범죄단계는 범죄단계 43으로 취급한다. 한편, 범죄이력 항목은 USSG 4장 Part A의 총 범죄이력 점수로 결정한다. 단, §§ 4B.1(상습범죄자)와 4B1.4(무장상습범죄)는 예외로 한다.

다. 기술 유출 범죄 부분

(1) 적용 범죄군

USSG II장 B절은 기본적인 경제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경제적 약탈을 범죄의 구성요소에 포함한 총 6종류의 범죄 중에서도 첫 번째로 구분된 종류는 절도, 횡령, 장물의 수취, 재물손괴, 사기죄이고, 그중에서도 2B.1.1에서 “절도, 횡령 등 다른 형식의 절도, 장물 관련 범죄, 재물손괴죄, 사기와 기망, 위조죄, 위조 무기명 수표를 제외하고 위조나 변조 수표 관련 범죄”를 다루어 영업비밀절도죄를 2B1.1에 포함하고 있다.

(2) 범죄단계의 조정

(가) 손실규모에 따른 범죄단계의 상향

영업비밀절도죄의 기본 범죄단계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가 형법상 2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경우 7등급, 그렇지 않은 경우 6등급이다. 범죄로 인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범죄단계가 조정된다.

[표 41] USSG 손실규모에 따른 범죄단계 상향

손실 (최대 금액 적용)	단계 상향 조절
(A) \$6,500 이하	상향 없음
(B) \$6,500 이상	2단계 상향
(C) \$15,000 이상	4단계 상향
(D) \$40,000 이상	6단계 상향
(E) \$95,000 이상	8단계 상향
(F) \$150,000 이상	10단계 상향
(G) \$250,000 이상	12단계 상향
(H) \$550,000 이상	14단계 상향
(I) \$1,500,000 이상	16단계 상향
(J) \$3,500,000 이상	18단계 상향
(K) \$9,500,000 이상	20단계 상향
(L) \$25,000,000 이상	22단계 상향
(M) \$65,000,000 이상	24단계 상향
(N) \$150,000,000 이상	26단계 상향
(O) \$250,000,000 이상	28단계 상향
(P) \$550,000,000 이상	30단계 상향

(나) 기타 범죄단계 상향 사유

범죄로 인한 손실규모 외에 범죄단계를 상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최대치 적용) 범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 (i) 피해자가 10명 이상이거나, (ii) 대량 마케팅(mass-marketing)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또는 (iii) 1인 이상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 (B) 5인 이상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 (C) 25인 이상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단계 상향 조절한다.

(3) 다른 사람에 대한 절도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4) 장물 수취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장물을 수취하고 판매한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5) 국립묘지 또는 전쟁기념관 재물의 절도, 피해, 파손, 밀매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6) (A) 피고인이 18 U.S.C. § 1037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및 (B)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7) (A) 피고인이 정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방 의료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및 (B) 정부의 의료보전 프로그램 (b)(1)항에 의거한 손실이 (i) \$1,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상향 조절하거나, (ii) \$7,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3단계 상향 조절하거나, 또는 (iii) \$2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4단계 상향 조절한다.

(8) (최대치 적용) 다음의 경우에,

(A) 18 U.S.C. § 670에 기술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B) 18 U.S.C. § 670에 기술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및 피고인이 사전 판매 의약품의 공급망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또는 대리점이었던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9) (A) 피고인이 자선, 교육, 종교 또는 정치 단체나 정부 기관을 대리했다는 허위진술, (B) 파산 절차 중 허위진술이나 기타 사기 행위, (C) 이전의 구체적인 사법 명령이나 행정 명령, 금지명령, 판결 또는 가이드라인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절차의 위반, 또는 (D) 고등교육기관에 필요한 금융 지원 확보, 제공 또는 알선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에 대한 허위진술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0 이하인 경우, 10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0) (A) 피고인이 법 집행이나 규제 공무원을 피하기 위해 사기 모의를 다른 관할지역으로 옮겼거나 또는 옮기는 작업에 참여하였거나, (B) 사기 모의의 상당 부분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C) 범죄가 교묘한 수단과 연관되었고 피고인이 교묘한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행하였거나 이를 유발한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2 이하인 경우, 12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1) 범죄가 (A) 장치 제조 장비의 보유나 사용 또는 인증 기능, (B) (i) 불법 접속 장치나 위조 접속 장치 또는 (ii) 인증 기능, 또는 (C) (i) 불법적으로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을 이용하여 만들었거나 (ii) 입수한 5개 이상의 신원 확인 수단의 보유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2 이하인 경우, 12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2) 18 U.S.C. § 1040에 기술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2 이하인 경우, 12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3) 피고인이 42 U.S.C. § 408(a), § 1011(a) 또는 § 1383a(a)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2 이하인 경우, 12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4) (최대치 적용) 영업비밀의 탈취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다음의 사항을 알았거나 의도한 경우,

(A) 영업비밀이 미국 밖으로 유출 또는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의도한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B) 범죄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또는 외국 대리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의도한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상기 (B)항이 적용되고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4 이하인 경우, 14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5) (A) 운송수단이나 운송수단의 부품 또는 (B) 선적 화물의 일부인 상품이나 동산(動産) 일체를 훔치거나 그 장물을 수취하는 조직적 모의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4 이하인 경우, 14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6) (A)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인지한 위협이나 이를 무시하는 무모한 위협, 또는 (B) 범죄와 연관되어 위험한 무기(총기류 포함)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14 이하인 경우, 14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7) (최대치 적용) 다음의 경우에,

(A) 피고인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1,000,000 이상을 빼돌리는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B) 범죄가 (i)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상당히 훼손했거나, (ii) 범죄실행 중 언제라도 (I) 공개 기업이었거나 또는 (II) 1,000명 이상이 직원이 있었던 회사의 유동성이나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위협에 빠뜨린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C) (b)(2)항 및 (b)(17)(B)항의 누적 조절 결과는 8단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D)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A)항 또는 (B)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범죄 단계가 24 이하인 경우, 24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18) (A) 피고인이 18 U.S.C. § 1030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B) 개인 정보의 불법 공개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19) (A) (최대치 적용) 피고인이 다음의 사항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 18 U.S.C. § 1030 및 주요 인프라의 유지나 운영에 사용되었거나 정의 실현, 국방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 기관이 사용하였거나 정부 기관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단계 상향 조절한다.

(ii) 18 U.S.C. § 1030(a)(5)(A)의 경우, 4단계 상향 조절한다.

(iii) 18 U.S.C. § 1030 및 주요 인프라의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경우, 6단계 상향 조절한다.

(B) (A) (iii)이 적용되고 범죄 단계가 24 이하인 경우, 24단계까지 상향 조절한다.

(20) 다음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A) 증권법을 위반하고, 범죄 시점에 피고인이 (i) 공개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ii) 등록된 브로커나 딜러 또는 브로커나 딜러와 연관된 자, 또는 (iii) 투자자문업체나 이와 연관된 자

(B) 선물법을 위반하고, 범죄 시점에 피고인이 (i) 선물중개업체 또는 투자권유 대행업체의 임원이나 이사, (ii) 선물거래자문업체, 또는 (iii) 선물투자운용사, 4단계 상향 조절한다.

(c) 상호 참조

(1) (A) 총기류, 파괴력이 높은 무기 또는 관리 물질을 취득하였거나 이러한 품목의 취득이 범죄의 목적이었거나, (B) 수취, 운반, 양도, 전송 또는 소지한 장물이 총기류, 파괴력이 높은 무기, 폭발 물질 또는 관리 물질인 경우, § 2D1.1(불법 제조, 수입, 수출 또는 밀매(해당 범죄를 실행할 의도가 있는 소지 포함), 시도 또는 모의, § 2K1.3(폭발 물질의 불법 수취, 소지 또는 운반, 폭발 물질과 관련이 있는 금지된 거래), 또는 § 2K2.1(총기류나 탄약의 불법 수취, 소지 또는 운반, 총기류나 탄약과 관련이 있는 금지된 거래)을 적절하게 적용한다.

(2) 방화, 폭발물 사용에 의한 재물 피해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위에서 확인한 단계보다 높으면 § 2K1.4(방화, 폭발물 사용에 의한 재물 피해)을 적용한다.

(3) (A) 상기 (1)항이나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B)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허구

의 또는 사기적인 확인이나 진술을 금지하는 법(예: 18 U.S.C. § 1001, § 1341, § 1342 또는 § 1343)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C) 유죄 판결 소인(訴因)에 명시된 행위가 제2장(범죄 행위)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4) 문화유산 자원이나 고생물학 자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이로 인한 범죄 단계가 위에서 확인한 단계보다 높으면 § 2B1.5(문화유산 자원이나 고생물학 자원의 절도, 피해, 파괴, 문화유산 자원이나 고생물학 자원의 불법 판매, 구매, 교환, 운반 또는 수취).

라. 손실에 관한 주석 내용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USSG § 2B.1.1의 주석(commentary)에서 설명하고 있는 ‘손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⁵⁹⁾

3. 하위 조항 (b)(1)⁴⁶⁰⁾에 의거하는 손실. 본 적용 사항은 하위 조항 (b)(1)에 의거하는 손실 결정에 적용된다.

(A) 일반 규칙. 하위 조항 (D)를 제외하면, 손실은 실제 손실이나 의도한 손실 중 피해가 더 큰 손실을 적용한다.

- (i) 실제 손실. “실제 손실”이란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를 의미한다.
- (ii) 의도한 손실. “의도한 손실”이란 (I)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입히려고 한 재정상 피해를 의미하고, (II) 여기에는 발행할 수 없었거나 가능성이 적은 의도된 재정상 피해(예: 정부의 함정 수사 또는 청구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 사기)가 포함된다.
- (iii) 재정상 피해. “재정상 피해”란 금전적인 피해 또는 달리 화폐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피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상 피해에는 정신적 고통, 명성 훼손 또는 기타 비(非)경제적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iv)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란 피고인이 범죄의 잠재적 결과를 알았거나 또는

459) Guidelines Manual,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November 1, 2023), 92-96.

460) 손실규모에 따른 범죄단계 상향표.

상황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재정상 피해를 의미한다.

- (v) 특정한 경우의 해석 규칙. 하위 조항 (I)~(III)에 기술된 경우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정상 피해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I) 제품 대체의 경우. 제품 대체 범죄의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도된 제품의 대체 거래, 취급, 처리 비용 또는 의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 개장(改裝) 비용, 제품 대체로 인한 피해자 사업 운영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중단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된다.
- (II) 조달 사기의 경우. 낙찰 방어에 영향을 주는 사기와 같은 조달 사기의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정상 피해에는 영향을 받은 조달 행위를 반복 또는 시정하는 정부나 기타 참가자들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정 비용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제품이나 서비스 조달을 위한 추가 비용이 포함된다.
- (III) 18 U.S.C. § 1030에 의거하는 범죄. 18 U.S.C. § 1030에 의거하는 범죄의 경우, 재정상 피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손실에는 다음과 같은 재정상 피해가 포함된다. 범죄에 대한 대응, 피해 산정, 데이터나 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정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 수익 손실, 발생 비용,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기타 피해가 포함된다.

(B) 이익금. 법원은 손실은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로 인한 이익금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한다.

(C) 손실 예상. 법원은 단지 손실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뿐이다.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증거를 평가하고 해당 증거에 기반한 손실을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손실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8 U.S.C. § 3742(e) 및 (f) 참고.

손실 예상치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바 대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다.

- (i) 불법적으로 취득, 복사 또는 파손한 재물의 공정시장가액 또는 공정시장가액으로 피해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피해 측정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재물을 교체하

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

- (ii) 독점 정보(예: 영업비밀)의 경우, 해당 정보의 개발 비용 또는 범죄로 인한 해당 정보의 가치 하락.
- (iii) 피해를 입은 재물의 수리 비용.
- (iv)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인원수와 이를 각 피해자의 평균 손실로 곱한 금액.
- (v) 범죄로 인한 지분 증권이나 기타 법인 자산의 가치 하락.
- (vi) 범죄의 범위와 기간 및 유사한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 한층 일반적인 요인.

(D) 손실에서 제외. 다음의 사항은 손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i) 모든 종류의 이자, 금융 비용, 연체료, 위약금, 합의한 수익이나 수익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ii) 범죄의 기소 및 형사 수사에서 피해자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및 1차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

(E) 손실 보전. 다음의 사항만큼 손실은 경감된다.

- (i)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들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및 반환된 재물과 제공한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액. 범죄 발각 시점은 (I) 피해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범죄가 확인된 시점 또는 (II)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범죄가 발각되었거나 발각될 것으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던 시점 중 먼저 해당하는 시점이다.
- (ii)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달리 제공한 경우, 담보 처리 후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 또는 해당 시점까지 담보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점에 담보의 공정시장가액.
- (iii) 상기 (ii)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과 관련이 있는 사기의 경우, 판결 선고 시점까지 담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 재판 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이나 부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 기준의 담보의 공정시장가액을 활용한다.

이러한 경우, 담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세평가액이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인 예상치라는 일응추정(一應推定)이 존재한다. 가장 최근의 조세평가액이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인 예상치인지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요인 중 특히 조세평가의 최근성 및 관할지역의 조세평

가에 공정시장가액과 관련이 없는 요인들을 반영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F) 특별 규칙. 하위 조항 (A)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경우에 손실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별 규칙을 이용한다.

- (i) 훔쳤거나 위조한 신용카드 및 접속장치, 훔친 번호와 코드. 위조 접속 장치 또는 불법 접속 장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손실에는 위조 접속 장치 또는 불법 접속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한 미(未)승인 수수료가 포함되고, 이는 접속 장치 개당 \$5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접속 장치가 특정의 통신 시스템이나 계정(전자 일련번호/모바일 식별 번호(ESN/MIN) 쌍)을 식별하는 수단이고 범죄 실행 중에는 해당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보유만 한 경우, 손실은 미(未)사용 수단 개당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조 접속 장치”와 “불법 접속 장치”는 적용 사항 10A에서 해당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 (ii) 정부 혜택. 정부 혜택(예: 보조금, 대출금, 복지후생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손실은 상황에 따라 의도하지 아니한 수취인이 누렸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용도로 전환된 혜택의 가치 이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100의 가치가 있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 수령 대상자였으나 이를 속여서 \$150의 가치가 있는 푸드 스탬프를 받은 경우, 손실은 \$50이다.
- (iii) 데이비스-베이컨법 위반. 데이비스-베이컨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 40 U.S.C. § 3142를 위반하고, 18 U.S.C. § 1001에 의거하여 형사 기소된 경우), 혜택의 가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임금과 실제 지불된 임금의 차이 이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 (iv) 폰지(Ponzi) 및 기타 사기 투자 모의. 폰지와 같은 투자 사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손실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해당 투자자에게 양도된 재물의 금액이나 가치만큼 경감되지 아니한다(즉, 사기에 이용한 개인 투자자의 이익금은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다).
- (v) 기타 불법적인 허위표시. (I) 허가를 받은 전문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사기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정부규제기관에서 상품을 승인한 것처럼 상품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III) 정부기관의 규제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기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상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손실에는 양도, 제공 또는 허위로 표시된 재물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지불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치만큼

보전되지 아니한다.

- (vi) 관리 물질의 가치. 관리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손실은 관리 물질의 예상 시가(市價)이다.
- (vii) 문화 유산 자원 또는 고생물학 자원의 가치. 문화 유산 자원이나 고생물학 자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자원이 입은 손실은 § 2B1.5의 주석 적용 사항 2에 명시된 “자원의 가치” 결정을 위한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 (viii) 정부 의료보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연방 의료보전 범죄. 피고인이 정부 의료보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연방 의료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정부 의료보전 프로그램에 제출된 허위 청구서 총액은 의도한 손실액의 ‘일단의 증거’ 즉, 반박이 없으면 의도한 손실이 충분하게 성립되는 증거를 구성한다.
- (ix) 증권이나 상품 가치의 사기적 확대 또는 축소.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이나 상품 가치의 사기적인 확대나 축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실 결정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당 방법은 증권이나 상품의 가치 변동의 사유가 되는 실제 손실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방법이다.
 - (I) 사기가 발생한 시기 동안 증권이나 상품의 평균 가격과 사기가 시장에 공개된 후 90일 동안 증권이나 상품의 평균 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 (II) 평균 가격의 차이를 유통 주식 수로 곱한다.

이렇게 결정한 금액이 증권이나 상품의 가치 변동의 사유가 되는 실제 손실의 합리적인 예상치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요인 중 특히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범죄로 인하지 아니한 가치의 상당한 변동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즉, 경제 환경의 변동, 투자자 기대치의 변동, 업계 또는 기업 중심의 사실, 여건 또는 사건 등 시장의 외적 힘에 의해 초래된 변동 사항).

USSG에 의할 때, 손실은 실제 손실(Actual Loss)과 의도된 손실(Intended Loss) 중 더 큰 것으로 하되, 법원은 손실은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금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 손실규모의 심리

(1) 양형기준상 손실평가에 관한 주석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USSG § 2B.1.1의 주석(commentary)은 법원의 손실규모 판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⁴⁶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손실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선고하는 판사는 증거를 평가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손실 규모 결정은 적절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실의 추정은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바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i) 불법적으로 취득, 복사 또는 파손한 재물의 공정 시장가액 또는 공정 시장가액으로 피해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피해 추정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재물을 교체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 (ii) 독점정보(예: 영업비밀)의 경우 해당 정보의 개발 비용 또는 범죄로 인한 해당 정보의 가치 하락, (iii) 피해를 입은 재물의 수리 비용, (iv)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인원수와 이를 각 피해자의 평균 손실로 곱한 금액, (v) 범죄로 인한 지분 증권이나 기타 법인 자산의 가치 하락, (vi) 범죄의 범위와 기간 및 유사한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 한층 일반적인 요인 등이다.

한편, 손실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i) 모든 종류의 이자, 금융 비용, 연체료, 위약금, 합의한 수익이나 수익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ii) 범죄의 기소 및 형사수사에서 피해자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및 1차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다.

또한 (i)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들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및 반환된 재물과 제공한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액은 손실에서 감액되는데, 범죄 발각 시점은 (I) 피해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범죄가 확인된 시점 또는 (II)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범죄가 발각되었거나 발각될 것으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던 시점 중 먼저 해당하는 시점이다. (ii)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달리 제공한 경우, 담보 처리 후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 또는 해당 시점까지 담보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점에 담보의

461) Guidelines Manual,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November 1, 2023), 93-96.

공정시장가액 역시 손실에서 감액된다. (iii) 상기 (ii)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과 관련이 있는 사기의 경우, 판결 선고 시점까지 담보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 재판 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이나 부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 기준의 담보의 공정시장가액을 활용한다. 이러한 경우, 담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세평가액이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인 예상치라는 일응추정(一應推定)이 존재한다. 가장 최근의 조세평가액이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인 예상치인지 결정할 때, 법원은 여러 요인 중 특히 조세평가의 최근성 및 관할지역의 조세평가에 공정시장가액과 관련이 없는 요인들을 반영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2) 심리방법

연구책임자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방첩 및 수출통제과(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 미국 연방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 미국 D.C.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을 방문하여 기술 유출 범죄의 손실규모 심리에 관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하 관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다.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 및 수출통제과 인터뷰

- 일시: 2024. 9. 9.(월) 11:00~13:00
- 참석자: Matthew J. McKenzie(Deputy Chief, 방첩 및 수출통제과 부과장), Nic Hunter(Trial Attorney, 공판검사), Nathan Swinton(Senior Counsel to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법무차관보 수석자문역)
- 관련 내용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한 손실(intended loss)이다. 그런데 손실액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판사들은 위 손실액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의도된 손실액을 산정할 때는 그 기술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비용과 피고인의 의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실패하여 실제 발생된 손실액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의도한 손실액을 증명하면 양형기준의 손실액으로서 기능한다. 주로 제출되는 양형증거로는 계약서, 홍보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연방양형위원회 인터뷰

- 일시: 2024. 9. 9.(월) 14:30~16:00
- 참석자: Candice C. Wong(연방양형위원), Scott A.C. Meisler(연방양형위원), Matt Iaconetti(법무자문실 부실장), Sydnee Fielkow(법무자문실 변호사)
- 관련 내용
형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실인데,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재판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다툼이 있다. 손실액 산정은 실제 손실액, 의도된 손실액, 예상 손실액 중 높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⁴⁶²⁾ 손실액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손실액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증명이면 충분하다.

D.C. 연방지방법원 인터뷰

- 일시: 2024. 9. 9.(월) 16:30~17:40
- 참석자: Judge Christopher R. Cooper(D.C. 연방지방법원 판사), Judge Jennifer Choe-Groves(연방국제무역법원 판사)
- 관련 내용
손실액 판단에 있어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진다. 기술침해로 의도한 손실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손실액 결정방식인데, 통상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한다. 판사는 기술 유출 범죄의 손실액 산정에 있어 선고 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 PSR) 내용을 참고한다.

한편,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32조 (d) 내지 (g)항은 손실액 내용을 포함하는 선고 전 조사보고서(PSR)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32조 양형과 선고(Sentencing and Judgement)

(d) 선고 전 조사보고서 (Presentence Report)

462) 언더커버 수사 등으로 범죄가 실현되기 전에 검거하는 경우에는 예상 손실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함.

(1) 권고 양형 기준의 적용

선고 전 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모든 해당하는 양형 지침과 양형위원회의 정책 진술을 식별할 것.
- (B) 피고인의 범죄 수준(offense level)과 범죄 기록 범주(criminal history category)를 계산할 것.
- (C)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범위 및 가능한 형벌의 종류를 명시할 것.
- (D) 다음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식별할 것:
 - (i) 적합한 형벌의 종류, 또는
 - (ii) 해당 형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
- (E) 해당 형량 범위에서 벗어나는 근거를 식별할 것.

(2) 추가 정보

선고 전 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 (A) 피고인의 이력 및 특성:
 - (i) 모든 이전의 범죄 기록,
 - (ii) 피고인의 재정 상태,
 - (iii) 형량 결정이나 교정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 (B)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의료적 영향을 평가하는 정보.
- (C) 적절한 경우, 피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비구금(nonprison) 프로그램 및 자원의 성격과 범위.
- (D) 법에서 배상 명령을 제공할 경우, 배상 명령을 위한 충분한 정보.
- (E) 법원이 18 U.S.C. §3552(b)에 따라 연구를 명령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 보고서 및 권고 사항.
- (F) 정부가 Rule 32.2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몰수(forfeiture)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진술.
- (G) 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18 U.S.C. §3553(a)하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

(3) 제외사항

선고 전 조사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

- (A) 공개될 경우 재할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진단 내용.
- (B) 비밀 유지 약속을 통해 얻은 정보의 출처.
- (C) 공개될 경우 피고인이나 기타 사람들에게 신체적 또는 기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e) 보고서와 권고안의 공개

(1) 공개 시기

피고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관은 선고 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피고인이 유죄 또는 노로 콘텐츠레(nolo contendere, 죄를 부인하지 않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로 답변하거나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최소 고지 기간

보호관찰관은 선고 최소 35일 전에 선고 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그리고 정부의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최소 기간을 포기할 경우는 예외이다.

(3) 형량 권고

지역 규칙이나 특정 사건의 명령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형량에 대한 권고안을 법원 외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f) 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 기간

선고 전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 정보, 양형 지침 범위, 정책 진술 등을 포함하여 이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2) 이의 통보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상대방과 보호관찰관에게 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이의에 대한 조치

보호관찰관은 이의를 받은 후, 당사자들과 만나 이의를 논의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후 추가 조사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고 전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g) 보고서 제출

보호관찰관은 선고 최소 7일 전에 선고 전 조사보고서와 부록을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의, 이의의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기술 유출 범죄의 형량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손실액에 따라 범죄단계가 달라지므로 손실액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판사는 손실액 산정을 포함한 양형 전반에 관하여 연방보호관찰관(U.S. Probation Officer)이 작성하는 선고 전 조사보고서(PSR)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는 비공개 자료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미국에서 기술 유출 범죄의 손실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 의도된 손해, 이익금(손해가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를 손실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으며 엄격한 증명이 아닌 합리적 증명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손해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분류한다고 할 경우 이를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바. 사례 검토(2022. 11. 21. 선고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Ohio, U.S. v. Yanjun Xu)⁴⁶³⁾

(1) 사실관계⁴⁶⁴⁾

피고인은 2003년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입직하여 부국장까지 오른 정보요원으로, 2013. 12.부터 항공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알려진 미국과 해외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사 및 대학을 활용하여 항공 업계 직원을 속이고 학회 발표나 여행 명목으로 기업의 직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비용을 제공하였다. 초대한 항공 업계 직원들이 MSS 요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다른 요원들과 함께 호텔 객실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복제하였다.

한편, 피해회사 GE Aviation이 독점 개발한 복합 항공기 엔진 팬 모듈 기술의 탈취를 위하여 2017. 3. 피해회사의 직원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관련 기술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FBI는 피해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 시스템 사양 및 설계프로세스 정보를 요청하고, 나아가 2018. 2. 유럽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하면서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의 파일 디렉토리 사본을 요구하였다.

463)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2024. 6. 24.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에서 원심의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 <https://www.justice.gov/usao-sdoh/pr/court-appeals-affirms-conviction-prison-sentence-chinese-government-intelligence> (2024. 12. 19. 확인).

464) <https://www.justice.gov/opa/pr/chinese-government-intelligence-officer-sentenced-20-year-prison-espionage-crimes-attempting> (2024. 12. 19. 확인).

이후 피고인은 2018. 4. 1. 벨기에에서 미국과 벨기에 경찰과의 공조로 체포되었으며 미국에 송환되어 피해회사 소재지 관할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기소된 죄명은 ① 경제스파이 활동 공모[18 U.S.C. §1831 (a)(5)], ② 영업비밀 절도 공모[18 U.S.C. §1832 (a)(5)], ③ 경제스파이 시도[18 U.S.C. §1831 (a)(1), (a)(4)], ④ 영업비밀 절도 시도[18 U.S.C. §1832 (a)(1), (a)(4)] 등 4건이었다.

2021. 11. 5. 기소된 4건 죄명 모두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되었다.

(2) 양형 판단⁴⁶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스파이 모의 또는 시도는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에서 절도죄 항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 범죄단계는 6에서 시작한다.

재판 진행 중 2022. 4. 13. 선고 전 조사보고서(PSR)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의 범죄가 모의 및 시도에 이르렀을 뿐 실제 탈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단계의 계산은 법원에서 산정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PSR에 기재된 의도된 손실(intended loss), 즉 기술탈취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났을 손실액인 9,800만 달러를 피해액으로 산정할 경우 기본 범죄단계에서 24단계나 선고기준이 상향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PSR 기재 손실액인 9,800만 달러에서 감액하여 최종 손실액을 5,000만 달러로 판시하였고,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단계를 22단계 상향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오용이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라 43단계가 추가되고, 위반행위가 정교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2단계 추가되며, 피고인이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범죄를 이행한 경우로 3단계가 추가되었다.

총 범죄단계는 37단계에 이르며, 범죄전력을 고려하였을 경우 양형범위는 235개월에서 293개월인데, 검사는 300개월을 구형하였고, 판사는 최종 24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 근거는 PSR에 기재되어 있으나 PSR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피해액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PSR 기재 손실액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판사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465) 최지연,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3. 5.), 40-41.

있었던 의도된 피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입히려는 손실을 의미한다면 이 경우 개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PSR에 기재된 9,800만 달러에서 일부 조정하여 5,000만 달러로 손실액을 확정된 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다.

3. 검토 및 제언

가. 기술 유출 범죄 피해액의 반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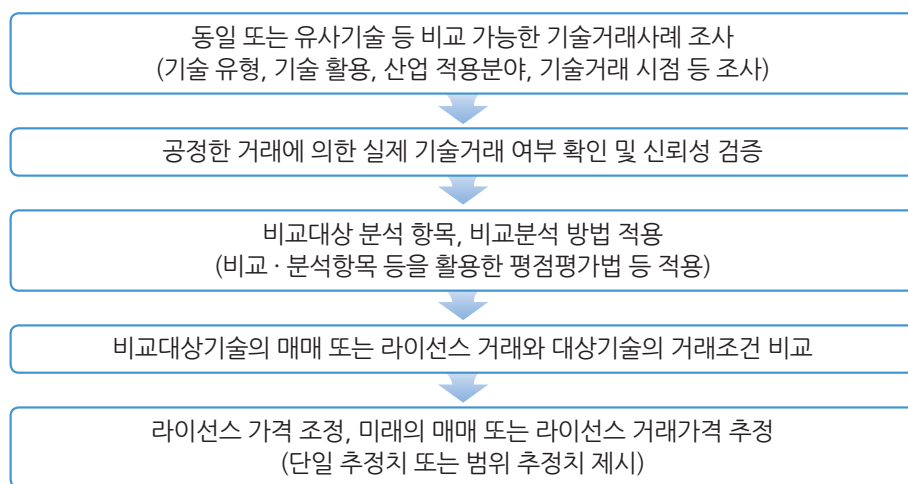
(1) 현행 기술가치평가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4호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은 제1장 제1절에 기술가치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원이 위 기술가치평가 모델에 따라 산정된 영업비밀의 가치를 침해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가)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과 거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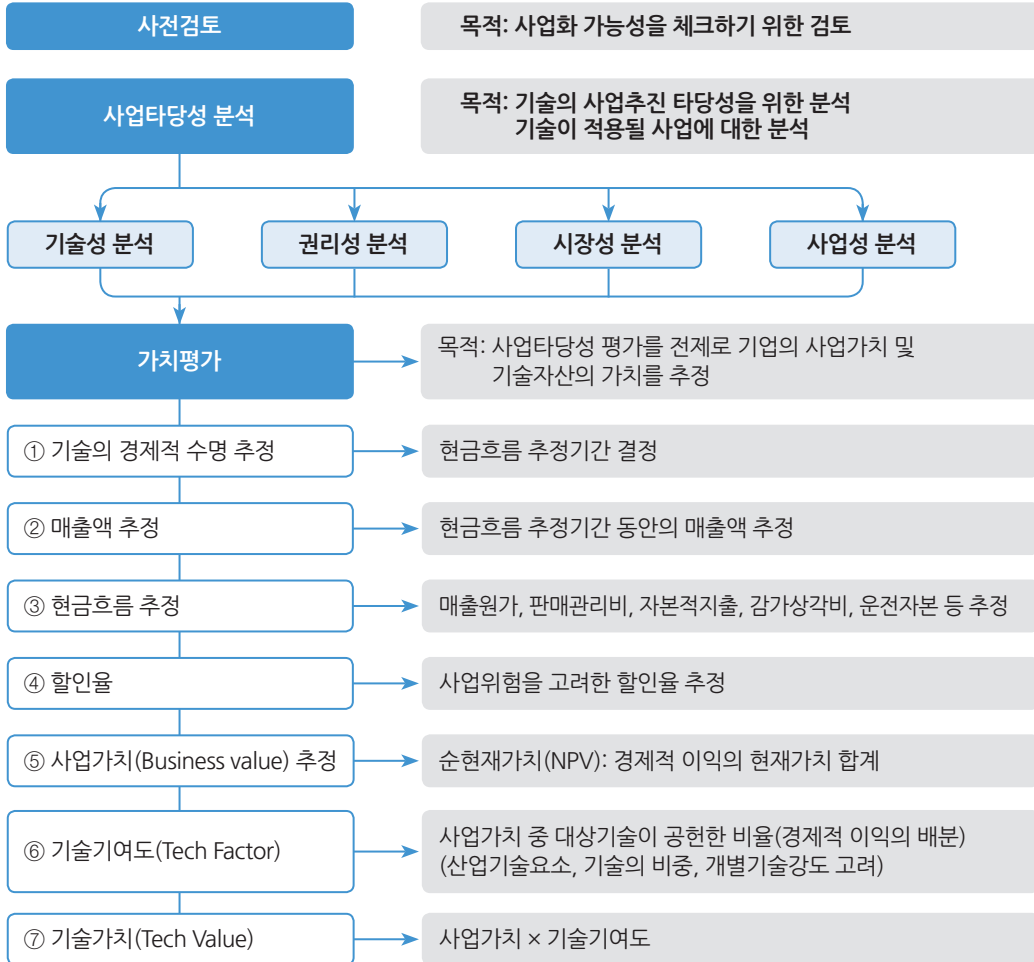
[그림 17] 시장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⁴⁶⁶⁾



466)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실무가이드(2021. 2. 26.), 27.

(나)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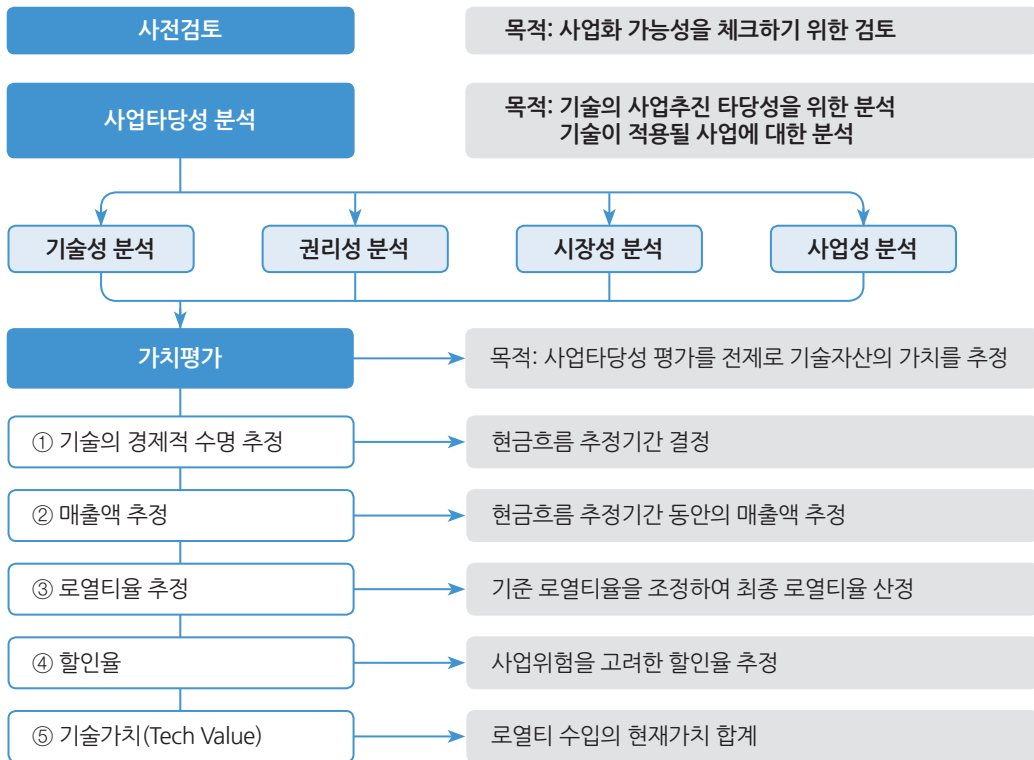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8조).

[그림 18]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⁴⁶⁷⁾

467)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실무가이드(2021. 2. 26.), 29.

(다) 수익접근법(로열티공제법)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비교 가능한 기술이 존재하여야 한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그림 19]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⁴⁶⁸⁾

(라) 원가접근법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9조).

468)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실무가이드(2021. 2. 26.), 32.

[표 42] 원가접근법의 종류 및 방법⁴⁶⁹⁾

구분	고려사항	내용
역사적 원가법	과거 투입비용 항목	• 항목 구분 내역은 그대로 인정
	과거 투입비용	• 과거에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 대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비용을 가능하면 항목 별로 확인 • R&D 사업 등에서 대상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 R&D 투입비용에서 대상기술의 비중을 이용하여 재산정
	가치의 감소분	• 기능적 진부화 및 경제적 진부화로 인한 가치의 감소분을 차감
	기회비용	• 개발비용을 대상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인해 여타 기회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하는 이익의 크기
재생산 원가법	과거 투입비용 항목	• 항목 구분 내역은 그대로 인정
	평가 시점에 재생산할 경우 예상 투입비용	• 대상기술을 재생산하기 위해 평가 시점에 제반 비용항목을 재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금액 • 단, 특정 비용항목이 과거에는 투입되었으나 평가 시점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평가 시점에 대체 투입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금액 산정
	가치의 감소분	• 기능적 진부화 및 경제적 진부화로 인한 가치의 감소분을 차감
	기회비용	• 개발비용을 대상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인해 여타 기회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하는 이익의 크기
대체 원가법	투입비용 항목	• 대상기술의 효용을 재생하기 위한 투입비용 항목 선정
	대체원가 산정	• 평가시점에서 대상기술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 산정
	가치의 감소분	• 현재 입수 가능한 원재료, 생산방법, 디자인 등의 적용 가능
	기회비용	• 기능적 진부화 및 경제적 진부화로 인한 가치의 감소분을 차감
가치의 감소분	기능적 진부화	• 개발비용을 대상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인해 여타 기회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하는 이익의 크기
	경제적 진부화	• 기술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의 진부화율을 통해 환산 가능

469)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실무가이드(2021. 2. 26.), 34.

(2) 양형기준 범죄 유형의 분류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의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3] 횡령·배임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도 횡령·배임죄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경제범죄이고, 1차적으로는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규모나 경제적 이득액이 주요 양형인자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수정 양형기준에도 피해규모는 양형인자로만 들어갔을 뿐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과 같이 양형기준 적용 범죄 유형을 손해액 내지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보다는 피해액이나 이득액 규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영업비밀의 기밀성 및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정보의 거래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미래 수익 예측 과정과 사업의 결과물에서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모두 예측 변수인 점, 현재까지 법원이 앞서 본 기존 기술가치평가 모델(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에 따라 산정된 영업비밀의 가치를 침해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미국과 같이 영업비밀의 연구 및 설계비용, 영업비밀의 재생산 비용을 가치로 인정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모색함이 필요하다.⁴⁷⁰⁾ 또한 양형심리로 인한 공판절차의

470) 양재석,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개선방안 공동콘퍼런스 자료집 발표문(2024. 12. 18.), 100.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액 내지 이득액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충실하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피해규모나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 주요 증거방법으로 전문가 증인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피해규모나 이득액의 심리를 위해 전문가나 전문가집단을 통한 감정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 등 기존에 있는 가치평가 기관⁴⁷¹⁾에 관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전문 평가기관을 새로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 주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은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사건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경제적 가치평가 모델 마련 등의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⁴⁷²⁾

471) 양재석,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개선방안 공동콘퍼런스 자료집 발표문(2024. 12. 18.), 101: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수행 주체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공공 8개 기관과 민간 25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현황]

구분	평가기관	구분	평가기관
공공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간	(주)나이스디앤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농협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민은행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미특허법인
	한국산업은행		주원아이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하나은행
민간	(주)유플스		특허법인 시공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알피엠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영비
	나이스평가정보(주)		특허법인 해안
	(주)이크레디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특허법인 도담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주)케이티지		(주)제이디리서치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술신용평가(주)
			한국특허평가(주)

472) 양재석, 기술 유출 대응방안 정책 현황 및 방향, 특허청(2024. 12. 18.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발표문), 16.

나. 현행 기술 유출 범죄 판결 양형의 이유 실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

(1) 유리한 정상 관련

기술 유출 범죄 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손실의 구체적인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점”, “손해액을 추정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해당행위가 피해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회사의 산술적인 피해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해회사가 입은 손실 내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인 규모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재산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 피해액, 손실액, 이득액을 실시한 판결을 찾아볼 수 없고,⁴⁷³⁾ 이는 실제 법원이 인정할 만한 피해액 등의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피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불리한 정상 관련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을 비판하는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수사기관은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하고 수사 및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 기술유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해 내지 손실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언론은 그 금액을 인용하면서 기업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법원의 양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취지로 흐른다.⁴⁷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액 내지 손실액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 양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액 내지 손실액의 금액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하더라도 기록에 의한

473) 박형관,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보고서(2023. 4.), 42: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판결 774건 분석 결과임.

474) 헤럴드경제, “기술 훔쳐 710억 쟁겨도 고작 4년형...엄벌로 경고해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089816> (2025. 1. 2. 확인); 서울경제, “국가기술 5년간 25兆 훔쳐도...쫓잡은 ‘집유’”,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37H3YJL> (2025. 1. 2. 확인).

때 그 피해규모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피해규모가 큰 경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피해회사가 유출된 영업비밀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결에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제8장
결론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기술 선도국으로, 기술 유출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로, 경쟁국이나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술 유출 범죄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기술 유출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노리는 내부 및 외부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의욕을 저하시켜 국가의 기술 혁신 역량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출된 기술이 경쟁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하거나, 심지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방위산업 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범정부 차원의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며,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응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경쟁력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다루는 형사재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복잡한 기술적, 법적 쟁점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 유출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기술적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 법관이 해당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은 증거로 제시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적 복잡성과 다수의 쟁점으로 인해 공판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의

장기화는 피해 기업과 피고인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 심리절차 및 양형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판부의 기술이해도 증진을 위해 제도 내에서의 해결 방안으로서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법관연수의 도입과 더불어 기술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등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은 형사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내지 산업기술에 관한 기술적 이해 부분만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복잡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공판준비절차의 충실화와 증거조사의 집중화·효율화가 필요하다. 다만,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나 피고인의 수를 고려할 때 단독 재판부에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을 담당할 경우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고, 특히 구속사건이라면 구속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만이라도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한다면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할 것이다.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현행 제도 내에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 관한 관할집중 필요성이 논의되고, 실제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지재 형사소송 관할집중안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할집중은 법원의 전문성 확보에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조사관 등 전문인력의 활용은 재판부의 기술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현행 기술조사관 배치 현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유출 범죄가 피해 기업의 존립을 넘어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중대한 범죄임은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그 범죄 결과에 따른 피해의 회복 자체가 어렵다. 결국, 기술 유출 범죄는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 이외에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별도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소송 실무에서 기술 유출 범죄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양형인자, 낮은 권고형량 등으로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한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등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수정된 양형기준이 2024. 7. 1. 시행되었다. 다만, 기술 유출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현재 양형기준은 피해 규모와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규모나 손실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으로서의 담당재판부 자체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기술이해도 제고를 꾀하여야 하고, 효율적 심리를 통한 신속하고 적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 유출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소관 부처와 입법자로서는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절차 참여권을 제고하고, 재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 노태악 편집대표, 주식 형사소송법(II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 박병민·이주연,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2).
- 정상조 편집대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박영사(2020).
- 조미선, 형사절차 내 피해자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 최지연, 미국 경제스파이법 처벌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23. 5.).
- 하상익,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사법정책연구원(2022).
-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보호법, 법문사(2013).
- 대검찰청, 기술 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2023. 12.).
- _____,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2023. 4.).
- 법원행정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실무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2019. 9.).
- _____, 전문심리위원 활용 매뉴얼(2014).
- _____, 2019~2023 사법연감(2019~2023).
-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
- _____, 법원실무제요 형사(I)(2022).
- _____, 형사소송절차실무, 사법연수원(2016).
-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실무가이드(2021. 2. 26.).
- 양형위원회, 2024 양형기준(2024).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2022).
- _____,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2023. 12.).
- _____, 기술 유출·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2023).
- _____,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201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제 보고서(2023. 12.).

[연구논문]

- 김병국, 기술정보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165호 (2018. 4.).
- 김락현·임형주·박일현·최원균, 산업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산업보안 연구 제14권 제1호(2024. 4.).
- 김영미, 미국 기술 유출 사건 법리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33집(I)(2018).
- 송규영, 미국 기술 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법조 제735호 (2019. 6.).
- 신상현·신상민,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사법 제63호(2023).
- 최창수, 산업기술 해외유출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스티스 제203호(2024. 8.).
- 한지영,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화를 위한 최신 동향, 산업재산권 제53호(2017).
- _____,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최신 입법동향 및 영업비밀 소송전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63호(2020).

[내부보고서]

-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법원행정처 보고용), 사법정책연구원(2024. 8.).
-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7. 17.).
- _____,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0. 23.).
- _____,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등,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2023. 12. 4.).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방안 (2024. 12.).
-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2024. 4.).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2023. 10.).
- 특허청, 특허청 소관 개정 법률안 설명자료-기술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2024. 2.).
- _____,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2023. 4.).

[기타 자료]

- 김정일, 사법부 지식관리 코트넷 게시자료 '영업비밀 형사사건 심리에 참고되는 판례 정리'(2016).
- 박태일, 사법연수원 2022년 지식재산소송의 주요쟁점 연수자료 '영업비밀 침해소송 주요 판결 소개'(2022).

양재석, 기술 유출 대응방안 정책 현황 및 방향(2024. 12. 18.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콘퍼런스 발표문).

정창원, 피해자 절차 참여권 및 잠정 처분에 대한 제안(특허청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발표문).

_____, 기술유출 범죄 관련 형사절차의 문제점과 한계(2021. 8. 13. 특허청·국회 이학영 의원실·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발표문).

대통령실,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 출범, 보도자료(2023. 11. 8.).

사법정책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유출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방안 공동 콘퍼런스 자료집(2024. 12. 18.).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안)(2022~2026)(2021. 12.).

2. 미국 문헌

Guidelines Manual,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November 1, 2023).

3. 일본 문헌

[단행본]

小野昌延·松村信夫, 「新·不正競争防止法概説[第3版](上巻)」, 青林書院, 2020.

經濟産業省, 「営業秘密管理指針」, 2019.

_____,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 2022.

_____, 「秘密情報の保護ハンドブック」, 2022.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6年4月1日施行版)」, 2024.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分科会営業秘密の保護・活用に関する小委員会, 「中間とりまとめ」, 2015.

情報処理推進機構(IPA), 「企業における営業秘密管理に関する実態調査2020 調査実施報告書」, 2021.

高部眞規子, 「実務詳説 不正競争訴訟」,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特許庁 総務部 総務課 工業所有権制度改正審議室, 「平成10年改正工業所有権法の解説」, 社団法人発明協会, 1998.

[연구논문]

佐伯仁志, “越境犯罪と法人処罰”, 山口厚ほか編集代表 「寺崎嘉博先生古稀祝賀論文集(下巻)」, 成文堂, 2021.

外川英明, “裁判例等から見たノウハウ・営業秘密の法的保護—民事上の救済と刑事罰—”, 「パテント」第76号, 2023.

[기타 자료]

関啓一郎, “1·2·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 4차는 뇌의 확대, 제품·부품 넘어 전체 프로세스의 인터넷 연결이 핵심”, 『Economy Chosun』, 2016.

4. 독일 문헌

[단행본]

Harte-Bavendaumm/Ohly/Kalbfus,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GeschGehG), 2020.

Keller/Schönknecht/Glinke/Glinke, Geschäftsgeheimnisschutzgesetz, 2021.

[연구논문]

Ohly, Das neue Geschäftsgeheimnisgesetz im Überblick, GRUR 2019, 441.

Rieks, Die Nebenklage - Terra Incognita des Wirtschaftsstrafverfahrens, NStZ 2019, 643.

[기타 인터넷 자료]

BT-Drs. 19/4724, 33, <https://dserver.bundestag.de/btd/19/047/1904724.pdf>(2024. 11. 15. 확인).

5. 프랑스 문헌

Avis du Conseil d'État, Avis sur la proposition de loi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sur la protection des savoir-faire et des informations commerciales non divulgués contre l'obtention, l'utilisation et la divulgation illicites, 15 mars 2018.

Aurélié Ballot-Léna, Le juge judiciaire et le secret des affaires, Droit et cultures [En ligne], 2022.

Brigitte Brun-Lallemand, Muriel Chagny, Marie-Laure Dallery, Fabienne Fajgenbaum, Didier Faury, Natalie Fricéro, Michel Germain, Michel Jockey, Gildas de Muizon, Louis Perdrix, Olivier Péronnet, Isabelle Rohart, Philippe Roussel Galle,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économique- Fiches méthodologiques et glossaires-3e édition, 2024.

Rapport n° 777 par M. Raphaël Gauvain,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n° 4159 par M. Bernard CARAYON, ASSEMBLÉE NATIONALE.

Olivier, Secret des affaires et sanction pénale, 23 Septembre 2021, Le journal de l'économie,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研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9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열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방지 및 신속화 방안 - 민·형사 사실심재판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2025년 2월 24일 인쇄

2025년 3월 5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353-9 95360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